

# 選舉犯罪에 관한 考察

研究責任者 金 哲 洙\*

研究補助員 : 金 孝 全 · 鄭 燦 亨\*\*

<차 례>

- |                        |                 |
|------------------------|-----------------|
| 第一部 總 論                | 2. 選舉妨害罪        |
| 1. 序—選舉運動과 選舉犯罪        | 3. 投票에 관한 罪     |
| 2. 選舉犯罪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4. 虛偽事實公表 등 罪   |
| 3. 選舉犯罪에 관한 韓國法規定의 變遷  | 5. 選舉犯罪의 煽動罪    |
| 4. 選舉犯罪의 發生과 檢舉        | 6. 行政犯的 選舉犯罪    |
| 第二部 現行法上의 選舉犯罪의 類型과 實態 | 第三部 結 論         |
| 1. 賈收 및 利害誘導罪          | 1. 選舉犯罪의 傾向과 對策 |
|                        | 2. 選舉法の 改正方向    |

## 第一部 總 論

### 1. 序 — 選舉運動과 選舉犯罪

代議制民主政治下에서는 모든 選舉運動은 原則적으로 自由로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公正하게 行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원래 自由로워야 할 選舉運動에 대하여 일정한 단속을 行하고 있는 것은 私利와 營利을 위하여 權力·金力·暴力으로 인한 民意의 歪曲을 막고 不正을 防止할 뿐만 아니라, 事前的으로 不正을 막기 위하여 選舉運動에 관한 規制를 두게 되고 또 選舉犯罪를 규정하여 處罰하고 있는 것이다.

選舉犯罪(Wahldelikte, election offences)는 選舉의 自由, 公正에 대한 直接 또는 間接의 侵害이다. 直接的인 侵害란 現實적으로 選舉의 自由·公正을 害치는 경우이며, 間接的인 侵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 이 論文의 第2部는 法學研究所 助教인 金孝全 碩士가 주로 執筆한 것임.

害란 現實的으로는 이와 같은 法益을 侵害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障害을 미칠 수 있는 作爲・不作爲를 禁한 法令에 違反하는 경우이다.

選舉犯罪은 內容的으로는 두 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첫째는 現實的으로 選舉의 自由・公正을 害치기 때문에 犯罪로 되는 것이며, 이를 말하여 刑事犯이라고 할 수 있고, 둘째는 단순히 選舉의 適正한 執行의 觀點에서의 團束法規에 違背하기 때문에 犯罪로 되는 것으로, 이는 行政犯이라고 할 수 있다.

選舉犯罪에 있어서의 刑事犯은 選舉의 自由・公正이 社會的・政治的原理로 되어 있는 民主政治下에서 그 行爲 자체가 反社會性・反道德性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選舉犯罪에 있어서의 行政犯은 演說會의 規制違反과 같은 反行政的 行爲이다.

選舉犯罪을 刑事犯에 局限하는 立法例와 行政犯까지 포함하는 立法例가 있다. 前者의 代表的인 것은 獨逸이며, 刑事犯의 選舉犯罪을 刑法典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요, 行政犯은 認定하지 않고 있다. 後者の 代表的인 것은 英國으로서 「腐敗行爲」와 「違法行爲」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腐敗行爲는 刑事犯에 對應하는 것으로서 腐敗行爲의 成立에는 「故意로써」(with an evil mind with the knowledge that it is wrong, and with evil feelings and evil intentions)하는 것이 要件인데 대하여, 違法行爲에는 그 必要가 없다는 것이 判例에 의하여 確立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選舉法규정도 日本의 選舉犯罪規定을 본 받아 刑事犯的 規定과 行政犯的 規定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의 選舉犯罪에 관한 규정은 外國의 影響을 받은 것과 우리 나라에 特有한 것 등이 있다. 우리 나라 選舉犯罪에 관한 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外國의 規定을 알아 볼 必要가 있기에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 2. 選舉犯罪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1) 英 國

英國에 있어서도 選舉의 腐敗가 甚하였다. 17世紀에는 그 絶頂에 達하여 買收事犯이 늘 어났으며, 이러한 事態에 對處하기 위하여 1696년에는 最初로 團束法(Treating Act)가 制定되었고, 1761년에는 이것이 強化되었으나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다. 1832년 選舉法의 大改正을 契機로하여 1854년에는 選舉에 있어서의 不正行爲를 全般的으로 規制하는 最初의 立法으로서 腐敗行爲防止法(Corrupt Practices Prevention Act)이 만들어졌고, 이어 1883년에는 보다 完備된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Prevention Act)을 制定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 1895년의 修正法, 1908년의 公會法(Public Meeting Act) 및 1918년의 國民代表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등에 의하여 腐敗行爲와 違法行爲에 대한

處罰이 強化되었다. 이것이 다시 改正되어 1949 년의 國民代表法으로 발전되었다.

1949 년 國民代表法에 의하면 腐敗行爲와 違法行爲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腐敗行爲는 買收· 饗應· 不當強迫· 詐稱投票· 選舉費用에 관한 虛偽申告· 候補者 또는 選舉事務長의 權限에 의하지 않는 費用의 支辨· 위의 行爲의 幫助 및 教唆가 이에 해당하며, 輕罪(misdemeanour)로서 1 년 이하의 禁錮 또는 200 Pound 이하의 罰金에 處해진다. 단 詐稱投票罪만은 重罪(felony)로서 2 년 이하의 禁錮에 處해진다. 또 腐敗行爲로 인하여 有罪로 宣告된 者는 5 年間 選舉權 및 被選舉權이 停止되며, 또 有罪를 받은 者가 當選者이거나 그 事務長인 경우에는 그 當選은 無效로 된다.

違法行爲는 選舉費用超過使用, 報告義務의 懈怠, 違法한 經費支拂, 有給運動員의 違法雇傭, 選舉人에 대한 交通便宜提供, 술집 建物 등의 違法賃借, 候補者에 대한 虛偽事項의 公表, 候補者에 대한 立候補辭退의 권유, 選舉에 관한 集會의 妨害, 宣傳을 위한 海外放送局의 使用, 投票用紙의 模造 등 行爲이다. 違法行爲에 대하여서는 100 pound 이하의 罰金刑이 규정되고 있다. 또 이에는 5 年間の 選舉權停止가 따른다. 기타 選舉管理人이 候補者를 위하여 行動하거나 警察官이 違法한 選舉運動을 하는 경우, 選舉를 위한 自治團體財產의 濫用, 選舉爭訟의 不正한 取下 등에 관하여도 罰則이 규정되고 있다.

## (2) 美 國

美國과 그 諸州에 있어서도 英國의 영향을 받아 選舉團束法에는 상당한 發展을 보았다. 1890 년에는 New York 州法이 大企業의 金權에 의한 政治의 腐敗· 墮落을 막기 위하여 選舉腐敗를 防止하기 위한 法을 만들었고, 1907 년의 聯邦腐敗行爲防止法(Federal Corrupt Practices Act)은 候補者의 選舉費用의 最高額을 制限함과 함께 政黨 등 政治結社에 대한 企業體의 寄附에 엄중한 制限을 加하여 그 違反에는 罰金刑 뿐만 아니라 禁錮刑에 處하도록 하고 있다. 또 1910 년의 聯邦公開法(Federal Publicity Act)은 候補者 및 政黨 등 政治結社에 選舉費用公開의 義務를 課하고 있다.

聯邦腐敗行爲防止法은 選舉立候補者나 立候補者選舉事務所 등이 選舉費用과 寄附金 등을 報告해야 하며, 그 原簿는 2 年間 保管해야 하고, 누구나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選舉費用을 制限하여 그 이상은 使用할 수 없게 하고 있다. 罰則을 보면 選舉費用에 대하여 報告를 하지 않거나 費用을 초과해서 使用한 경우에는 1,000 弗 이하의 科料나 1 년 이하의 禁錮나 이를 併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聯邦刑法(Criminal Code, 18 USC, 1964 ed.)도 597 조, 599 조 등에서 選舉犯罪에 대한 處罰規定을 두고 있다. 選舉事務所는 어떠한 경우에도 年間 300 萬弗 이상의 寄附를 받아서는 안되며, 300 萬弗 이상을 支出해도 안되며, 이를 違反한 경우에는 1,000 弗이하의 科料나

1년이하의 禁錮에 處하거나 併科할 수 있다. 故意로 違反한 경우에는 1萬弗 이하의 罰金이나 2년이하의 懲役 또는 이를 併科할 수 있다. 또 當選된 뒤에 就職을 시켜준다고 利害誘導한 경우에도 같은 處罰을 받게 된다. 또 公務員이 選舉나 投票에 關與하여 投票의 自由를 侵害한 경우에도 處罰하게 하고 있고, 投票買收도 處罰하고 있다.

全國的인 銀行이나 會社, 勞動組合등이 政治獻金을 하는 것은 不法이며, 이를 違反하는 경우에는 5,000 弗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그 외에도 匿名으로 選舉用비라를 만들어 뿌리거나, 政府와의 契約을 하는 會社로 부터 選舉資金を 寄付받는 行爲는 處罰된다.

이 밖에도 行政犯的인 不法行爲로는 라디오放送施設의 不正使用, 投票人名簿에의 虛僞登載 등 많은 類型이 聯邦法으로 규정되고 있다<sup>(1)</sup>.

### (3) 獨 逸

獨逸의 選舉法은 既述한 바와 같이, 選舉運動에 관한 團束規定을 두지 않고, 完全히 自由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行政犯的인 選舉犯罪은 없고 刑事犯的인 選舉犯罪 만이 있다.

獨逸刑法은 刑法典에서 「選舉와 投票에 관한 犯罪」(Straftaten gegen Verfassungsorgane sowie bei Wahlen und Abstimmungen)라고 하여 選舉妨害(107 조) 選舉僞造(107 조 a) 選舉準備에 있어서의 僞造 (107 조 b) 選舉의 秘密의 侵害 (107 조 c) 選舉強制 (108 조), 選舉詐欺(108 조 a) 및 選舉買收 (108 조 b) 등을 규정하고 있다.

選舉妨害罪는 5년 이하의 自由刑에 處하며, 특히 重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自由刑에 處한다. 選舉結果를 僞造하거나 虛僞로 發表하는 者는 5년 이하의 自由刑에 處한다. 또 投票者名簿에 虛僞記載를 하거나 投票者名簿登載를 妨害하거나 被選舉權이 없는데도 立候補하는 사람들은 6개월 이하의 自由刑이나 罰金에 處한다. 選舉의 秘密을 侵害한 者는 2년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不法的으로 選舉를 強要하거나 妨害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自由刑에 處한다. 選舉詐欺의 法定刑은 2년 이하의 自由刑이며, 選舉에 있어서의 買收犯은 5년 이하의 自由刑이나 罰金에 處한다. 選舉犯罪에 대한 處罰에는 自由刑 이외에 選舉權停止나 資格停止 등을 併科할 수 있다. 未遂犯도 處罰한다<sup>(2)</sup>.

### (4) 日 本

日本에 있어서는 明治時代와 大正時代에 買收·自由妨害 등 惡質的인 不正行爲에 대한 處罰을 규정하였었다. 그것이 大正 14年の 選舉法에서 英國의 1883年 法을 따라 새로이 「選舉運動」과 「選舉運動의 費用」의 두 章을 두고, 選舉運動의 方法과 費用에 관한 상세한 규정

(1) 상세한 것은 *Election Law Guidebook*, 1966 등 참조.

(2) 상세한 것은 Wolf, *Straftaten bei Wahlen und Abstimmungen*, 1961. Schönke-Schröder, *Strafgesetzbuch Kommentar*, 15. Aufl. 1970. Jagusch-Mezger,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1957.

두어 이들 團束法規違反에는 刑罰을 부과하기로 하고 罰則을 強化하였다. 그러나 選舉不正은 끊이지를 않아 昭和 9 年の 選舉法改正에 따라 團束法規는 점점 더 嚴하게 되고, 同時に 選舉演說會의 公營・選舉公報의 發行 등 選舉公營制度도 導入되게 되었다.

그러나 選舉運動의 단속이 너무 嚴格하고 煩雜한 경우에는 官憲에게 選舉干涉의 機會와 手段을 주고, 또 候補者・選舉運動者・選舉人을 萎縮시켜 選舉에 있어서의 自由濶達한 民意의 發現을 妨害하는 등 그 弊害도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昭和 20 年の 改正選舉法은 團束法規를 현저히 緩和하고, 選舉運動을 종전에 比하여 대폭 自由롭게 하였다. 그러나 昭和 24 年の 公職選舉法과 昭和 27 年, 29 年, 31 年 改正法은 계속적으로 制限을 強化하기에 이르렀다. 또 昭和 23 年の 政治資金規正法은 候補者의 選舉費用 뿐만 아니라 政黨協會・기타 團體들의 選舉資金에 대해서도 制限을 두고 있는데, 이는 美國의 聯邦腐敗行爲防止法, 聯邦公開法 등을 모방한 것이다.

選舉犯罪으로는 刑事犯의 選舉犯罪과 行政犯의 選舉犯罪가 규정되고 있다. 刑事犯의 選舉犯罪으로는 ① 買収에 관한 罪 ② 選舉妨害罪 ③ 虛偽事項公表制 ④ 投票에 관한 罪 ⑤ 選舉犯罪의 煽動罪 등이 규정되고 있다. 行政犯의 選舉犯罪으로는 ① 各種選舉運動團束規定의 違反罪 ② 重過失에 의한 選舉費用 團束規定 違反罪 ③ 立會人の 義務懈怠罪 등이 있다.

選舉犯罪에 대한 制裁로서는 ① 刑罰 ② 罰金 ③ 當選無效 ④ 選舉權 및 被選舉權의 停止 등이 있다.<sup>(3)</sup>

### 3. 選舉犯罪에 관한 韓國法規定의 變遷

#### (1) 立法議院議員選舉法の 規定

美軍政下의 最初の 選舉法은 1947 年 8 月 12 일에 制定된 過渡政府法律 제 5 호인 「立法議院選舉法」이었다. 이 法은 選舉運動에 관한 規制는 하지 않았으나, 罰則規定을 두어 選舉事犯에 대해서는 5 年 이하의 懲役 또는 拾萬圓 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情狀에 따라서는 懲役 및 罰金を 併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 罰則規定은 ① 詐欺의 方法으로 選舉人名簿에 登錄하거나 또는 投票한 者 ② 投票를 約束하거나 또는 棄權의 條件으로 金錢・物品・響應 기타 財産上의 利益을 受授하였거나, 그 受授를 約束한 者 또는 地位 혹은 選舉上 有利한 條件을 提供하거나 約束한 者 ③ 當選하거나 當選케 하거나 또는 當選치 못하게 할 目的으로 議員候補者에 관한 虛偽事項을 演說 또는 出版物로 發表한 者 ④ 暴行・脅迫・逮捕・監禁 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投票를 못하게 하

(3) 日本의 選舉犯罪에 관한 文獻으로는 田口俊夫, 選舉における 買収事犯의 研究, 增訂版 1970. 美濃部 達吉, 選舉犯罪 등 참조.

나 棄權을 強要한 者 ⑤ 選舉를 妨害할 目的으로 各級選舉委員會의 委員 또는 기타 公務員에게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하거나 投票函 또는 投票關係書類를 奪取하거나 破壞한 者 ⑥ 投票所 및 그 附近에서 示威 또는 多數 喧騷하여 選舉進行 또는 投票의 自由를 妨害한 者 ⑦ 投票所에서 正當한 事由없이 選舉人의 投票에 干涉한 者 ⑧ 銃砲 刀劍 棒棍 기타 凶器를 携帶하고 投票所에 亂入한 者 ⑨ 選舉委員會의 委員 또는 기타 公務員으로서 違法한 行爲를 한 者 등을 處罰하도록 하고 있었다.

## (2) 美軍政法令 제 175 조의 規定

初代國會를 構成한 國會議員選舉法은 1948년 3월 17일에 制定·公布된 美軍政法令 제 175호였다. 이 法은 立法議員選舉法을 거의 모방한 것으로 罰則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虛偽事項公表罪를 없이하고, 本人與否確認時에 故意로 虛偽의 陳述을 한 洞·里長·班長 또는 기타의 證人에 대한 處罰을 추가하였을 따름이다. 또 投票所內에서 正當한 事由없이 選舉人의 投票에 干涉한 경우에 處罰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그러한 事件이 別般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 (3) 第 2 代 國會議員選舉法の 規定

第 2 代 國會議員選舉法은 1950년 4월 12일 制定公布되었는데 選舉運動에 대하여 약간의 制限을 두고 罰則條項을 大幅 強化하였다. 이것은 日本選舉法の 影響으로 보이는 바, 第 13 章 罰則은 20餘條의 장황한 處罰規定을 두고 있다. 그 中에서도 새로이 追加된 것으로는 選舉人名簿虛偽登載, 詐偽의 方法으로 議員候補推薦을 받은 罪, 選舉秘密侵害罪, 投票函不法開函罪, 虛偽事實公表罪 등이 追加되었다.

1951년 6월 2일의 國會議員選舉法改正으로 選舉運動에 관한 規制가 늘어나 戶別訪問禁止, 事務所·連絡所 設置報告義務, 當選이나 落選慰勞宴禁止 등이 규정되었고, 이러한 行政犯的 選舉事犯은 5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하도록 하였다.

## (4) 第 4 代 國會議員選舉法の 規定

1958년 1월에는 國會를 兩院으로 構成하기 위한 民議院議員選舉法과 參議院議員選舉法이 制定되었다. 民議院議員選舉法은 第 7 章에서 選舉運動에 관한 規制를 더욱 強化하여 選舉類似機關의 設置禁止, 選舉運動員의 制限, 學生 未成年者의 選舉運動禁止, 壁報, 小型印刷物, 宣傳文書, 宣傳施設의 制限, 規定 外 文書·圖書 등의 禁止, 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書의 禁止, 合同演說會의 回數制限, 演說禁止場所規定의 新設, 虛偽放送의 禁止, 新聞·雜誌 등의 不法利用의 制限, 新聞廣告의 制限, 寄附行爲의 制限, 事前運動의 制限, 騷亂行爲의 禁

止, 夜間演說禁止, 飲食物提供禁止 등 수많은 規制를 新設하였다.

選舉犯罪에 관해서도 제14장에서 ① 詐僞登錄, 虛僞捺印 및 虛僞證言罪 ②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③ 多數人買收 및 多數人利害誘導罪 ④ 候補者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⑤ 新聞·雜誌不法利用罪 ⑥ 選舉의 自由妨害罪 ⑦ 職權濫用에 의한 選舉의 自由妨害罪 ⑧ 投票의 秘密侵害罪 ⑨ 壁報에 대한 妨害罪 ⑩ 投票나 開票의 干涉罪 ⑪ 投票函에 관한 罪 ⑫ 選舉事務關係者나 施設 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⑬ 多數人의 選舉妨害罪 ⑭ 投票所 또는 開票所濫入罪 ⑮ 選舉犯罪煽動罪 ⑯ 虛僞事項公表罪 ⑰ 放送不正利用罪 ⑱ 詐僞投票罪 ⑲ 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⑳ 事前運動·戶別訪問等 不正運動罪 ㉑ 選舉費用不正支出等罪 ㉒ 各種制限規定違反罪 ㉓ 申告義務懈怠罪 등을 규정하고 있다.

罰則으로는 刑罰·罰金·沒收 등 외에도 ① 選舉費用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② 當選人의 處罰로 인한 當選無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 (5) 第5代 國會議員選舉法の 規定

1960년 6월 23일에 制定된 國會議員選舉法은 제 6장에서 選舉運動의 規制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民議院議員選舉法과 大差없었으며, 제 13장에 罰則規定을 두고 있으나, 民議院議員選舉法規定과 大差없었다.

### (6) 第6代 國會議員選舉法の 規定

5.16 이후 民政復歸를 위한 選舉法이 制定되었는데, 이 法은 第 6章 選舉運動章을 두어 選舉運動에 대한 規制를 強化하고, 第 13章의 罰則規定을 보다 상세히 하였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刑事犯의인 것으로서 ① 選舉의 自由妨害罪 ② 軍人에 의한 選舉自由妨害 ③ 選舉事務關係者나 施設 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④ 多數人의 選舉妨害罪 ⑤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⑥ 選舉犯罪煽動罪 등이 있다.

行政犯의인 것으로는 詐僞登載, 虛僞捺印 및 虛僞證言罪 ② 新聞雜誌不法利用罪 ③ 壁報 기타 宣傳施設 등에 대한 妨害罪 ④ 詐僞投票制 ⑤ 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⑥ 放送不正利用罪 ⑦ 選舉費用不正支出罪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選舉法에서도 選舉犯罪에 관한 규정은 民議院議員選舉法과 大差가 없었다.

1966년 12월 14일에는 選舉法이 改正되었으나, 選舉犯罪에 관한 규정은 改正되지 않았다.

### (7) 第8代 國會議員選舉法の 規定

1969년 1월 23일에는 또 選舉法이 改正되어 選舉運動에 이용할 目的으로 野遊會·同窓會·親睦會·鄉友會·契모임 등에 金錢·物品·飲食物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意思를 表示

한 경우에도 處罰하는 규정을 新設하였다. 또 이러한 行爲를 斡旋 또는 勸誘한 者를 處罰하도록 하였다.

1970년 12월 22일에는 選舉法이 다시 改正되었는데, 選舉運動에 대한 規制를 強化하여 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使用을 制限하였다. 또 業績讚揚廣告 등을 禁止하고 選舉運動期間中에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豫算으로 하는 工事의 起工式과 選舉에 影響을 미치게 할 目的으로 關合大會 등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公務員에 대해서는 出張을 禁止하고 藥·濁酒 및 林產物團束者에 대한 加重處罰을 規定하고 있다.

選舉犯罪規定의 比較

[資料]

1. 第6代 國會까지의 選舉法罰則條項比較

(中央選舉管理委員會刊, 大韓民國選舉史 p. 239~251에서 轉載)

要目	國會議員選舉法 (1948.3.17 美軍 政法令 第175號) (美軍政時制定)	國會議員選舉法 (1950.4.12) (法律第121號) (制憲國會制定)	民議院議員選舉法 (1958.1.25) (法律第470號) {3代民議院(與 野協商)制定}	國會議員選舉法 (1960.6.23) (法律第551號) {4.19後解散 國會制定}	國會議員選舉法 (1963.1.16) (法律第1256號) 改正(1966.12.14) (法律第1849號) {5.16革命後 國家 再建最高會議制定}
1. 選舉人名簿에 關한 罪(許僞登錄, 虛僞捺印, 虛僞證言 罪)	(1) 許僞의 方法으로 選舉人名簿에 登錄하거나 또는 投票한 者...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萬圓 以下의 罰金(法53)	(1) 許僞의 方法으로 選舉人名簿에 登錄한 者나 投票時 選舉人名簿에 虛僞捺印 또는 本人與否에 對하여 虛僞證言한 者... 3萬圓 以下罰金	(1) 同左 6個月以下 懲役 禁錮 또는 5萬圓 以下罰金	(1) 同左(法139①②)	(1) 同左 6個月以下 懲役 禁錮 또는 1萬圓 以下罰金(法142①)
(2) 選舉人 本人與否에 對한 虛僞證言者... 5年 以下 懲役 또는 10萬圓 以下罰金 (法53)	(2) 選舉關係公務員이 故意로 選舉人名簿에 虛僞事實을 記載한者... 5萬圓以下 罰金	(2) 同左 1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10萬圓 以下 罰金	(2) 同左	(2) 同左(法139①②)	(2) 選舉關係公務員이 選舉人名簿에 故意로 選舉權者를 記載하지 아니 하거나 虛僞의 事實을 記載한者... 1年 以下 懲役 禁錮 또는 2萬圓 以下罰金 (法 142②)
(3) 許僞의 方法으로 推薦狀을 받은 者... 5萬圓 以下 罰金	(3) 許僞의 方法으로 推薦狀을 받은 者... 5萬圓 以下 罰金	(3) 同左 10萬圓 以下의 罰金 (法151)	(3) 同左	(3) 同左(法140①)	(3) 同左(法140①)
2. 買收에 關한 罪가. 買收 및 利害 誘導罪	(1) 다음 該當者... 5年 以下 懲役 또는 10萬圓 以下 罰金 (法53)	(1) 다음 該當者... 2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20萬圓 以下 罰金 (法98①)	(1) 다음 該當者... 3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30萬圓 以下 罰金 (法152①)	(1) 同左(法140①)	(1) 다음 該當者... 3年 以下 懲役 禁錮 또는 6萬圓 以下 罰金 (法143①)



<p>① 投票 또는 棄權의 條件으로 財產上의 利益을 束하거나 或은 利供 또는 約束한 者</p> <p>② 投票하였거나 投票하지 않거나 是 報酬로 前號의 行爲를 한 者</p> <p>③ 選舉運動에 利用할 目的으로 學校·公益機關·團體 또는 青年 團體에 前號의 行爲를 한 者</p> <p>④ 前3號의 行爲에 關하여 斡旋 또는 勸誘한 者</p> <p>(2) 前1號·2號에 依한 財產上의 利益 또는 職의 提供을 받았거나  받을 것을 承諾한 者...5萬圓 以下 罰金</p> <p>(3) 選舉委員·選舉關係公務員·警察官이 前2項의 罪를 犯하였을 때 ...3年 以下 懲役·禁錮 또는 30萬圓 以下 罰金 (法98 3)</p> <p>(1) 財產上의 利益을 目的으로 候補者를 爲하여 多數의 選舉人에 對하여 前條(法98)第1項·第2項</p>	<p>① 投票할 거나 投票할 目的으로 財產上의 利益을 束하거나 或은 利供 또는 約束한 者</p> <p>② 投票하였거나 投票하지 않거나 是 報酬로 前號의 行爲를 한 者</p> <p>③ 選舉運動에 利用할 目的으로 學校·公益機關·團體 또는 青年 團體에 前號의 行爲를 한 者</p> <p>④ 前各號의 行爲에 關하여 斡旋 또는 勸誘한 者</p> <p>⑤ 第1號 乃至 第3號의 利益 또는 職의 提供을 받거나  받을 것을 承諾한 者</p> <p>(2) 選舉委員 및 職員·選舉關係公務員 또는 警察官이 前項의 爲를 한 때 ...4年 以下의 懲役 (法152 2)</p> <p>(1) 同 左 ...前條第1項의 行爲를 하거나 行爲를 爲한 者 都給 以 懲役·禁錮 (法153)</p>	<p>① 選舉運動을 目的으로 選舉人, 候補者의 選舉運動員·出納責任者·參觀人事務長·參觀人事務員에게 財產上의 利益이나 公私의 職을 提供하거나 約束한 者</p> <p>② 投票 또는 選舉運動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或은 그 斡旋·勸誘한 目的으로 前號의 行爲를 한 者</p> <p>③ 選舉運動에 利用할 目的으로 學校·公共團體·社會團體·氏族團體에 財產上의 利供 또는 約束을 한 者</p> <p>④ 前各號의 行爲에 關하여 斡旋 또는 勸誘한 者</p> <p>(2) 同 左(法140 2)</p> <p>(1) 同 左( 141)</p>	<p>① 當選되거나 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舉人 또는  다른 政黨·候補者의 選舉事務會計責任者·演說員·參觀人·選舉事務所 連絡所의 責任者·選舉事務員에게 金錢·物品·響應 기타 財產上의 利益이나 公私의 職을 提供하거나 提供의 意思表示 또는 約束한 者</p> <p>② 投票 또는 選舉運動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 斡旋·勸誘에 對한 報酬을 目的으로 前號의 行爲를 한 者</p> <p>③ 選舉運動에 利用할 目的으로 學校기 體 또는 青年團體·在 鄉軍人團體·氏族團體·等에 金錢·物品 등 財產上의 利益을 提供하거나 그 提供의 意思를 表示한 者</p> <p>④ 同 左</p> <p>(2)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選舉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 또는 警察官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 ...4年 以下 懲役 또는 禁錮 (法143 2)</p> <p>(1) 다음 該當者...5年 以下 懲役·禁錮 또는 10萬圓 以下 罰金 (法144 1)</p> <p>① 財產上의 利益을 圖謀할 目的으로 政黨 또는 候補者를 위</p>
---	--	---	---

나. 多數收買人 및 誘導罪

<p>다. 候補者에 對한 買收 및 誘導罪</p>	<p>의 行爲를 하거나 行爲할 것을 請負한 者...3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30萬圓 以下의 罰金 (法99)</p> <p>(1)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거나 候補者를 辭退케 할 目的으로 第98條 第1項·同條 第2項의 行爲를 한 者...3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30萬圓 以下의 罰金 (法100①)</p> <p>(2) 選舉委員·選舉關係 公務員·警察官이 前項의 罪를 犯한 때...4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40萬圓 以下의 罰金 (法100②)</p>	<p>(1) 다음 該當者...5年 以下 禁錮 또는 50萬圓 以下 罰金</p> <p>① 候補者가 되거나 候補者의 辭退를 目的으로 第152條 第1號의 行爲를 한 者</p> <p>② 候補者가 되려는 것을 中止하였거나 候補者를 辭退한 것의 報酬을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려는 者나 候補者에게 前條의 行爲를 한 者 (法154①)</p> <p>(2) 前項 第1號·第2號에 規定된 利益 또는 職의 提供을 받거나 要求하거나 提供의 意思를 承諾한 者...3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30萬圓 以下의 罰金 (法154②)</p> <p>(3) 選舉委員이나 職員·選舉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을 前項의 行爲를 한 때...5年 以下의 懲役·禁錮 (法154③)</p>	<p>(1) ① ②</p> <p>同左(法142①)</p> <p>(3) ③</p> <p>同左(法142② ③)</p>	<p>하여 多數의 選舉人·選舉事務長·會計責任者·演說員 參觀人·選舉事務所의 連絡所의 責任者 및 選舉事務員에게 前條 第1項의 行爲를 하거나 하게 한 者</p> <p>② 前①號의 行爲를 할 것을 都給받거나 都給받게 한 者 (法144②)</p> <p>(1) 다음 該當者...5年 以下 懲役·禁錮 또는 10萬圓 以下 罰金 (法145①)</p> <p>①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케 할 目的으로 候補者에게 第143條 第1項 第1號(買收 및 利害誘導罪)의 行爲를 한 者</p> <p>② 候補者가 되려는 것을 中止하였거나 候補者를 辭退한 때 對한 報酬을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려던 者나 候補者이었던 者에게 第143條 第1項 第1號(買收 및 利害誘導罪)의 行爲를 한 者</p> <p>③ 前號①②의 行爲에 關하여 斡旋 또는 勸誘를 한 者</p> <p>(2) 前項 ①②號의 利益 또는 職의 提供을 받거나 要求하거나 提供의 意思를 承諾한 者...3年 以下 懲役·禁錮 또는 6萬圓 以下 罰金 (法145②)</p> <p>(3)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選舉關係 公務員이나 警察官이 當該 選舉에 關하여 第1項의 行爲를 한 때...6年 以下 懲役 또는 禁錮 (法145③)</p> <p>(1) 다음 該當者...1年 以上 7年 以下 懲役 또는 禁錮 (法146①)</p> <p>① 當選人에 對하여 當選을 辭退시킨 目的으로 第143條 第1項 第1號(買收 및 利害誘導罪)의 行爲를 하거나 하게 한 者</p> <p>② 前號에 規定된 利</p>
<p>다. 當選人에 對한 買收 및 誘導罪</p>				

<p>나. 新聞 ·雜誌不 ·利用 ·罪</p>			<p>(1) 第72條 (利益 提供으로 新聞· 雜誌等 不法利用 ·第73條(虛偽報 道禁止)에 違反 한 者... 3年以下 의 懲役·禁錮또 는 30萬圓以下의 罰金 (法 155)</p>	<p>(1) 第63條 (利益 提供으로 新聞· 雜誌等 不法利用 에 違反한 者... 同左 (法143)</p>	<p>益 또는 職의 提供 을 받거나 要求하거 나 二 提供의 意思 를 承諾한 者 (2) 前項의 行爲에 關 하여 斡旋 또는 勸誘 를 한者...5年以下 懲 役·禁錮 또는 10萬圓 以下 罰金 (法146②)</p> <p>(1) 第61條 乃至 第63 條(新聞·雜誌등의 不 法利用制限·虛偽評 論의 禁止·新聞雜 誌의 通常方法外의 配 付禁止)違反者... 3年 以下 懲役·禁錮 또는 6萬圓 以下 罰金 (法 147)</p>
<p>나. 買收 와 利害 誘道로 인한 利 得沒收</p>	<p>(1) 前3條(98—10 0)의 境遇에  받은 利益은 沒收 한다. 但 沒收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價 額을 追徵한다. (法 101)</p>	<p>(1) 前4條(152—1 55)의 行爲로 인 한 利益은 沒收 한다. 但 沒收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價 額을 追徵한다. (法 156)</p>	<p>同左(法 144)</p>	<p>同左(法 144)</p>	<p>(1) 第143條 乃至 第 147條(買收 및 利害 誘導罪·多數人買收 多數人利害誘導罪·候 補者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 導罪·新聞·雜誌不法 利用罪)의 行爲로 인 하여  받은 利益은 沒 收한다. 다만, 그 全 部 또는 一部를 沒收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法 148)</p>
<p>3. 選舉自 由妨害罪 가. 選舉 自由妨 害罪</p>	<p>(1) 暴行·脅迫·逮 捕·監禁 또는 其 他의 方法으로 立候補 의 票을 强要하거 나 乘權을 强要 한者...5年以下 의 懲役 또는 10萬 圓 以下의 罰金 (法53)</p> <p>(1) 다음 各號 該 當者...3年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30萬圓以下의 罰 金 ① 候補者·候補 者가 되려는 者 ·選舉運動員· 選舉人에 對하 여 暴行·脅迫 하거나 拉致한 者</p> <p>② 集會·演說 또는 交通을 妨害 또는 其他의 不正 當한 方法으로 選 舉의 自由를 妨 害한 者 (法 102)</p>	<p>(1) 다음 各號 該 當者...5年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50萬圓以下의 罰 金(法57①) ① 候補者·候補 者가 되려는 者· 選舉事務長·出 納責任者·選舉 運動員·選舉人· 參觀人·選舉 事務從事員 또는 當選人에 對하 여 暴行·脅迫·暴 行 또는 誘引하거 나 不法으로 逮 捕 또는 監禁한 者</p> <p>② 同 左</p> <p>(2) 檢察官·警察 官이나 軍人이 前項의 行爲를</p>	<p>(1) 同左(法145①)</p> <p>(2) 檢察官·警察 官이나 軍人이 前項의 行爲를</p>	<p>(1) 同左(法145①)</p> <p>(2) 檢察官·警察 官이나 軍人이 前項의 行爲를</p>	<p>(1) 다음 各號 該當者 ...5年以下 懲役·禁 錮 또는 10萬圓 以下 罰金(法149①) ① 候補者·候補者가 되려는 者·選舉事務 長·會計責任者·選 舉事務所와 連絡所 의 責任者·選舉事務 員·演說員·選舉人· 參觀人·選舉事務從 事員 또는 當選人에 對하여 脅迫·暴行 또는 誘引하거나 不 法으로 逮捕 또는 監 禁한 者</p> <p>② 集會·演說 또는 交通을 妨害하거나 偽計·詐術기타 不正 當한 方法으로 選舉 의 自由를 妨害한 者</p> <p>(2) 檢察官·警察官·軍人 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1年以上 10年 以</p>

<p>나. 職權濫用에 의한 選舉自由妨害罪</p>	<p>(1) 選舉委員會委員 또는 其他 公務員으로서 選舉法規에 違反한 者의 行爲를 敢行한 者...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萬圓 以下 罰金(法53)</p>	<p>(1) 選舉에 關하여 選舉委員·警察官·軍人 其他 公務員이 故意로 慢忽하여 職權을 濫用하여 選舉의 自由를 妨害한 者...2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20萬圓 以下 罰金 (法103①)</p>	<p>한때...10年 以下의 選舉 또는 禁錮 5年 以上의 資格停止 (法157②)</p> <p>(1) 同 左</p> <p>...3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80萬圓 以下의 罰金 (法158)</p>	<p>...1年以上 10年 以下의 選舉 또는 禁錮 5年 以上의 資格停止 (法145②)</p> <p>(1) 同左(法146)</p>	<p>下의 選舉·禁錮와 5年 以上 資格停止 (法149②)</p> <p>(1) 選舉에 關하여 選舉管理委員會委員이 나 職員·警察官 기타 選舉關係 公務員이 關係 있는 者가 故意로 選舉人名簿의 閱覽을  방해하거나 그 職務을 遺棄하거나 投票 通知票를 交付치 아니하거나 正當한 理由없이 候補者를 尾行하거나 住宅選事務所等에 許可없이  들어가거나 退去를 要求하여도 退去치 아니하는 등 職權을 濫用하여 選舉의 自由를 妨害하는 때...5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10萬圓 以下의 罰金 (法151)</p>
<p>다. 軍人에 의한 選舉自由妨害罪</p>					<p>(1) 軍人으로서 特定한 候補者를 爲하여 當選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그 隸下 軍人 또는 軍屬인 選舉人의 選舉權行使를 暴力·脅迫 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妨害한 者...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禁錮 (法150)</p>
<p>다. 選舉事務關係者나 施設等에 對한 暴行攪亂罪</p>	<p>(1) 選舉妨害를 目的으로 其他 公務員에게 暴行·脅迫을 가하거나 投票關係書類를 奪取하거나 破壞한 者...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萬圓 以下 罰金 (法53)</p>	<p>(1) 選舉委員會委員 其他 選舉事務關係 公務員에게 暴行·脅迫을 가하거나 投票所·開票所·選舉人名簿閱覽場所를 攪亂하거나 投票·投票函·選舉에 關한 書類·器具를 奪取한 者...4年 以下의 懲役·禁錮 (法106)</p>	<p>(1) 同 左</p> <p>...5年 以下의 懲役·禁錮(法163)</p>	<p>(1) 同左(法151)</p>	<p>(1)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關係 公務員에게 暴行·脅迫하거나 投票所나 開票所用紙·投票紙·選舉人名簿 기타 選舉에 關한 書類 또는 選舉에 關한 印章을 抑留·毀損 또는 奪取한 者...5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10萬圓 以下의 罰金 (法156)</p>
<p>다. 多數人의 選舉妨害罪</p>		<p>(1) 多數人이 集合하여 第102條(選舉自由妨害) 또는 前條(選舉事務關係者나 施設等에 對한 暴行攪亂罪)의 罪를 犯하였을 때</p>	<p>(1) 多數人이 集合하여 第165條(投票所·開票所濫入罪)·第2條(投票函에 關한 罪·選舉事務關係者나 施設等에 對한 暴行攪亂罪)의 行爲를 한 때</p>	<p>(1) 同左(法152①)</p>	<p>(1) 多數人이 集合하여 第155條 내지 第157條(投票函에 關한 罪·選舉事務關係者나 施設等에 對한 暴行·攪亂罪·投票所 또는 開票所濫入罪)의 行爲를 한 때 ① 主謀者... 1年 以上</p>

	<p>① 生謀者... 1年以上 5年以下 懲役·禁錮          ② 指揮·率先行動者... 6月以上 3年以下 懲役·禁錮          ③ 附和行動者... 1萬圓以下 罰金·科料</p>	<p>① 主謀者... 3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 禁錮          ② 指揮·率先行動者... 1年以上 7年以下의 懲役·禁錮          ③ 附和行動者... 1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10萬圓 以下의 罰金</p>	<p>(2) 前項의 行爲를 多數人이 集合하엿을 때에 當該命令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에 應한 때 主謀者... 3年 以下의 懲役·禁錮 其他者... 1萬圓 以下 罰金·科料 (法107)</p>	<p>(2) 前項의 行爲를 多數人이 集合한 때에 關係公務員으로부터 3回以上의 解散命令을 받고 解散치 아니한 때 主謀의 行爲者... 3年 以下의 懲役·禁錮 其他行爲者... 6月 以下의 懲役·1萬圓 以下의 罰金 (法158②)</p>	<p>年 以下의 懲役·禁錮          ② 附和行動者... 1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2萬圓 以下의 罰金 (法158①)</p>
<p>4. 投票에 關한 罪 秘密의 侵害罪</p>	<p>(1) 누구든지 選舉人에 對하여 投票하 고자 하는 候補者의 表示를 要求한 때... 6個月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5萬圓 以下 罰金 (法103②)</p>	<p>(1) 누구든지 投票의 秘密을 侵害하거 나 選舉人에 對하여 投票하 고자 하는 候補者 또는 投票하 고자 하는 候補者의 表示를 要求한 때... 2年 以下의 懲役·禁錮 (法147)</p>	<p>(1) 누구든지 投票의 秘密을 侵害하거 나 選舉人에 對하여 投票하 고자 하는 候補者 또는 投票하 고자 하는 候補者의 表示를 要求한 때... 2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4萬圓 以下의 罰金 (法153①)</p>	<p>(1) 누구든지 投票의 秘密을 侵害하거 나 그 政黨·候補者 또는 投票한 政黨·候補者의 表示를 要求한 때... 2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4萬圓 以下의 罰金 (法153①)</p>	<p>(1) 누구든지 投票의 秘密을 侵害하거 나 그 政黨·候補者 또는 投票한 政黨·候補者의 表示를 要求한 때... 2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4萬圓 以下의 罰金 (法153①)</p>
<p>나. 投票에 關한 罪 投票干渉</p>	<p>(1) 投票所 附近에 示威하 는 喧嘩 進行 妨害하 는 行爲를 勸誘하거 나 投票에 影響을 한 行爲를 한 者... 1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10萬圓 以下의 罰金 (法53)</p>	<p>(1) 投票所 附近에 示威하 는 喧嘩 進行 妨害하 는 行爲를 勸誘하거 나 投票에 影響을 한 行爲를 한 者... 3年 以下의 懲役·禁錮 (法161①)</p>	<p>(1) 投票所 附近에 示威하 는 喧嘩 進行 妨害하 는 行爲를 勸誘하거 나 投票에 影響을 한 行爲를 한 者... 3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10萬圓 以下의 罰金 (法104)</p>	<p>(1) 投票所나 開票所에서 正當한 理由없이 投票나 開票에 干渉한 者 또는 投票를 勸誘하거 나 기타 抗票나 開票에 影響을 주는 行爲를 한 者...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法154①)</p>	<p>(1) 投票所나 開票所에서 正當한 理由없이 投票나 開票에 干渉한 者 또는 投票를 勸誘하거 나 기타 抗票나 開票에 影響을 주는 行爲를 한 者...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法154①)</p>
		<p>(2) 檢察官·警察官·軍人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 7年 以下의 懲役·禁錮 (法161②)</p>	<p>(2) 檢察官·警察官·軍人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 7年 以下의 懲役·禁錮 (法161②)</p>	<p>(2) 其他者... 30萬圓 以下 罰金 (法152②)</p>	<p>(2) 檢事·警察官·軍人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法154②)</p>

<p>다. 投票關係에 關한 罪</p>		<p>(1) 不法으로 投票函을 열거나 投票函中의 投票를 내 懲役...3年以下의 懲役·禁錮 (法105)</p>	<p>(1) 不法으로 投票函을 열거나 投票函中의 投票를 집어 내거나 投票函을 破壞奪取한者...7年以下의 懲役·禁錮 (法165)</p>	<p>(1) 同左...1年以上 7年以下의 懲役 禁錮 (法150)</p>	<p>(1) 不法으로 投票函을 열거나 投票函 또는 投票函안의 投票紙를 取去·破壞·毀損 隱匿 또는 奪取한者...1年以上 7年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法155①) (2) 檢察·警察官·軍人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法 155②)</p>
<p>라. 投票所 또는 開票所 濫入 罪</p>	<p>(1) 銃砲·刀劍·棍棒其他 兇器를 携帶하고 投票所에 亂入한者... 5年以下 懲役 또는 10萬圓以下 罰金 (法53)</p>	<p>(1) 武器·兇器·其他 他人을 殺傷할 수 있는 物件을 携帶하고 投票所 또는 開票所에 濫入한者...3年以下의 懲役·禁錮 (法108)</p>	<p>(1) 同左(法165①) (2) 第116條(檢察官等)의 投票所 出入禁止와 秩序維持의 規定에 違反한者...3年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30萬圓以下 罰金 (法165②)</p>	<p>(1) 同左(法153①) (2) 同左(法153②)</p>	<p>(1) 武器·兇器·爆發物其他 사람을 殺傷할 수 있는 物件을 携帶하고 投票所나 開票所에 濫入한者...5年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法157①) (2) 第106條(投票所 出入禁止) 및 第115條第1項(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에 違反한者...3年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6萬圓以下의 罰金(法157②)</p>
<p>마. 詐偽 投票罰</p>		<p>(1) 選舉人이 아 년者가 詐偽의 方法으로 投票한者...3萬圓以下 罰金 (法110)</p>	<p>(1) 同左...2年以下의 懲役 또는 20萬圓以下의 罰金 (法169)</p>	<p>(1) 同左(法157, 117)</p>	<p>(1) 姓名詐稱 其他 詐偽의 方法으로 投票하거나 投票하려고 할 때 또는 選舉人이 아 년者가 投票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2年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4萬圓 以下의 罰金 (法159①)</p>
<p>바. 投票 偽造 또는 增減 罪</p>	<p>(1) 投票를 偽造하거나 그 數를 增減한者... 3年以下의 懲役·禁錮 (2) 選舉委員 또는 公務員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 4年以下의 懲役·禁錮 (法111)</p>	<p>(1) 投票를 偽造하거나 그 數를 增減한者... 3年以下의 懲役·禁錮 (2) 選舉委員 또는 公務員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 4年以下의 懲役·禁錮 (法111)</p>	<p>(1) 同左...7年空下의 懲役·禁錮 (2) 同左...10年以下의 懲役·禁錮 (法170)</p>	<p>(1) 同左...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禁錮 (2) 同左...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禁錮(法 158)</p>	<p>(1) 投票를 偽造하거나 그數를 增減한者...1年以上 7年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法160①) (2)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選舉事務關係公務員·從事員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3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法160②)</p>
<p>5. 選舉運動規定에 違反하는 罪가. 壁報에 對한 妨害 罪</p>			<p>(1) 壁報의 作成·貼付를 正當한理由없이 妨害·毀損한者...2年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20萬圓 以下의 罰金(法160①)</p>	<p>(1) 同左(法148①)</p>	<p>(1) 壁報·候補者의 姓名等 提示其他 宣傳施設의 作成·貼付를 正當한 理由없이 妨害하거나 毀損·撤去한者...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4萬圓 以下의 罰金 (法152①)</p>

나. 放送 에 關한 罪	다. 選舉 運動의 制限 또는 禁止에 違反한 罪 ① 事前 運動· 戶別訪 問等不正 運動	② 各種 制限規 定違反 罪	(2) 選舉委員·職務 關係公務員·警 察官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 3年以下의 懲 役·禁錮 또는 30 萬圓以下의 罰金 (法160②)	(2) 同左(法148②)	(2)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이 該 委員會에 關係 있는 公務員 이나 警察官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6萬 圓以下의 罰金 (法152②)
			(3) 選舉委員·職務 關係從事員이 不當하게 壁報 를 作成·貼付 하였거나 正當 한 理由없이 實 施하지 않은 때... 5年以下의 懲 役·禁錮 또는 50 萬圓以下의 罰 金 (法160③)	(3) 同左(法148③)	(3)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二選舉事務에 從事하는 者 가 壁報·選舉 公報 또는 候 補者의 姓名等 揭示를 不正 當하게 作成· 貼付 또는 配 付하였거나 正 當한 理由없이 實施하지 아니 한 때... 3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6萬 圓以下의 罰金 (法152③)
			(1) 第96條(虛 偽放送의 禁止) ·第70條(經 歷放送의 公 平)·第71條 (放送利用의 禁止)의 規定 에 違反한 者... 3年以下의 懲 役·禁錮 또는 30萬圓以下의 罰金 (法168)	(1) 同左(法156)	(1) 第58條(虛 偽放送의 禁止) ·第59條(經 歷放送의 公 正) 또는 第 60條 第2項 放送施設의 規定外 利用 禁止)에 違反 한 者... 3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6萬 圓以下의 罰 金 (法163)
			(1) 다음 該當者... 2年以下의 懲 役·禁錮 또는 20萬圓以下의 罰金	(1) 同左	(1) 다음 各號 該當者 ... 2年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4萬圓以下의 罰金
			① 第44條·第45 條·第46條·第 48條·第49條 의 規定에 違反 한 者 ② 第65條·第67 條·第68條·第 76條 乃至 第 88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法171)	① 第35條·第36 條·第39條·第 4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② 第56條·第58 條·第59條·第 66條 乃至 第 7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者159)	① 第32號乃至第37條 ·第38條·第1. 2.4.5.7 項 또는 第64條에 違反 한 者 ② 第56條·第65條 내 지 第70條에 違反 한 者 (法164①)
			(1) 第35條의 2(選 舉事務所·連絡 所設置)第40條 (學生·未成年 者의 選	(1) 同左	(2) 公務員이 그 地位를 利用하여 選舉運動을 하였을 때... 3年以下의 懲 役·禁錮 또는 6萬圓以下의 罰金 (法164②) (1) 다음 各號 該當者... 2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4萬 圓以下의 罰 金

<p>③ 寄附 行爲의 禁止及 違反罪</p>	<p>舉運動禁止)第42條의 2(戶別訪問禁止)·第42條의 3(選舉日後答禮禁止)의 規定에 違反한 者... 5萬圓以下의 罰金 (法 113) 第40條(宣傳施設)의 規定에 依한 大統領令에 違反한 者... 5萬圓以下의 罰金 (法116)</p>	<p>① 第50條(學生·未成年者 選舉運動禁止)에 違反한 者 ② 第51條·第53條乃至 第58條에 違反하여 文書·圖書·其他 宣傳施設을 作成·使用한 者 (法 173)</p>	<p>① 第41條에 違反하여 選舉運動을 한 者 ② 第43條·第45條乃至 第50條에 違反하여 文書·圖書·其他 宣傳施設을 作成 使用한 者 (法161)</p>	<p>① 第40條·第43條·또는 第45條의 規定以外의 文書·圖書·其他 宣傳施設을 作成·使用한 者 ② 第46條 違反者 ③ 第47條·第51條·第52條·第3項·第5項내지 第8項·第53條 第2項 내지 第4項·第54條 또는 第57條·違反者 (法165)</p>
<p>④ 各種 制限 및 申告違反罪</p>	<p>(1) 第35條(選舉事務長 選舉申告)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아니한 者... 科料 (法112)</p>	<p>(1) 本法에 規定된 各種制限規定 違反者... 5萬圓以下의 罰金 申告義務懈怠者... 科料 (法174)</p>	<p>(1) 同左(法162)</p>	<p>(1) 第72條第1項 또는 第2項에 規定된 者가 同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寄附를 하거나 第7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6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法166①) (2) 第74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以上 7年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다만 10萬圓 以下의 罰金을 併科할 수 있다 (法166②) (3) 第7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4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法166③)</p> <p>(1) 第142條 내지 第167條外에 選舉에 關하여 本法의 規定하는 各種 制限規定에 違反한 者... 5千圓 以下의 罰金 (法168①) (2) 選舉에 關하여 本法이 規定하는 申告義務를 懈怠한 者... 5千圓 以下의 過怠料 (法168②)</p>
<p>나. 虛偽 事實 表罪</p>	<p>(1) 演說·新聞·雜誌其他 如何한 方法을 不拘하고 當選하거나 當選할 수 없게 할 目的으로 후보자의 身分·職業 또는 經歷에 關하여 虛偽事實을 公表하게 한 者... 6月以下의 禁錮 또는 5萬圓 以下의 罰金 (法106)</p>	<p>同左 ... 3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30萬圓 以下의 罰金 (法 167)</p>	<p>同左(法155)</p>	<p>(1) 누구든지 演說·新聞 雜誌·壁報·宣傳文書 其他의 方法으로 當選하게 하거나 當選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所屬·思想·身分·職業 또는 經歷等에 關하여 虛偽事實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萬圓 以下의 罰金 (法161) (2) 누구든지 演說·新聞·雜誌·壁報·宣傳文</p>



					<p>書 기타 어떠한 방법을 不問하고 議員을 當選되게 하거나 當 選되지 못하게 할 목 적으로 公然히 사실 을 摘示하여 후보자 를 誹謗한 者는 3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 錮 또는 6萬圓 以下 의 罰金에 處한다 (法162①)</p> <p>(3) 前項의 行爲가 眞 實한 사실로서 오로 지 公共의 利益에 관 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法162②)</p>
<p>6. 選舉運 動費用에 關한 (選舉費 用不正 罪)</p>			<p>(1) 후보자·選舉 事務長·出納責任 者 또는 職務代 行者가 本法에 違 反하여 選舉費用 을 支出하거나 本 法에 違反되는 選 舉運動員을 使用 하여 選舉運動을 한 때...5年 以下 의 懲役·禁錮 또는 50萬圓 以下의 罰 金 (法172①)</p> <p>(2) 후보자 또는 出納責任者가 第 54條 乃至 第100 條·第102條의 規 定에 違反한 때... 3年 以下의 懲役· 禁錮 또는 30萬 圓 以下의 罰金 (法172②)</p>	<p>(1) 政黨·후보자·選舉 事務長·會計責任者 또 는 會計補助員이 第 78條 (選舉費用의 制 限額)의 規定에 違反 하여 選舉費用을 支 출하거나 하게 한 때... 5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10萬圓 以下의 罰金 (法167①)</p> <p>(2) 政黨·후보자·또는 會計責任者가 第82條 내지 第88條·第90條 에 違反한 때...2年 以 下의 懲役·禁錮 또는 4萬圓 以下의 罰金 (法167②)</p>	<p>(1) 政黨·후보자·選舉 事務長·會計責任者 또 는 會計補助員이 第 78條 (選舉費用의 制 限額)의 規定에 違反 하여 選舉費用을 支 출하거나 하게 한 때... 5年 以下의 懲役·禁錮 또는 10萬圓 以下의 罰金 (法167①)</p> <p>(2) 政黨·후보자·또는 會計責任者가 第82條 내지 第88條·第90條 에 違反한 때...2年 以 下의 懲役·禁錮 또는 4萬圓 以下의 罰金 (法167②)</p>
<p>7. 選舉犯 罪煽動罪</p>			<p>(1) 누구든지 演 說·壁報·新聞 其 他 方法 如何를 不問하고 本章에 規定된 犯罪을 煽 動한 者...3年 以 下의 懲役·禁錮 또 는 30萬圓 以下의 罰金 (法166)</p>	<p>(1) 누구든지 演說·壁 報·新聞 其他 어떤 方法으로든지 本章에 規定한 犯罪을 犯할 것을 煽動한 者...3年 以 下의 懲役·禁錮 또는 6萬圓 以下의 罰金 (法169)</p>	<p>(1) 누구든지 演說·壁 報·新聞 其他 어떤 方法으로든지 本章에 規定한 犯罪을 犯할 것을 煽動한 者...3年 以 下의 懲役·禁錮 또는 6萬圓 以下의 罰金 (法169)</p>
<p>8. 選舉犯 에 對한 制裁其他 가. 選舉 費用 超 過支出 當選無 效</p>			<p>(1) 出納責任者 또 는 그 職務代 行者가 第91條의 規 定에 依하여 公 示된 金額을 超 過支出하여 懲役 ·禁錮 또는 5萬圓 以下의 罰金刑에 處하게 된 때 當 選은 無效로 한 다 (法175)</p>	<p>(1) 同左(法163)</p>	<p>(1) 第79條 (選舉費用 制限額의 公示)에 依 하여 公示된 費用總 額을 超過하여 支出 한 理由로 地域區의 會計責任者를 懲役이 나 禁錮에 處하게 된 때에는 그 地域區의 후보자의 當選은 無他 效로 한다. 다만 人의 誘導挑發에 依 하여 當選후보자의 當</p>

<p>나. 當選處因當選人罰無效</p>	<p>(1) 第112條(選舉事務長選任申告)·第116條(宣傳施設)의 境遇를 除外하고 本章의 罪를 犯하여 處罰을  받은 時에 當選은 無效가  된다</p>	<p>(1) 當選人이 當該選舉에 있어서 第174條 第2項의 規定(申告義務懈怠)을 除外하고 處罰을 受할 時에 當選은 無效가  된다</p>	<p>(1) 當選人이 當該選舉에 있어서 本法에 規定한 罪로 因하여 懲役·禁錮 또는 萬圓以上의 罰金에 處罰된 時에 當選은 無效가  된다</p>	<p>(1) 當選人이 當該選舉에 있어서 本法에 規定한 罪로 因하여 懲役·禁錮 또는 萬圓以上의 罰金에 處罰된 時에 當選은 無效가  된다</p>	<p>選을 無效로 되게 하기 爲하여 支出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法170)</p> <p>(1) 當選人이 當該選舉에 있어서 本法에 規定한 罪를 犯함으로 因하여 懲役·禁錮 또는 1萬圓 以上의 罰金에 處하게 된  때에는 當選은 無效가  된다 (法171)</p>
	<p>(2) 前項의 確定判決에  있을  때에는 裁判長은 關係選委員 舉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法114)</p>	<p>(2) 前項의 確定判決이  있을  때에는 裁判長은 判決謄本을 民議院과 中央選舉委員會 및 選舉區選舉委員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法176)</p>	<p>(2) 同左(法164)</p>	<p>(2) 第170條 내지 第172條 (選舉費用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當選人의 選舉犯罪로 인한 當選無效·選舉事務長등에 의 한 選舉事犯 및 이로 인한 當選無效)의 犯罪에 對한 確定判決이  있을  때에는 當該裁判長은  그의 判決書謄本을 國會와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및 地域區選舉管理委員會에 送付하여야 한다 (法172②)</p>	<p>(2) 第170條 내지 第172條 (選舉費用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當選人의 選舉犯罪로 인한 當選無效·選舉事務長등에 의 한 選舉事犯 및 이로 인한 當選無效)의 犯罪에 對한 確定判決이  있을  때에는 當該裁判長은  그의 判決書謄本을 國會와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및 地域區選舉管理委員會에 送付하여야 한다 (法172②)</p>
<p>다. 選舉事務長處인 當選無效</p>					<p>(1) 選舉事務長·會計責任者가 當該選舉에서 第143條 내지 第146條의 罪를 犯함으로 因하여 懲役·禁錮에 處하게 된  때에는 該政黨이 推薦한 當該地域區 후보자 當選은 無效로  한다 (法172①)</p>
<p>라. 起訴에 關한 通知</p>	<p>(1) 第112條·第113條 또는 前條의 罪를 犯한 者를 選舉期間中 取調할  때에는 拘引·拘留·留置 또는 逮捕할  수  없다 (法177①)</p> <p>(2) 議員후보자 또는 選舉事務長은 現行犯이  아니면 選舉期間中 拘引·拘留·留置 또는 逮捕할  수  없다 (法117②)</p>	<p>(1) 檢察官이 選舉犯에 關하여 起訴하였을  때에는 選舉區選舉委員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法177)</p>	<p>(1) 同左(法165)</p>	<p>(1) 同左(法165)</p>	<p>(1) 檢事は 選舉에 關한 犯罪로 當選人·후보자·選舉事務長會計責任者 및 政黨關係者를 起訴한  때에는 當該地域區 選舉管理委員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法173)</p>
<p>마. 罪의 時效</p>	<p>(1) 本章의 罪를 犯하여 處刑된 者는 刑의 執行終了後 3年間 그 選舉權及 被選舉權을 剝奪한다 (法54)</p>	<p>(1) 罪의 時效는 3月을 經過함으로써 完成한다. 但 犯人이 逃避하였을  때 그 期間은 6月로  한다 (法118)</p>	<p>(1) 同左(法179)</p>	<p>(1) 同左(法166)</p>	<p>(1) 本法에 規定한 罪의 公訴時效는 選舉日後 3月을 經過함으로써 完成한다.  다만, 犯人이 逃避한  때에는  그 期間을 1年으로  한다 (法174)</p>

바. 裁判 의 管轄	(2) 本章의 罪에 關한 公訴時效은 1年을 經過함으 로써 完成한다 (法55)	(1) 第1番裁判은 地方法院 合議部 의 管轄로 한다 (法 119)	(1) 同左(法180)	(1) 同左(法167)	(1) 選舉犯과 그 共犯 에 關한 第1番裁判은 地方法院 合議部의 管 轄로 한다 (法175)
---------------	--	---	-----------------	-----------------	---

### 2. 第7代 國會에서의 罰則改正

(1) 1969年 與野協商의 妥結로 인한 國會議員選舉法 (1969. 1. 23. 法律 第2088號) 罰則改正  
으로 選舉目的을 위한 各種 集會에 대한 制裁規定을 두었다.

第143條 第1項中 第4號 및 第5號를 각각 第5號 및 第6號로 하고,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  
한다.

4. 選舉運動에 이용한 目的으로 野遊會·同窓會·親睦會·鄉友會·契모임 등에 金錢·物品·飲食物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意思를 표시한 者.
5. 前 各號에 規定한 行爲에 관하여 斡旋 또는 勸誘한 者.
6. 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한 利益 또는 職의 提供을 받거나 要求하거나 提供의 意思를 承諾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6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1970年末의 國會議員選舉法 (1970. 12. 22. 法律 第2241號)의 改正으로 數個의 罰則條  
項을 新設 또는 改正하였다.

第161條 第2項(新設)

- ㉔ 누구든지 選舉日 公告日로부터 投票日까지 選舉權者를 誤信케 하기 위하여 偽計·詐術을 사용  
하거나 사용하게 한 者는 6年 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165條 第2號 2項(新設)

2. 第34條 第3項 政府가 株式의 過半數를 가지는 企業體의 任·職員과 鄉土豫備軍의 小隊長級 이  
상의 幹部 및 里·統·班長은 議員의 任期滿了日 3月前 (再選舉·補闕選舉 또는 選舉를 延期한  
경우에 있어서는 選舉公告日 1月前)에 그 職을 辭任하지 아니하고는 選舉事務員·演說員·投票  
所參觀人 등이 될 수 없다(1970.12.22. 法 2241).

第61條의 2 (業績讚揚廣告 등의 禁止) 候補者 및 그 所屬政黨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選舉運  
動期間中 新聞·圖書·放送·映畫·壁報 기타의 方法으로 政府의 業績을 讚揚하거나 誹謗하는  
有料廣告行爲를 할 수 없다(1970.12.22. 法 2241).

第63條의 3 (各種集會의 制限) 選舉運動期間 중에는 國家 또는 公共機關의 豫算으로 着手하는  
工事의 起工式과 選舉에 影響을 미치게 할 目的으로 團合大會(政黨活動은 除外한다)·鄉民會·  
野遊會·宗親會를 開催할 수 없다(1970.12.22. 法 2241).

第64條의 2 (公務員 등의 出張制限) 選舉運動期間 중 公務員과 國營企業體의 任·職員은 正

常의인 業務 의의 出張을 할 수 없다(1970.12. 22. 法 2241).

이에 違反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4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 74 條의 2 (藥·濁酒 및 林產物團束者에 대한 加重處罰) 누구든지 選舉運動期間 中에는 法官이 發付한 令狀이 없이는 酒稅法·山林法 및 林產物 團束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 藥酒·濁酒 또는 林產物에 관한 違反事案을 搜索하지 못한다(1970. 12. 22. 法 2241).

이에 違反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4. 選舉犯罪의 發生과 檢舉

### (1) 選舉犯罪의 增加傾向

制憲國會의 選舉時에는 選舉團束法規도 간단하여 選舉事犯의 發生件數가 적었으나 그동안 選舉團束法規의 強化와 함께 選舉事犯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저 惡名 높던 3.15 不正選舉時만하더라도 檢察에 접수된 選舉事犯數는 274 件 밖에 되지 않았으나 63年 大統領選舉時에는 701 件이나 발생하였고 67年 大統領選舉時에는 969 件, 71年 大統領選舉時에는 1257 件이나 發生하여 漸增現狀을 나타내고 있다.

國會議員選舉事犯도 增加一路에 있으나 惡名높던 6.8 選舉後에는 줄어드는 傾向이다. 58年의 民議院議員選舉時에는 958 件이 接受되었으나 60年 7월의 國會議員選舉時에는 1763 件으로 늘어났고, 63年 第 6代國會議員選舉時에는 1064 名으로 줄어들었다. 6.8 選舉時에는 3855 件이나 發生하였고 起訴된 者만 하더라도 1105 件에 1564 名이나 되었다. 그것이 第 8代 國會議員選舉時에는 1855 件 接受에 405 件만이 起訴되었을 뿐이다.

選舉事犯에 대한 法院의 處理結果가 公表된 것도 드물고, 統計도 없기에 이를 알아 볼 수 없었던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다음에 歷代選舉에서 發生한 選舉事犯處理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 (2) 71年 選舉에 있어서의 選舉事犯發生과 處理

다음 統計에서 본 바와 같이 71年度 兩大選舉에 있어서의 選舉事犯의 數는 상당히 줄어든 것 같다. 71年의 大統領選舉는 相當히 치열하여-檢察이 受理한 件數는 1257 件이었으며, 檢舉件數는 1143 件이었고 그 中 拘束起訴된 것은 69 件이요 不拘束起訴된 것이 238 件이었다. 이들 選舉事犯中 많은 것은 事前運動과 不正運動, 制限規定違反罪 등이 많고, 新聞雜誌의 不法利用, 詐僞投票 등이 많았다.

(4) 中央選舉管理委員會編, 大韓民國選舉史(1968) 764~765면에서 발췌한 것임.

(1) 國會議員選舉事犯處理狀況

選舉施行年月日	區名	分別	接		受		總數		既		濟		未濟	備考		
			件數	人員	件數	人員	件數	人員	件數	人員	件數	人員			件數	人員
1948. 5. 10.	國會議員	選舉法違反	—	—	—	—	—	—	—	—	—	—	—	6. 25 事變으로 因하여 調査不能 參議院議員 選舉事犯包 含 1963. 12. 13. 閣令第1678 號一般赦免 令에 依하여 赦免됨		
1950. 5. 30.	國會議員	選舉法違反	—	—	—	—	—	—	—	—	—	—	—			
1954. 5. 20.	民議院議員	選舉法違反	547	628	28	32	547	628	384	443	135	153	—			
1958. 5. 2.	民議院議員	選舉法違反	985	1962	43	72	985	1962	871	1767	71	123	—			
1930. 7. 29.	國會議員	選舉法違反	1793	3955	413	928	1793	3955	1190	2663	190	364	—			
1933. 11. 26.	國會議員	選舉法違反	1064	1582	19	20	1064	1582	984	1495	61	67	—			
1937. 6. 8.	國會議員	選舉法違反	3855	7578	1105	1564	3855	7575	2750	—	—	—	—			
1971. 5. 25.	國會議員	選舉法違反	1855	—	405	—	1855	—	1209	—	241	—	—			
合計			10099	—	2013	—	10099	—	7488	—	698	—	—			

(2) 大統領・副統領選舉事犯處理狀況

選舉施行年月日	區名	分別	接		受		總數		既		濟		未濟	備考		
			件數	人員	件數	人員	件數	人員	件數	人員	件數	人員			件數	人員
1952. 8. 5.	大統領副統領	選舉法違反	96	203	15	21	96	203	79	172	2	10	—	1963. 12. 13. 閣令第1678 號一般赦免 令에 依하여 赦免됨		
1956. 5. 15.	大統領副統領	選舉法違反	141	239	15	21	141	239	114	118	12	30	—			
1960. 3. 15.	大統領副統領	選舉法違反	274	658	49	97	274	658	198	520	27	41	—			
1963. 10. 15.	大統領	選舉法違反	701	931	173	202	701	931	442	615	86	114	—			
1967. 5. 3.	大統領	選舉法違反	969	1580	172	232	969	1580	797	1348	—	—	—			
1971. 4. 27.	大統領	選舉法違反	1257	—	307	—	1257	—	619	—	231	—	—			
合計			3438	—	731	—	3438	—	2249	—	358	—	—			

(3) 地方自治團體選舉에 있어서의 選舉事犯處理狀況

選舉施行 年月日	區 名 別	接 受		既						濟		備 考		
		件 數	人 員 數	總 數	起 訴 件 數	起 訴 人 員 數	不 起 訴 件 數	不 起 訴 人 員 數	移 件 數	送 人 員 數	未 濟 件 數		未 濟 人 員 數	
														件 數
1952. 4. 25.	地方自治法違反(市· 邑·面議會議員選舉)	—	—	—	—	—	—	—	—	—	—	—	—	—
1952. 5. 10.	(道議會議員選舉)	56	117	56	10	11	45	104	1	2	—	—	—	—
1956. 8. 8.	(市·邑·面長選舉)	—	—	—	—	—	—	—	—	—	—	—	—	—
1956. 8. 8.	(市·邑·面議會議員 選舉)	—	—	—	—	—	—	—	—	—	—	—	—	—
1956. 8. 13.	(서울特別市·道議會 議員選舉)	153	340	153	9	17	143	320	1	3	—	—	—	—
1960. 12. 12.	(서울特別市·道議會 議員選舉)	—	—	—	—	—	—	—	—	—	—	—	—	—
1960. 12. 19.	(市·邑·面議會議員 選舉)	1125	2603	1125	256	581	778	1828	91	194	—	—	—	—
1960. 12. 26.	(市·邑·面長選舉)	—	—	—	—	—	—	—	—	—	—	—	—	—
1960. 12. 29.	(서울特別市長·道知 事選舉)	—	—	—	—	—	—	—	—	—	—	—	—	—
合 計		1334	3060	1334	275	609	966	2252	93	199	—	—	—	—

71年大統領選舉事犯

구 분 죄명(건수)	검찰수리	기 소		불기소				이 송	계	實際發 生件數
		구 속	불구속	기소 유예	무혐 의	기소 중지	기타			
계	1,257	69	238	276	322	114	7	231	1,257	1,026
배수 및 이해유도(\$130~133)	37	—	8	2	21	4	—	2	37	35
신문잡지불법이용(\$134)	152	1	41	68	10	17	1	14	152	138
선거자유방해(\$136~138)	63	10	13	3	25	5	—	7	63	56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관 한 폭행(\$43)	30	8	6	2	10	—	—	4	30	26
투표소 개표소 난입등(\$144)	18	1	5	2	6	3	—	1	18	17
사위투표(\$146)	61	7	16	—	32	4	—	2	61	59
투표위조 또는 증감(\$147)	14	2	—	1	8	3	—	—	14	14
허위사실공표(\$148)	55	4	8	5	20	8	—	10	55	45
후보자미방(\$149)	30	8	5	2	7	2	—	6	30	24
사진 및 부정운동등(\$151)	395	12	78	87	100	24	3	91	395	304
제한규정위반(\$152, 155)	234	2	21	67	49	24	—	71	234	163
기 타	168	14	37	37	34	20	3	23	168	145

71年國會議員選舉事犯

구 분 죄명(건수)	검찰수리	기 소		불기소				이 송	계	實際發 生件數
		구 속	불구속	기소 유예	무혐 의	기소 중지	기타			
계	1,855	34	371	328	723	157	1	241	1,855	1,614
배수 및 이해유도(\$143~146)	279	—	58	17	151	22	—	31	279	248
신문잡지불법이용(\$147)	103	—	17	35	27	15	1	8	103	95
선거자유 방해(\$149~151)	228	15	50	25	107	15	—	16	228	212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156)	39	4	16	2	6	4	—	7	39	32
투표소 개표소 난입 등(\$157)	33	6	2	5	11	1	—	8	33	25
사위투표(\$159)	76	4	15	1	44	5	—	7	76	69
투표위조 또는 증감(\$160)	16	1	1	—	13	1	—	—	16	16
허위사실공표(\$161)	220	2	48	27	82	17	—	44	220	176
후보자미방(\$162)	85	1	17	16	22	9	—	20	85	65
사진 및 부정운동 등(\$164)	498	1	116	147	129	45	—	60	498	438
제한규정위반(\$165, 168)	165	—	18	37	61	18	—	31	165	134
기 타	113	—	13	16	70	5	—	9	113	104

라 고 ① 實際發生件數는 計에서 移送件數를 減한 것임  
 ② 實際發生件數에서 起訴中止를 減한 數가 檢舉件數

國會議員選舉事犯도 檢察이 접수한 件數는 1,855 件으로 그 中에는 事前 및 不正運動 등  
 과 買收 및 利害誘導, 選舉自由妨害, 虛偽事實公表, 制限規定違反 등이 많았다.

兩次選舉에 있어서 豫想外로 買收事犯의 檢舉가 적었던 것은 完全한 認知가 어려웠기 때

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事前選舉運動罪나 不正運動罪등으로 많은 사람이 立件된 것을 볼때 行政犯的인 選舉事犯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것이다.

以下에서는 警察과 檢察이 集計한 1971 年度의 選舉事犯處理結果를 轉載해 보기로 한다.

選 舉 事 犯 發 生 總 括 [大選]

種 別	區 分	發 生 件 數	檢 舉		措 置			未 檢
			件 數	人 員	拘 束	不拘束	移 牒	
計	67年	971	923	1,367	91	1,258	18	48
	71年	1,077	1,041	1,431	84	1,347		36
對 比	增 比	+108	+118	+64	-7	+89		-12
	減 率(%)	10.8	12.6	4.6	7.7	7.		2.5
시	울	188	163	215	15	200		25
釜	山	84	84	137	6	131		
京	畿	134	125	186	11	175		9
江	原	92	92	121	11	110		
忠	北	80	80	86	9	77		
忠	南	112	111	138	5	133		1
全	北	43	43	57	2	55		
全	南	150	150	170	9	161		
慶	北	119	118	214	8	206		1
慶	南	55	55	72	6	66		
濟	州	20	20	35	2	33		

(註) 67년에 비해 10.8% 增加. 서울, 全南, 京畿, 慶北, 忠南의 順位로 發生

類 型 別 發 生 狀 況 [大選]

類 型 別	政 黨 別	計	公 務 員					一 般 人			學 生			未 檢	
			共 和	新 民	國 民	大 衆	民 衆	社 統	共 和 黨 員	新 民 黨 員	其 他	共 和 黨 員	新 民 黨 員		其 他
計		1077	83	469	7			3	135	88	215	25		16	36
事 前 運 動		55	2	45				1		5					2
戶 別 訪 問		24	2	20						1	1				
寄 附 行 爲 禁 止 違 反		15	4	3				2	2	2	2				
飲 食 物 및 物 品 提 供		25	14	8						3					
候 補 誹 謗		42	2	17			1	2		18	2				
偽 計 詐 術 使 用		18		9						9					
選 舉 의 自 由 妨 害		23	4	1				10	3	2	1				2
選 舉 從 事 員 에 對 한 妨 害		34	8	4				12	4	3	2				1
壁 報 懸 垂		89	1					4	11	33	2		11		27
告 知 壁 報		3	1							1	1				
施 設 妨 害		11	1					1	4	4	1				



新聞雜誌	黨機關紙配布	175	8	134					25		5	3
不法利用	冊子傳單	14			1		2	1	9			1
其	記號票 및 名刺寫眞配布	25	1	19						5		
演說妨害		7	2	2				1		2		
詐僞登載罪		17						17				
虛僞捺印罪												
特殊地位利用		4						4				
虛僞事實公表		14	1	6				1	3	3		
交通設施便宜供與												
買收 및 利害誘導罪		8	4	2				2				
多數人買收 및 利害誘導												
未申告演說 및 不法場所使所		141	6	128	5					2		
放送不正利用												
投票事犯罪		136	11	15				30	31	38	11	
開票事犯罪		1						1				
기타不正運動罪		198	11	56	1			46	16	62	4	
未檢												

(註) 共和 83, 新民 469, 黨機關紙 配布 및 宣傳物 不法利用, 未申告演說, 投票事犯, 公營壁報 毀損 등 事犯이 顯著

選舉事犯發生總括 [國選]

種別	區分	發生件數	檢 舉		措 置			未 檢
			件數	人員	拘束	不拘束	移 牒	
計	67年	2,650	2,567	3,826	184	3,641	1	83
	71年	1,735	1,722	2,795	78	2,700	17	13
對 比	增 比	-915	-845	-1,031	-105	-941	+16	-70
	減 率(%)	34.6	32.9	26.9	57.6	25.9	1.600	84.3
서	을	259	247	338	15	323		12
釜	山	136	136	388	4	384		
京	畿	88	87	113	2	111		1
江	原	86	86	103	6	97		
忠	北	81	81	142	1	141		
忠	南	155	155	265	12	252	1	
全	北	77	77	91	6	85		
全	南	489	489	639	14	625		
慶	北	231	231	478	8	470		
慶	南	120	120	224	10	198	16	
濟	州	13	13	14		14		

(註) 67年에 비해 34.6%가 減少되고 全南, 서울, 慶北, 忠南 등 順位로 發生

類型別發生狀況 (國選)

類型別	政 黨 別								公務員	一 般 人			學 生			未檢
	計	共和	新民	國民	大衆	民衆	統社	共 黨 員		新 民 黨 員	其 他	共 和 黨 員	新 民 黨 員	其 他		
計	1735	340	649	57	4	3	8	206	123	188	124		18	2	13	
事 前 運 動	38	5	17	1	2			3	4	5	1					
戶 別 訪 問	135	14	70	1	1			2	5	37	3		2			
寄 附 行 爲 禁 止 違 反	8	2	5						1							
飲 食 物 及 物 品 提 供	34	12	10	2				5	2	2	1					
候 補 講 謗	97	25	45	6	1	1	2	1		6	8		1	1		
偽 計 詐 術 使 用	23	1	11	2						4	4				1	
選 舉 的 自 由 妨 害	151	33	29	3				33	20	11	16		1		5	
選 舉 從 事 員 對 於 妨 害	42	8	13					12	2	1	6					
壁 報 宣 傳	13								1	2	9		1			
施 設 妨 害	7	1								2	3				1	
告 知 壁 報	4	1	2							1						
懸 垂 幕 布	4		3								1					
黨 機 關 紙 配 布	93	21	38							2	27	2	2		1	
冊 子 傳 單	18	1	8	3				1	2	1	1		1			
新 聞 雜 誌	51	7	22	1					5	13	2		1			
記 號 票 及 名 御 寫 眞 配 布	16	4	6					1	3	1			1			
演 說 妨 害	23	5	8	1				1	1	4	3					
詐 偽 登 載 罪	46							46								
虛 偽 捺 印 罪	2							2								
特 殊 地 位 利 用	14							13			1					
虛 偽 事 實 公 表	152	28	83	12		1	2	4	6	9	7					
交 通 施 設 便 宜 供 與	1	1														
買 收 及 利 害 誘 導 罪	254	84	100	5				21	19	18	5				2	
多 數 人 買 收 及 利 害 誘 導	16	9	3			1		1	2							
未 申 告 演 說 及 不 法 場 所 使 所	93	4	77	3				2		3			4			
放 送 不 正 利 用	6		1	1				1	1	1						
投 票 事 犯	146	26	28	2				19	29	5	36			1		
開 票 事 犯	29	14	7	2				2	1	1	1			1		
기 타 不 正 運 動 罪	219	34	63	12				1	38	17	34	14	4		2	
未 檢																

(註) 兩黨 共히 戶別訪問, 自由妨害, 黨機關紙 및 宣傳物 不法利用, 虛偽事實公表, 買收 및 利害誘導, 投票事犯 등이 顯著한 便인

## 第二部 現行法上の 選舉犯罪의 類型과 實態

### 1. 買收 및 利害誘導罪<sup>(5)</sup>

選舉人·選舉運動者·候補者 또는 當選人에 대하여 選舉에 관하여 할 行爲의 報酬로서 어떤 利益을 提供하는 것에 관한 犯罪이다. 選舉에 관한 賂物罪라고도 할 수 있으며, 選舉犯罪 가운데 가장 惡質의으로 選舉의 公正을 현저하게 侵害하는 行爲이다. 選舉法은 買收罪에 대하여 嚴重한 處罰規定을 두고 있으며,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選舉事務所에 關係있는 公務員 또는 警察官의 買收行爲에 대하여는 刑을 加重하고 있다(143조 2항). 選舉에 있어서 이 買收事犯(bribery at election)의 特徵은 密行性·集團性·集中性 및 多發性이라고 할 것이다.

#### (1) 買收罪의 意義(狹義)

狹義의 買收罪에는 投票買收와 運動買收가 있다. 特定한 候補者를 當選되게 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舉人에 대하여 金錢·物品 기타 利益의 供與 또는 饗應·接待하여 特定候補者에게 投票하게 하거나 投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投票買收이다. 運動買收란 選舉運動者에 대하여 金錢·物品 기타 利益을 供與하거나 饗應·接待하여 特定候補者를 위하여 有利한 選舉運動을 하거나 不利하게 하는 行爲이다. 여기서 注意할 것은 買收行爲를 한 者나(法 143 조 1 항 1 호 내지 3 호), 買收에 應한 者도 (法 143 조 1 항 6 호) 각각 處罰의 對象으로 된다는 점이다.

#### (2) 買收罪의 分類

狹義의 買收罪를 投票買收와 運動買收로 나누었으나, 觀點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 ① 贈賄와 收賂에 따라서 買收者(briber)側에 成立하는 供與罪 — 饗應·接待·利害誘導·事後買收·交付 및 이들의 申込·約束 등
- ② 相對方(bribee)에 成立하는 買收를 받는 罪—承諾·要求誘導·應諾·同 促進罪
- ③ 買收의 對象으로 되는 行爲가 運動·投票 또는 立候補의 어느 것인가에 따라 選舉買收·投票買收 및 候補者買收
- ④ 將來의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가 않는가에 따라 — 通常의 買收罪와 事後買收罪
- ⑤ 積極的인 行爲를 要件으로 하는 供與·

(5) 田口 俊夫, 選舉に おける 買收事犯의 研究, 增訂版 1970. 中央大學 出版部. 大竹武七郎, 選舉法判例研究, 1971. 171~187頁.

饗應·接待 및 要求 등의 犯罪과 消極的인 行爲에 속하는 各 買收를 받는 罪, 承諾 및 誘導應諾罪와 또 片面的으로 成立하는 申込罪와 對立하는 當事者雙方에 成立하는 供與·受供與 등의 各 犯罪과, 또는 단순한 意思表示에 의하여 成立하는 申込要求·利害誘導 및 同促進 등의 各 犯罪과 現實的으로 利益을 받으므로 成立하는 供與 등의 犯罪로 分類할 수 있다. 이 外에 對立當事者의 中間 또는 側面에 서는 犯罪인 周旋勸誘罪가 있다.

### (3) 買收罪의 構成要件

#### ① 買收罪의 既遂時期

選舉運動期間內에 있어서의 買收行爲가 法 143 조에 해당됨은 물론이다. 選舉期日 確定前 또는 立候補屆出前의 買收行爲도, 적어도 特定한 選舉에 관하여 金錢·物品 기타 供與가 있는 限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通說이다. 判例도 選舉期日의 公告나 立候補申告의 前後에 關係없이 買收罪는 成立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選舉의 效力이 無效로 되어도 이미 成立한 買收罪의 成否에는 아무런 影響을 미칠 수 없는 것은 當然하다.

買收罪는 投票期日 以後 즉 選舉終了後에도 成立하는가? 이른바 事後買收라는 것으로 過去의 行爲 또는 不行爲에 대한 報酬로서 金錢·物品 기타 利益을 供與하는 등의 行爲도 處罰된다. 形式論理的으로 말하면 選舉終了 後에는 選舉人 또는 選舉運動者는 存在하지 않으나, 過去에 投票한 者 또는 選舉運動을 한 者를 포함한다고 보겠다.

[문] 大選法 제130조 제1항 제1호의 行爲만 있으면 既遂가 될것인지 不然이면 現實的으로 候補者가 되지 않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하여야만 既遂가 되는지?

[답] 規定된 行爲를 한 事實만 있으면 成立되는 것임<sup>(6)</sup>.

#### ② 買收罪의 當事者

##### i) 買收者

法 143 條는 買收하는 者에 대하여는 아무 規定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買收行爲를 한 者로서 處罰의 對象이 되는 것은 누구인가를 不問하며, 적어도 特定한 候補者가 스스로 當選되게 하거나 또는 다른 候補者를 當選되게 하거나 當選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金錢·物品·車馬·饗應 기타 利益이나, 公私의 職을 提供하거나 提供의 意思를 表示 또는 約束할 때에는 그 行爲의 主體가 누구인가를 不問하고 買收罪는 成立한다.

##### ii) 被買收者

買收行爲에 應한 者로서 處罰의 對象이 되는 것은 投票買收到 대해서는 選舉人이며, 運動買收到 대해서는 選舉運動者이다. 그리고 候補者 또는 當選人에 대한 買收罪에 대하여는 法 145 條와 146 條에 規定되어 있다.

(6) 1963. 9. 16. 中選委員長回答. 中央選舉管理委員會, 選舉 및 政黨關係法令質疑應答集, 288 면.

③ 買收罪의 態樣

i) 供與罪

選舉法에서 말하는 供與罪라 함은 金錢·物品·車馬 기타 財産上의 利益供與罪, 公私의 職供與罪 및 饗應接待罪의 세 가지를 意味한다. 그 態樣으로서는 現實로 이러한 供與 또는 饗應接待한 경우(狹義의 供與罪), 供與 또는 饗應接待을 申込한 경우(供與申込罪) 및 饗應接待을 約束한 경우(供與約束罪)의 세 가지가 있다.

㉠ 供與의 內容

供與罪의 內容에는 ① 金錢·物品 기타 財産上의 利益을 提供하는 것으로, 이에 債務의 免除, 債務의 保證 등을 포함하며 財産的 價値가 있는 利益이면 어떠한 形態의 것이라도 이에 該當한다고 볼 것이다. 日本判例 가운데는 金錢의 貸與를 財産上의 利益供與라고 인정하였고, 演說에 즈음하여 漫談家を 雇用하여 漫談을 시키거나, 뉴스 映畫를 上映하여 興行價値 있는 娛樂을 提供하는 것도 利益供與罪로 된다고 하고 있다.

② 法 143 條 1 항 1 호에서의 「車馬」란 交通施設의 便宜를 提供하는 것을 말한다.

③ 公私의 職을 提供하거나 提供의 意思를 表示 또는 約束하는 것으로, 이에 報酬를 隨伴하는 職이 많으나, 이른바 名譽職과 같이 報酬를 隨伴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④ 饗應接待란 酒食의 供與, 演劇觀覽과 같이 사람을 遊興·快樂할 수 있도록 歡待하는 것을 말한다. 饗應接待는 金錢의 供與와 함께 買收罪의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에 이르면 社會的 儀禮의 程度를 넘어 饗應接待가 인정될 것인가 問題이다.

㉡ 供與罪의 態樣

狹義의 供與罪란 利益 또는 職務의 供與에 대하여 相對方이 이것을 收受하고, 饗應接待에 대하여 相對方이 이것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供與申込罪, 供與約束罪, 事後 供與罪에 있어서의 斡旋·勸誘罪가 있다.

ii) 收受罪

㉠ 收受罪의 態樣

收受罪의 態樣으로서는 利益이나 職務의 供與를 收受하거나 饗應接待을 받는 罪(狹義의 收受罪), 利益·職務의 供與나 饗應接待을 要求하는 罪(收受要求罪), 및 利益·職務의 供與나 饗應接待의 申込을 承諾하는 罪(收受承諾罪)등이 있다.

㉡ 狹義의 收受罪

收受罪가 成立하기 위하여는 收受者가 情을 알면서 現實的으로 供與를 받은 것이 必要하나, 收受者에게 그 候補者를 當選시킬 目的이 있을 것은 必要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收受者가 供與者의 依頼대로 投票를 하거나 選舉運動을 하는가의 與否는 收受罪의 成立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一旦 知情하여 供與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供與收受罪가 成立한다.

㉔ 收受要求罪

收受要求罪는 相對方이 그 要求에 應하는가 與否를 묻지 않고 供與를 要求한것 만으로도 成立한다. 要求하여 供與를 받은 때는 狹義의 收受罪에 吸收된다. 要求의 相對方은 반드시 候補者 또는 選舉運動者에 限하지 않는다.

㉕ 收受承諾罪

收受承諾罪는 供與의 申込에 대하여 承諾한 경우에 成立한다. 承諾한 後에 現實로 供與가 이루어지면 狹義의 收受罪에 吸收되므로, 收受承諾罪가 成立하려면 申込에 대하여 承諾하더라도 現實로 實行되지 않는 경우에 限定된다.

iii) 交付罪

交付罪란 買收할 目的으로 選舉運動者에 대하여 金錢·物品을 交付·申込 또는 約束함으로써 成立하는 犯罪이다. 選舉運動者가 그 交付를 받고, 交付의 申込을 承諾하거나 交付를 要求하는 경우에도 處罰받도록 되어있다.

㉑ 交付의 意義와 交付罪의 成立

投票買收費로서 一定 金額을 選舉運動者에게 手交한 경우, 만약 그 가운데 選舉運動者에 대한 報酬도 包含되어있어서 그 金額中 어느 만큼을 投票買收費로서 使用하는가는 選舉運動者의 自由로운 處分에 맡겨져 있다고 할 때에는 「供與」에 該當된다. 그러나 단순히 選舉人에 대한 投票買收費를 選舉運動者에게 寄託할 目的으로 引渡한 경우에는 「供與」는 아니고 「交付」로 된다. 따라서 交付의 目的物은 金錢 또는 物品으로서, 饗應·接待나 公私의 職은 그 性質上 交付의 目的物이 될 수 없다. 또 交付罪는 特定한 候補者를 當選시킨 目的으로 交付하거나 또는 知情하여 交付를 받는 것만으로도 成立하며, 그 金錢 또는 物品을 交付받은 選舉運動者가 그 結果, 選舉人 또는 다른 選舉運動者를 買收할 것을 要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㉒ 交付의 時期 및 目的

交付의 時期 및 目的은 供與罪 및 收受罪의 경우와 같다.

㉓ 交付의 當事者

交付者에 대해서는 制限이 없다. 特定한 候補者를 當選시키거나, 다른 候補者를 落選시키려고 하는 者는 누구든지 交付行爲의 主體가 될 수 있다.

㉔ 交付罪의 態樣

交付罪의 態樣으로서는 狹義의 交付罪, 交付의 申込罪, 交付約束罪, 交付를 받는 罪, 交付의 申込을 承諾하는 罪, 交付를 要求하는 罪의 여섯 가지로서 供與罪, 供與收受罪와 같다.

iv) 斡旋·勸誘罪

㉑ 本罪의 意義

斡旋·勸誘罪는 供與罪, 收受罪, 交付罪에 該當하는 行爲를 斡旋·勸誘함으로써 成立한다.

「斡旋」이라 함은 雙方 사이에 서서 合意가 成立하도록 周旋하는 行爲를 말하며, 「勸誘」라 함은 어떤 行爲를 할 것에 관하여 相對方에게 그 決意를 促求하는 것을 意味한다.

㉠ 本罪의 成立

斡旋·勸誘罪는 斡旋·勸誘行爲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成立하며, 斡旋·勸誘한 결과 相對方이 그 斡旋·勸誘에 應하여 그 目的으로 하는 行爲가 이루어졌는가의 與否는 묻지 않는다.

(4) 利害誘導罪

① 利害誘導罪의 意義

利害誘導罪는 廣義로 買收罪의 一形態이다. 다만 一般買收罪가 利益·職務의 供與 또는 饗應接待를 그 手段으로 함에 대하여, 利害誘導罪는 選舉人, 또는 選舉運動者에 대하여 그와 關係있는 特殊한 直接 利害關係를 利用하여 誘導하는 것을 그 手段으로 하는 점에 差異가 있다.

② 利害誘導罪의 態樣

利害誘導罪의 態樣으로서는 狹義의 利害誘導罪, 利害誘導할 目的으로 金錢·物品을 交付하는 罪, 利害誘導에 應하거나 이를 促進하는 罪, 利害를 誘導하거나 이에 應하거나 促求하거나 또는 利害誘導를 위한 金錢·物品의 交付에 대하여 斡旋·勸誘하는 罪를 들 수 있다.

③ 利害關係의 範圍

利害關係의 範圍는 學校 기타 公共機關, 社會團體 또는 青年團體·在鄉軍人團體·氏族團體 등이다. 이는 단순한 例示에 不過하며 반드시 法人格을 가지는 者에 대한 利害關係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團體 이외에 法은 野遊會·同窓會·親睦會·鄉友會·櫻모임 같은 包括的인 集團을 규정하고 있다.

(5) 多數人買收罪

① 意 義

多數人買收罪는 財産上의 利益을 圖謀할 目的으로 特定한 政黨 또는 候補者를 위하여 多數의 選舉人·選舉事務長·會計責任者·演說員·參觀人 기타의 選舉運動員에 대하여 財産上의 利益이나 公私의 職을 提供 또는 提供할 것을 約束하거나 斡旋 또는 勸誘하는 罪이다. 이 罪는 그 主體 및 行爲의 面에서 買收罪 및 斡旋·勸誘罪와 같은 것으로, 選舉브로커나 買收常習者의 買收行爲에 대한 處罰規定이다.<sup>(7)</sup>

通常의 買收罪(法 143조)와의 關係를 살펴보면 積極的으로 買收하는 者(briber)의 犯罪에는 그 主觀的 構成要件으로서 ① 特定한 候補者가 스스로 當選되게 하려는 目的 ② 다른 候補者를 當選되게 하려는 目的 ③ 다른 候補者를 當選되지 못하게 할 目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多數人 買收罪는 이와 같은 目的 이외에 ① 財産上의 利益을 圖謀할 目的으로 ② 特定한 政黨 또는 候補者를 위한다는 目的이 있어야 한다.

② 客 體

多數의 選舉人·選舉事務長·會計責任者·演說員·選舉事務所 및 連絡所의 責任者·選舉事務員 및 參觀人이다. 英美에서는 이와 같은 買收犯罪을 general bribery 라고 부른다. 多數의 程度에 관하여는 아무런 規定이 없으나, 2人 이상이면 足하다고 할 것이다. 이들 相互間의 意思連絡은 必要없다. 多數人을 買收·斡旋 또는 勸誘할 意思없이 時間的인 間隔을 두고 數人에 대하여 行해진 경우에는 本罪는 成立하지 않으며, 買收罪의 競合犯으로 될 것이다.

【質疑 應答】

〔문〕 大統領選舉法 제131조 제1호의 選舉人이라 함은 立候補者의 選舉人을 말하는지, 다른 選舉區 選舉人도 포함하는지의 與否

〔답〕 大統領選舉區는 全國을 單位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特定選舉區의 選舉人이란 概念은 있을 수 없는 것인.<sup>(8)</sup>

③ 多數人買收罪의 實態

지난 71年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의 多數人買收罪의 實態를 살펴보면 總 16件으로서 共和黨 9件, 新民黨 3件, 民衆黨 1件, 公務員 1件, 一般人으로서 共和黨員 2件이다. 國會議員選舉와는 달리 大統領選舉에서는 多數人買收 및 利害誘導罪의 違反事件은 보여지지 않는다.

(6) 候補者 및 當選人에 대한 買收罪

① 意 義

國會議員選舉法 第145條와 第146條는 候補者 또는 候補者가 되려는 者나 當選人에 대하여 立候補의 斷念 또는 當選의 辭退에 관하여 利益·職의 提供·響應接待·그 收受·利害誘導 등의 行爲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斡旋·勸誘하는 行爲에 대한 處罰規定이다. 立候補를 斷念시키거나 當選을 辭退시키는 行爲自體가 選舉의 自由妨害罪를 構成하는 경우는 各別히 여겨서 말하는 犯罪行爲는 아니나, 그것이 不正한 利益의 供與나 特殊한 利益關係를 利用한

(7) 美濃部 達吉, 選舉罰則의 研究, 354頁. 浦邊·林, 總合判例研究叢書, 刑法(23) 41頁. 李尙圭, 判例·實例 選舉法解說, 200면.

(8) 1963. 9. 16 中選委員長 回答, 前掲書(1970) 586면.



誘導로서 成立할 때에는 一種의 買收罪로서 處罰된다.

② 成 立

本罪의 客體는 候補者가 되려는 者 및 候補者 또는 當選人이다. 候補者가 되려는 者라 함은 候補者登錄은 하지 않았으나, 候補者로서 登錄하려는 者를 말한다. 政黨에서의 推薦이 決定된 前後를 가리지 않으며, 客觀的으로 候補者登錄을 하려는 것만으로 足하다. 選舉管理委員會에서 決定된 當選人으로서 議員의 身分을 取得한 때에는 本罪는 成立하지 않는다.

本罪는 候補者로 登錄하지 못하게 하거나, 候補者登錄을 辭退하게 하거나, 當選을 辭退시킬 目的으로 行하여야 한다. 이러한 目的이 있으므로 足하며, 그 目的이 現實的으로 達成될 必要는 없다.

③ 實 態

本罪는 買收者와 被買收者 사이에 隱密히 行하여지는 것이 一般的이므로, 正確한 實態를 把握하기 困難하다. 犯罪手法으로서는 野(與)黨의 單一化를 위하여 辭退시키는 方法과 第三黨의 出馬勸誘에 의한 當選可能者의 票分散作戰 등이 있다.

(7) 買收 및 利害誘導罪의 實態

選舉事犯에 있어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이 本罪이다. 그 犯罪類型과 手法은 날로 교묘하고 知能的인 것이 되고 있다.

지난 71年 國會議員選舉時의 買收 및 利害誘導罪의 發生狀況을 보면 選舉犯罪 總 1,735 件中 約 15%인 254 件이다. 이를 分析하여 보면 共和黨 84 件, 新民黨 100 件, 國民黨 5 件, 公務員 21 件, 共和黨員 19 件, 新民黨員 18 件, 一般人 5 件이다.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總 8 件中, 共和黨이 4 件, 新民黨이 2 件, 公務員이 2 件으로 選舉犯罪 全體로 볼 때 本罪는 큰 比重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이는 全國的 選舉의 性格上 나타나 特殊한 差異라고 볼 수 있다.

## 2. 選舉妨害罪

投票가 選舉人의 良心에 따라서 適當하다고 判斷되는 候補者에 대하여 自由롭게 되고(投票의 自由), 選舉運動이 候補者, 選舉運動者 등에 의하여 法令의 規定에 따르는 限 自由로 하여 할 것(選舉運動의 自由)은 選舉가 公正하게 行하여지기 위한 基本的인 條件이다. 이 投票의 自由와 選舉運動의 自由를 不正한 手段으로 妨害하는 것은 그것이 누가 行한 것인가를 不問하고, 모두 犯罪行爲로 피며, 選舉妨害罪의 規定은 이 投票의 自由와 選舉運動의 自由를 保障하고 選舉의 公正을 確保하려고 하는 것이다.

### (1) 選舉의 自由妨害罪(狹義)

國會議員選舉法 第149條의 犯罪가 成立하기 위하여는 그 犯罪行爲가 「選舉에 관하여」 行해질 것이 要求된다. 그러나 行爲가 반드시 特定한 候補者를 當選시킬 目的으로 또는 落選시킬 目的으로 行하여질 必要는 없다. 또 그 行爲의 動機가 選舉에 關係있는 事項에 起因하는 限, 選舉期日前이나 選舉終了後일지라도 本罪는 成立하는 것이며, 落選한 候補者가 분개한 나머지 選舉終了後 他派의 選舉運動者에게 暴行을 加하는 것도 該當된다.

選舉의 自由妨害罪의 主體에 대해서는 制限이 없다. 그 客體(被害者)는 選舉人, 候補者, 候補者로 되려는 者, 選舉運動者 또는 當選人인데, 이들의 意義는 널리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 ① 脅迫・暴行 등에 의한 것

本罪는 脅迫・暴行 또는 誘引을 하거나 不法으로 逮捕 또는 監禁함으로써 成立하는 選舉의 自由妨害罪이다.

「脅迫」이란 多義的인 概念으로 具體的인 경우에 따라 判斷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廣義로 解釋하여 他人에게 恐怖心을 일으키게 할 目的으로 害惡을 加할 意思表示를 말한다. 그 害惡의 內容이나 性質・程度 및 對象이나, 意思表示의 方法은 不問하며, 또 그 害惡의 通知로써 相對方이 事實上 恐怖心을 일으킨 與否도 묻지 않는다.

「暴行」이란 사람의 身體에 대한 不法의 攻撃으로서 有形力의 行使에 의하는 것이다. 刑法 260條의 「暴行」과 同義語이며, 刑法에 있어서의 暴行의 法定刑은 2年 以下の 懲役 또는 2萬5千圓 以下(罰金等臨時措置法 제4조 1항에 의하여 1만원 以下)의 罰金임에 대하여, 本罪의 法定刑은 10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萬圓 以下の 罰金으로 그 刑이 顯著하게 加重되어 있다. 暴行에 의하여 相對方을 傷害하거나, 器物, 建造物을 毀壞・損壞한 경우에는 刑法의 規定과 아울러 競合犯이 된다.

「誘引」이라 함은 他人을 欺罔・誘惑하여 그 現在地로부터 다른 場所에 連行하는 것을 말한다. 虛僞의 事實로 相對方을 欺罔・誘惑하고 錯誤에 빠뜨려 連行하는 경우가 많으나, 虛僞의 事實이 아니고 단순히 誘惑한 것과 같은 경우도 여기에 該當된다.

「不法逮捕」란 正當한 權限없이 사람의 身體에 대하여 拘束을 加하여, 그 行動의 自由를 剝奪하는 것을 말한다. 拘束의 手段이나 方法은 不問한다. 「不法監禁」이란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一定한 區域 밖으로 出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物理的 障礙를 利用한 것이거나, 無形的 手段으로 一定한 場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를 不問한다. 被害者나 第3者의 錯誤를 利用한 경우도 같다.

### ② 選舉의 自由妨害罪 實態

71年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의 選舉의 自由妨害는 總 151件이다. 이 중 政黨과 公務員에 의한 妨害가 현저하며, 다른 犯罪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群少政黨은 全無하다. 그 內容을 보면, 共和黨이 33件, 新民黨이 29件, 公務員이 33件, 群少政黨으로는 國民黨이 3件 있을 뿐이다. 一般人的 自由妨害를 살펴보면 共和黨員이 20件, 新民黨員이 11件, 기타가 16件이다. 大學生들이 대거 參觀人으로 地方에 내려갔음을 想起할 때, 學生들에 의한 妨害는 新民黨員이 1件 있었을 뿐이다.

이에 反하여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總 23件으로 共和黨이 4件, 新民黨이 1件, 群少政黨은 없고, 公務員犯罪가 10件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一般人은 共和黨員이 3件, 新民黨員이 2件, 기타 1件이다.

## (2) 演說 等 妨害罪

### ① 意 義

演說 등 妨害罪란 選舉에 관한 集會・演說 또는 交通을 妨害하거나, 僞計・詐術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選舉의 自由를 妨害한 罪이다. 演說을 妨害한다는 것은 選舉를 위한 演說을 行함에 있어서 演說을 不可能하게 하거나, 聽取를 攔斷하게 하는 등의 妨害行爲는 물론 演說 原稿를 감추거나 演說會場 앞에서 故意로 音樂을 틀어 놓는 등 騷音을 일으키는 行爲도 이에 包含된다. 日本判例에 의하면 「演說을 妨害할 意思로써 行하고, 現在 妨害의 結果를 일으키게 한 일체의 行爲는 演說妨害罪를 構成하며, 그 妨害行爲에 의하여 일어나는 結果가 該 演說會場을 混亂으로 빠뜨려 演說을 계속할 수 없어 演說會를 끝나게 하는 것과 같은 重大한 경우와 이로 인한 該 演說者의 演說에 支障을 가져오고 그 進行을 困難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과 같은 輕微한 경우를 구별치 않는 法意라고 解할 것이다」<sup>(9)</sup>고 하고 있다.

演說妨害에 관한 判例는 많이 있으나, 一般的으로 演說 등의 妨害는 「만드시 演說의 續行

(9) 大審院 昭和 7年(れ) 第 239號 同年 5月 17日 判決, 刑集 11卷 635頁.

을 不能케 하거나 困難하게 하는 狀態를 惹起시키는 것을 要하지 않고, 단순히 會場을 騷亂하게 하고 一時 聽衆으로 하여금 演說의 趣旨를 聽取하지 못하도록 하는 狀態에 빠뜨림으로써 足하다」고 하고 있다. 즉 그 行爲가 演說을 妨害할 意思로써 이루어지고, 事實上 演說의 계속이 不可能하게 되거나, 演說을 聽取하는 것이 困難하게 된 狀態를 招來한 以上은, 演說妨害罪가 成立하는 것이며, 그것이 特定한 候補者의 當選을 妨害할 目的으로 行하여졌는가의 與否는 不問한다. 다만 妨害의 故意를 인정할 수 없는 단순한 야유나 批評과 같은 것은 一般演說에 있어서도 허용되는 것인 限, 여기서 말하는 演說妨害行爲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한 質疑應答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質疑 應答〕

〔문 1〕 政黨 등이 行하는 政談演說會에서 候補者의 推薦, 支持 기타 選舉運動을 위한 演說을 하고 있을때, 이를 妨害하는 行爲는 法 149條의 罪를 構成하는가?

〔답〕 法 149條의 罪를 構成한다.

〔문 2〕 映畫의 幕間을 利用하여 演說하려고, 館主人의 承諾을 얻어 演說을 시작한 마, 觀客의 一部分이 그 聽取를 拒否하여 演說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選舉妨害로 되는가?

〔답〕 入場에 즈음하여 미리 告知되어 있는 경우를 除하고, 觀客은 본래 映畫觀覽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며, 때로 館內에서 行하는 演說에 대해서는 이를 聽取하든 않든 自由를 가진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拒否하는 方法이 必要한 限度를 넘어 威脅·脅迫·暴行 등에 의하지 않는 限 法 149條에 해당하는 行爲라고는 할 수 없다.

② 實 態

71年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의 演說妨害의 狀況을 살펴보면 總 23件으로 共和黨이 5件, 新民黨이 8件, 國民黨이 1件, 公務員이 1件이고, 一般人으로서의 共和黨員이 1件, 新民黨員이 4件, 기다가 3件이다.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모두 7件으로 共和黨, 新民黨이 각각 2件, 公務員 1件, 新民黨員 1件이다.

(3) 軍人·公務員에 의한 選舉妨害

① 意 義

國會議員選舉法 第 150條는 軍人으로서 特定한 候補者를 當選시키거나 落選시킬 目的으로 隸下軍人 또는 軍屬인 選舉人의 選舉權 行使를 暴力·脅迫 또는 그 밖의 方法으로 妨害한 者의 處罰을 規定하고 있다. 또 同法 第 151條는 公務員이 職務怠慢이나 職權濫用으로 選舉의 自由를 妨害한 罪를 規定하고 있다.

本罪의 主體는 選舉管理委員會 委員이나 職員·警察官 기타의 選舉關係公務員이나 選舉人名簿作成에 關係있는 者이다. 選舉에 關係있는 公務員이란 選舉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는

(10) 學陽書房, 前掲書, 176頁.

行政機關의 公務員을 말하며, 內務部 地方局, 서울特別市·釜山市 및 道內務局, 區·市·郡의 內務課에 所屬되는 公務員 등이 그 例이다.

② 行 爲

本罪의 行爲는 選舉人名簿의 閱覽을 妨害하거나 그 職務를 遺棄하거나, 投票通知票를 交付하지 아니하거나 正當한 理由없이 候補者를 尾行하거나, 候補者의 住宅·選舉事務所·選舉連絡所에 許可없이 들어가거나, 退去를 要求하여도 退去하지 아니하는 등 職權을 濫用하여 選舉의 自由를 妨害하는 것이다. 以上의 行爲는 例示에 不過하며, 本罪는 選舉終了後에는 成立할 여지가 없다.

職權의 濫用이란 職務權限의 適正한 限度를 넘는 行爲를 하거나, 그 職務權限을 適正히 行使하지 않는 것을 意味한다. 職權과 關係없는 行爲로 選舉의 自由를 妨害한 경우에는 選舉의 自由妨害罪를 構成한다.

③ 實 態

軍人に 의한 選舉干涉·選舉의 自由妨害에 關하여 71年 國會議員選舉에서는 精確한 資料나 統計를 찾아보기 어렵다. 67年 6.8 選舉에 關한 新民黨의 판플렛에 의하면 與黨支持를 위한 軍人裝備動員의 事例를 羅列하고 있다<sup>(11)</sup>. 軍人裝備를 動員하여 金錢·物品·響應 등을 提供하면 買收 및 利害誘導罪와 本罪의 競合犯이 成立하는 것은 當然이다.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71年 選舉에 있어서 公務員이 行한 選舉의 自由妨害는 總 151件 중 33件으로, 共和黨이나 新民黨이나 비슷한 수에 달하고 있다.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總 23件중 10件으로 共和黨 4件, 新民黨 1件으로, 政黨에 의한 選舉의 自由妨害를 훨씬 증가하고 있는 점에 特色이 있다. 一般人에 의한 妨害는 共和黨員 3件, 新民黨員 2件, 기타가 1件이다.

(4) 壁報 기타 宣傳施設 등에 대한 妨害

國會議員選舉法 第 152條의 壁報 기타 宣傳施設 등에 關한 妨害罪에는 宣傳施設毀損罪와 宣傳施設不正作成 등의 罪로 나눌 수 있다.

① 宣傳施設毀損罪

i) 意 義

宣傳施設毀損罪라 함은 壁報 및 候補者의 姓名揭示 등과 같은 選舉運動에 關한 宣傳施設의 作成이나 貼付를 正當한 理由없이 妨害·毀損 또는 撤去하는 罪이다. 여기의 正當한 理由란 本罪의 行爲를 하는 것이 法令의 規定에 의한 것이거나, 選舉運動期間 後의 것을 말한다.

ii) 行 爲

(11) 新民黨發行, 6.8 不正選舉白書, 113~115면 참조.

本罪의 行爲는 妨害·毀損·또는 撤去이다. 妨害는 宣傳施設의 作成이나 貼付에 대하여 成立될 수 있으며, 그 妨害의 原因을 不問하고, 事實上·作成이나 貼付行爲를 阻害할 만한 것이면 足하다. 또 妨害의 結果로 作成이나 貼付가 現實적으로 不可能하게 됨을 要하지 않는다.

毀損 및 撤去는 이미 作成·貼付된 宣傳施設에 대한 行爲이다. 毀損이란 宣傳施設에 有形的으로 作用하여 그 物件의 價値나 效用 또는 그 完全性を 害하는 것이다. 例컨데 壁報에 흙을 칠하거나, 壁報의 一部를 切取하거나 壁報 위에 다른 壁報를 貼付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撤去란 貼付된 壁報의 계속적인 狀態를 害하는 것이다. 居住者의 承諾없이 貼付한 壁報에 대해서는 그 撤去를 要求할 수 있다(日本公選法 145條 3項 참조).<sup>(12)</sup>

### iii) 實 態

法 152 條에 規定된 壁報 기타 宣傳施設 등에 대한 妨害의 實態는 公營壁報, 告知壁報, 懸垂幕과 기타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지난 71年 國會議員選舉時의 公營壁報에 대한 妨害는 政黨이나 公務員에서는 볼 수 없고, 一般人으로서 共和黨員 1件, 新民黨員 2件, 기타 9件, 新民黨員인 學生 1件으로 計 13件

#### 〔質疑 應答〕

(12) 日本選舉法에 대한 質疑應答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學陽書房 編集部, 選舉運動, 177~179頁.

〔문 1〕 다음 각각의 경우에 當該 포스타를 工作物의 所有者 및 管理者 以外の 第三者가 故意로 毀損한다면 法 152 條의 罪가 成立하는가?

1. 檢印있는 포스타를 他人의 工作物에 承諾을 얻어 揭示할 때
2. 檢印있는 포스타를 他人의 工作物에 承諾을 얻지않고 揭示할 때
3. 檢印없는 포스타를 他人의 工作物에 承諾을 얻어 揭示할 때
4. 檢印없는 포스타를 他人의 工作物에 承諾을 얻지않고 揭示할 때

〔답〕 1의 경우에만 成立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成立하지 않는다. 단, 이러한 경우 刑法上의 器物損壞罪를 構成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문 2〕 揭示된 選舉運動用 포스타에 붙은 印으로 「落選」이라고 記入하는 (포스타의 效用을 害하는 程度)行爲는 選舉의 自由妨害罪로 되는가?

〔답〕 法 152 條 1 項의 罪가 成立한다.

〔문 3〕 檢印을 받은 포스타를 미리 選舉管理委員會가 정한 揭示順序에 따라서 포스타 揭示場에 揭示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事實이 일어난다면 法 152 條의 自由妨害罪가 成立하는가?

1. B 候補者가 揭示順序를 잘못하여 A 候補者의 揭示場所에 잘못 揭示했는데, 後日 A 는 B 가 揭示한 포스타 위에 重複하여 自기의 포스타를 揭示한 경우
2. B 가 故意로 A 의 揭示場所에 A 보다 먼저 포스타를 揭示한 경우
3. 2의 경우에 A 가 後日 B 가 揭示한 포스타 위에 重複하여 自기의 포스타를 揭示한 경우

〔답〕 1과 3은 成立하지 않는다. 2에 대해서는 B 가 A 의 選舉의 自由를 妨害한 意思로써 하였고, 그 結果로서 A 의 選舉의 自由가 妨害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成立하는데, 實際問題로서 이와 같은 것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다. 告知壁報에 대한 것은 모두 7件으로 共和黨 1件, 一般人으로서 新民黨員 1件, 기타 3件이다. 懸垂幕 妨害는 共和黨 1件, 新民黨 2件, 一般人으로서 新民黨員 1件으로 計 4件이다. 기타 宣傳施設에 대한 것으로는 新民黨 3件, 一般人 1件으로 計 4件이다.

이에 反하여 大統領選舉에 있어서의 違反事件은 公營壁報毀損이 總 89件으로 壓到的이다. 그 內容을 보면 共和黨 1件, 公務員 4件, 一般人으로서 共和黨員 11件, 新民黨員 33件, 기타 2件이다. 新民黨員에는 學生 11件이 있으며 대체적인 特色은 27件이나 檢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壁報나 宣傳施設의 妨害가 隱密性을 띠는 性質에 基因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② 宣傳施設不正作成 등의 罪

i) 意 義

宣傳施設不正作成 등의 罪란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또는 그 選舉事務에 종사하는 者가 壁報·選舉公報 또는 候補者의 姓名揭示를 違法·不當하게 作成·貼付 또는 配付하였거나 正當한 理由없이 그 作成·貼付 또는 配付를 하지 아니하는 罪를 말한다.

本罪의 主體는 宣傳施設毀損罪와는 달리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또는 그 選舉事務에 종사하는 者에 限한다. 이는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이다.

ii) 行 爲

違法·不當한 作成·貼付 또는 配付나 그 不作爲이다. 違法·不當한 行爲는 本法에서 인정하는 以外の 壁報 등의 作成 등과 같은 實體的인 경우 뿐만 아니라, 所定の 節次에 의하지 않은 節次的 違法의 경우도 포함한다. 不作爲의 경우는 刑法上의 職務遺棄罪와 競合罪의 관계로 된다.

iii) 實 態

71年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選舉關係公務員의 本罪違反事件은 1件도 없는 것이 特色이다. 그러나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公營壁報 4件, 懸垂幕 1件으로 나타나고 있다.

(5) 投票에 대한 選舉妨害罪

投票에 대한 選舉妨害罪에는 ① 投票의 秘密侵害罪(法 153條), ② 投票나 開票의 干涉罪, 檢事·警察官이나 軍人의 同罪(法 154條), ③ 投票函 또는 投票函 안의 投票紙를 取去·破壞·毀損·隱匿 또는 奪取한 罪, 檢事·警察官이나 軍人의 同罪(法 155條), 그리고 ④ 投票所 또는 開票所濫入罪(法 157條)가 있다.

投票에 관한 詐僞登載 등, 詐僞投票罪와 投票僞造 또는 增減罪에 관하여는 따로 後述한다.

① 投票의 秘密侵害罪

本罪는 憲法 제 36 조 1항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의 秘密保障을 規定한 國會議員選舉法

제 109 조의 實效性을 擔保하기 위한 것이다. 選舉人은 누구든지 그가 投票한 內容에 대하여 秘密을 維持할 權利를 가진다. 本條에는 明文規定이 없으나, 投票의 內容 뿐만 아니라, 投票하였는가의 與否 또는 누구에게 投票한 것인가에 관한 秘密도 아울러 保障되는 것이다.

〔質疑 應答〕

〔問〕 大韓民國 大統領選舉에 즈음해서 日本放送協會 NHK 는 「選舉人(有權者)의 投票行爲를 調査分析」한 目的으로 選舉期間中 全國의인 輿論調査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調査內容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결과를 公表하지 않을 것을 基本方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調査도 禁止되는 것인지? (調査內容) ① 投票하러 가는가? ② 候補者의 知名度 ③ 投票할 候補者를 定했는가? ④ 누구에게 投票하는가? ⑤ 性別 ⑥ 年齡 ⑦ 職業 ⑧ 學歷 ⑨ 支援政黨

〔答〕 投票에 관한 輿論調査는 그 方法에 있어 調査對象者의 自發的 意思表示에 의한 다 하더라도, 選舉人에 대하여 그 投票하고자 하는 候補者의 表示를 要求하는 行爲에 該當되며, 投票의 類似한 方法(戶別訪問 등에 의한 調査用紙의 配付·回收 등 方法의 如何를 不問)에 의하여 選舉人에게 投票하고자 하는 候補者를 調査하는 것은 결국 選舉에 관하여 當選 또는 落選을 豫想하는 人氣投票에 該當되므로 제 67 조의 規定에 違反되는 結果가 될 것이다.<sup>(13)</sup>

② 投票·開票의 干涉罪

i) 意義와 主體

投票·開票의 干涉罪란 投票所나 開票所에서 正當한 理由없이 投票나 開票에 干涉 또는 投票를 勸誘하거나 기타 投票나 開票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한 罪이다.

本罪의 主體에는 특별한 制限이 없으며, 選舉關係公務員이나 一般國民이거나를 不問한다. 그러나 投票所 및 開票所에의 出入은 本法에서 특히 인정된 者에 限하므로, 本罪는 出入이 許容된 者에게 意義가 있다. 出入이 禁止된 者가 本罪를 犯할 경우 投票所 등의 濫入罪와 競合罪를 構成한다.

ii) 行 爲

本罪의 行爲는 投票·開票의 干涉 또는 投票의 勸誘 기타 投票나 開票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이다. 干涉이란 投票나 開票에 있어서 正常的인 意思決定에 介入하여 影響을 주는 모든 行爲를 말한다. 그 方法이 단순한 意思表示에 그치거나, 物理的인 힘의 作用에 의한 것이거나, 干涉의 內容 등도 不問한다. 勸誘란 特정한 政黨 또는 候補者에 대하여 投票를 하도록 勸告·誘導하는 行爲를 말한다.

iii) 實 態

71年 選舉에 있어서 投票事犯은 總 146 件으로 買收 및 利害誘導罪, 虛偽事實公表, 選舉의 自由妨害 다음으로 많다. 그 상세한 內容은 알 수 없으나 選舉犯罪에 있어서 큰 比重을 차지한다. 이에 反하여 開票事犯의 경우는 적은 便이다. 그 內容을 보면 總 29 件으로 共和黨 14 件, 新民黨 7 件, 國民黨 2 件이며, 公務員이 2 件이다. 一般人으로서는 共和黨員 1 件,

(13) 1967. 3. 3 中選委員長 回答, 前揭書(追錄) 95~96 頁.



新民黨員 1 件, 기타 1 件, 無所屬인 學生 1 件이다.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公務員의 開票 事犯 1 件이 있을 뿐이다.

③ 投票函 등에 관한 罪

i) 意 義

投票函 등에 관한 罪란 封鎖·封印된 投票函을 不法하게 開披하거나 投票函 또는 投票紙를 取去·破壞·毀損·隱匿 또는 奪取하는 罪이다.

ii) 行 爲

不法한 開披나 取去·破壞·毀損·隱匿 또는 奪取이다.

投票가 끝난 경우에는 投票區 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函을 封鎖·封印하여야 하며, 일단 封鎖·封印된 投票函은 所定の 節次를 거쳐 開票管理委員會만이 開披할 수 있으며, 그 以外의 어떠한 開披도 있을 수 없다. 여기의 開披란 封鎖·封印을 破壞하여 그 內容을 알 수 있는 狀態를 發生시키는 行爲이며, 그 內容을 窺知한 與否는 不問한다.

取去란 投票紙에 대한 것이며, 投票紙를 投票函 밖으로 꺼내는 行爲이다. 取去의 方法은 不問하며, 그것이 強制力에 의한 경우에는 奪取에 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破壞란 投票函 등에 有形力을 行使하여 그 物體의 安全性을 害하는 行爲이며, 毀損이란 破壞보다 넓은 概念으로 投票紙나 投票函의 效用을 毀損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隱匿이란 投票紙 또는 投票函을 그 正常의 管理者가 發見할 수 없는 狀態에 두는 것이다. 奪取는 有形力을 行使하여 投票紙나 投票函의 占有를 正常의 管理者로부터 옮기는 行爲이다.

④ 投票所 또는 開票所 濫入 罪

國會議員選舉法 제 157 조는 武器 등 携帶罪와 投票所 등 濫入罪를 규정하고 있다. 投票所 등에 出入할 수 있는 者는 本法에 의하여 許容된 者에 限한다. 따라서 本罪는 投票所 또는 開票所에의 出入이 許容된 者에 限하여 그 意義가 큰 것이며, 그 以外의 者가 本罪를 犯한 경우에는 投票所 등 濫入罪와 競合關係에 있게 된다.

i) 武器 등 携帶 罪

武器 등 携帶罪란 武器·兇器·爆發物 기타 사람을 殺傷할 수 있는 物件<sup>(14)</sup> 携帶하고 投票所나 開票所에 濫入한 罪이다. 「濫入」이란 正常한 權限없이 일정한 場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本法에 의하여 投票所 등의 出入이 許容된 者가 武器 등을 携帶하여도 無妨한가 이다. 法 제 107 조 및 제 115 조 제 4 항은 秩序維持를 위하여 당해 選舉管理委員長의 要求를 받고 投票所나 開票所 안에 들어간 正服警察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武器 등을 携帶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正當한 權限에 의한 者

(14) 手匣·捕繩·주머니칼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963. 9. 22. 中選委員長 回答, 前掲書, 289 면.

라 하더라도 武器 등을 携帶하고 濫入함을 禁止된다고 볼 것이다.

ii) 投票所 등 濫入罪

投票所 등 濫入罪란 제 106 조 및 제 1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違反하여 投票所 또는 開票所에 들어간 罪이다. 本罪는 投票所안에 出入할 수 있는 者를 明示하여 投票所 안의 秩序維持와 自由를 保障하여 제 106 조 와 제 115 조 제 1 항의 규정을 強力히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6) 選舉事務關係者나 施設 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法 第 156 條에 규정된 選舉事務關係者나 施設 등에 대한 暴行·攪亂罪는 ① 選舉事務關係者에 대한 暴行·攪亂罪 ② 投票所 등에서의 攪亂罪 ③ 選舉關係文書 등의 毀損·奪取罪로 나누어질 수 있다. 本罪는 그 行爲에 따라 각각 刑法上の 暴行罪·脅迫罪·騷擾罪·公務執行妨害罪나 損壞罪를 構成한 것이다, 刑量の 加重·構成要件의 緩和 등으로 選舉法 자체의 實效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규정하였다.

大法院은 本條의 行爲를 恣行하여 恐怖劣團氣를 造成하고, 自由스러운 選舉管理를 妨害하여 選舉의 結果에 影響을 미친 경우에는 選舉無效의 事由가 된다고 判示하였다.<sup>(15)</sup> 判示事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7. 6. 8. 全羅南道 第 16 地域 選舉區(羅州區)에서 實施된 國會議員選舉는 李浩範의 當選을 위해 그들로부터 組織된 暴力團(소위 行動隊)의 組織의이고도 全般的인 暴力과 毆打·傷害·尾行 등으로 인한 恐怖劣團氣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丁明燮 原告側의 選舉運動과 選舉演說妨害는 물론 原告 選舉事務所를 습격하고, 심지어는 選舉委員會까지 襲撃하여 그 機能을 마비케 하였을뿐 아니라, 選舉委員들에게 脅迫하여 辭退를 強要하였고, 또한 原告側의 選舉參觀人 合宿所를 包圍·亂動을 부림으로써 選舉의 管理와 執行을 不能 또는 困難케 하였다. 따라서 前記 選舉는 無效라 아니할 수 없다」.

① 選舉事務關係者에 대한 暴行·脅迫罪

i) 意 義

本罪는 각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또는 選舉關係公務員에 대하여 選舉에 關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罪이다. 이는 選舉事務關係者의 安全을 保障함으로써 選舉事務의 원활한 執行과 選舉의 自由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ii) 行 爲

暴行 또는 脅迫이다. 여기의 暴行과 脅迫은 제 149 조의 選舉의 自由妨害罪에 있어서의 暴行·脅迫과 같다.

(15) 1968. 12. 11. 대판 67 수 104. 法律新聞 1968년 12월 23 일자. 中央選舉管理委員會, 選舉關係判決集, 303 면. 李石善·尹一泳 編, 憲法·選舉·特許關係判例集, 362~367 면. 金哲洙, 政黨 및 選舉에 관한 判例의 傾向, 公法研究 제 1 집, 138 면.

〔實疑 應答〕

〔문〕 選舉事務關係者에 대한 暴行·脅迫은 公務執行中에 行한 暴行·脅迫에 關하여 本罪가 成立되는 지 不然이면 이러한 身分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언제나 成立되는 것인지?

〔답〕 選舉에 關聯하여 行하여진 경우에 成立되는 것임<sup>(16)</sup>

② 投票所 등의 攪亂罪

投票所 등의 攪亂罪란 投票所나 開票所를 攪亂한 罪이며, 이는 投票所 및 開票所의 秩序를 維持함으로써 選舉의 自由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投票所나 開票所를 攪亂한다 함은 投票所 또는 開票所 안의 正常秩序를 紊亂하게 하는 모든 行爲를 말한다. 그러므로 他人이나 物件 등에 物理的인 힘의 作用에 의하지 않고, 放聲·討論하는 것도 攪亂이라고 보겠다.

③ 選舉關係文書 등의 毀損·奪取罪

i) 意 義

本罪는 投票用紙·投票紙·選舉人名簿 기타 選舉에 관계있는 書類나 印章을 扣留·毀損 또는 奪取한 罪이다. 이는 選舉關係文書나 印章의 安全한 保存을 도모하여 公正한 選舉를 實施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ii) 客體와 行爲

本罪의 容體는 投票用紙·投票紙·選舉人名簿 기타의 選舉關係書類 또는 印章이다. 기타의 選舉關係書類라 함은 投票錄·開票錄·集計票 등과 같이 選舉에 關係되는 모든 公文書를 말한다. 印章은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印章을 비롯하여 選舉關係의 書面 등에 押捺하여 사용하는 모든 印章이다.

本罪의 行爲는 扣留·毀損 또는 奪取이다. 扣留란 選舉關係文書나 印章을 占有하고 있는 者가 違法 또는 不當하게 그 使用을 不可能하도록 하거나 使用을 拒否하는 行爲를 말한다.

毀損이란 文書나 印章의 物理的 破壞를 말하며, 그 破壞의 정도가 그 目的物의 效用의 全部 또는 중요한 部分의 破壞에 이르렀는가의 與否를 不問한다. 奪取란 所有者나 占有者의 正常의 意思에 의하지 아니하고, 文書나 印章의 占有를 取得하는 行爲이다.

④ 實 態

選舉事務關係者나 施設 등에 대한 暴行·攪亂罪의 犯罪類型은 參觀妨害와 投票場內恐怖芬圍氣造成과 無檢印 投票用紙配付 등이 그 代表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특히 參觀妨害에는 參觀人 事前拉致, 飲酒強勸, 參觀人 暴行, 參觀人 逐出, 기타의 參觀妨害 등이 있다.

지난 71年 國會議員選舉時의 選舉事務從事員에 대한 妨害罪는 모두 42件이다. 그 內容은 共和黨 8件, 新民黨 13件, 公務員 12件, 一般人으로서 共和黨員 2件, 新民黨員 1件, 기

(16) 1963. 9. 16. 中選委長回答, 前揭書 288~289면.

(17) 新民黨, 6.8 不正選舉白書, 172, 177~192면 참조.

다가 6 件이다. 公務員의 犯罪行爲가 적지않은 것이 한 特色이다.

### (7) 多數人의 選舉妨害罪

多數人의 選舉妨害罪란 法 155 조, 156 조 및 157 조에 규정된 罪를 2 人 以上이 犯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罪를 多數人이 集合하여 犯한 경우에는 刑法의 共犯에 관한 규정이 適用되는 것이지만, 本條는 多數人에 의한 選舉妨害行爲의 重大한 危險性에 미추어 그 處罰을 主謀者・指揮者 및 附和者로 나누어 加重하는 한편, 未遂에 관한 特例를 設定하고 있다.

## 3. 投票에 관한 罪

選舉權의 行使는 投票로써 이루어지므로 正當한 選舉權을 가지는 者의 自由로운 意思를 選舉의 結果에 올바르게 反映시키기 위하여, 投票節次에 있어서 不正行爲와 投票에 대한 不正行爲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處罰할 必要가 있다.

이와같은 趣旨에서 法도 投票에 관하여 많은 選舉犯罪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不正한 方法에 의한 投票行爲에 대한 處罰規定과, 投票의 正確 및 秘密을 侵害하는 行爲에 대한 處罰規定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選舉의 公正을 保障하기 위한 目的에서 規定되고 있다.

### (1) 詐僞登載・虛僞捺印 및 虛僞證言罪 등

#### ① 詐僞登載

##### i) 意義 및 行爲

選舉人名簿는 區・市・邑・面長이 職權으로 調製하는 것인데, 本罪는 調製에 즈음하여 選舉人名簿에 登載될 資格없는 者가 詐僞의 方法으로 이에 登載케 함으로써 成立하는 罪이다. 詐僞의 方法에 의하여 選舉人名簿에 登載된 者가 投票하는 것은 本罪의 成立要件이 아니다. 登載된 事實이 있는 것이 要件이므로, 詐僞의 方法을 쓴 경우일지라도 아직 選舉人名簿에 登載되지 않은 동안은 本罪를 構成하지 아니한다.

詐僞의 方法이란 眞實을 歪曲할 수 있게 하는 모든 方法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 方法에 특별한 制限은 없다. 日本 判例에 의하면 「積極的으로 詐術을 써서 登錄事務를 行하는 者를 欺罔하는 것과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選舉人名簿의 調製를 위한 調査를 받음에 즈음하여 單순한 虛僞申告를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詐術을 쓰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였다.<sup>(18)</sup> 만드시 刑法上의 詐欺罪에 있어서와 같은 欺罔手段의 使用이 本罪要件이 아님을 明白히 하고 있다.

(18) 最高裁

iii) 實 態

6.8 選舉에 있어서 虛偽選舉人名簿作成의 實例을 보면 二重登載 外에 「選舉公報를 配付함에 있어 虛偽造作한 有權者 名簿에 有權者의 住所를 다르게 登載하여 公報가 住所不明으로 有權者에게 配付되지 않도록 하는 故意的인 選舉法違反」의<sup>(19)</sup> 事例가 있었다.

71 年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의 實態를 보면 總 46 件인데 모두 公務員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總 17 件이 모두 公務員에 의한 것이었다. 本罪의 性質上 一般人으로서는 거의 不可能하며, 選舉關係公務員에 의하여 恣行될 것임은 疑心할 여지가 없다. 公務員犯罪에 대하여 刑이 加重되는 것은 當然이다(法 142 조 2 항).

(2) 虛偽捺印

i) 意 義

虛偽捺印罪란 投票紙受領에 관한 選舉人名簿에의 捺印을 虛偽로 하는 罪를 말한다. 이는 投票用紙交付의 正確·公正을 期함으로써 投票의 公正을 確保하려는 데 있다. 本罪는 刑法上의 印章不正使用罪와 實質적으로 差異가 없는 것으로서 自然犯에 속한다.

ii) 行 爲

本罪는 選舉人名簿에 投票用紙受領에 관한 虛偽의 捺印을 함으로써 成立된다. 「虛偽의 捺印」이란 현실적으로 投票用紙를 受領하지 않았거나, 그 本人이 아닌 者가 投票用紙를 受領 또는 受領하지 아니하고 選舉人名簿의 所定個所에 印影을 出現시키는 行爲이다. 僞印에 관하여는 明文의 규정이 없으나,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i) 實 態

71 年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의 虛偽捺印罪는 總 2 件으로 모두 公務員에 의한 것이다.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1 件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虛偽證言罪

i) 意 義

虛偽證言罪라 함은 投票所에서 選舉인이 本人인 與否가 疑心스러울 때, 그것을 決定하기 위하여 投票區 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 證言을 要求받은 者가 虛偽의 證言을 하는 罪이다.

ii) 主 體

本罪의 主體는 選舉인이 居住하는 洞·面의 長이나 隣近住民으로서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 選舉인의 本人인 與否에 관하여 證言을 要求받은 者이다. 그러므로 證言을 要求받지 않은 다른 投票區 안에 居住하는 者가 실후 虛偽의 陳述을 하더라도 本罪를 構成하지 않는다.

iii) 行 爲

(19) 新民黨, 前掲書, 34 頁.

虛僞의 證言을 함으로써 足하며, 그 虛僞의 證言이 事實상 投票區 選舉管理委員會의 決定에 영향을 미쳤는가의 與否는 不問한다. 여기에서 虛僞의 證言이란 眞實에 反하는 陳述을 말한다.

#### ④ 不實記載 등의 罪

##### i) 意 義

不實記載 등의 罪란 選舉關係公務員이 故意로 選舉人名簿에 登載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事實을 記載한 罪로서 그 保護對象은 選舉人名簿의 正確이다. 本罪의 主體는 選舉關係公務員 만이며, 그 以外の 者가 事實上 本罪의 行爲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犯罪를 構成하지 않는다.

##### ii) 行 爲

本罪의 行爲는 選舉人名簿에 選舉權者를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事實을 記載하는 것이다. 選舉人名簿에 選舉權者를 記載하지 않는다는 것은 適法하게 選舉權을 가진 者, 즉 選舉人名簿에 登載된 權利를 가진 者를 選舉人名簿에 登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選舉人名簿에 虛僞의 事實을 記載한다는 것은 選舉權者가 아닌 者를 選舉權者인 것처럼 選舉人名簿에 記載하는 것과 같이 眞實에 反하는 內容을 記載하는 것이다. 그러나 本罪의 目的으로 보아 選舉人名簿에 記載한 選舉權者의 住所의 番地가 事實과 다른 것 처럼 극히 輕微한 虛僞記載로서 選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無關하다고 하겠다.

本罪는 故意가 있음으로써 바로소 成立된다. 그러므로 過失로 事實과 다른 記載를 하였거나 選舉權의 缺格事由가 있음을 모르고 選舉人名簿에 選舉人으로서 登錄하는 경우에는 本罪가 成立되지 않는다. 故意는 그 事實을 知悉함으로써 足하며, 特定人을 投票시키거나, 投票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意思는 必要없다.

## (2) 詐僞投票罪

### ① 意 義

姓名을 詐稱하거나 기타 詐僞의 방법으로 投票하거나 投票를 하려고 한 때, 또는 選舉人인 아닌 者가 投票를 하거나 投票를 하려고 한 때에는 詐僞投票罪가 成立한다. 姓名을 詐稱한다는 것은 例示規定에 不過하며 詐僞의 方法은 不問한다. 例컨대 他人의 姓名을 假裝하고 入場하여 投票를 하거나, 不在者投票를 할 수 없는 者가 虛僞申告로 不在者로서 投票를 하거나, 또는 不法으로 投票用紙를 入手하여 二重投票를 한 경우에는 모두 本罪가 成立한다. 이 경우 投票管理者 등 係員이 위 詐僞의 方法으로 欺罔되었는가의 與否는 本罪의 成立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投票管理者側이 그 事情을 알았는가 물랐는가의 與否도 묻지 않는다.

이와같은 詐僞手段에 의한 投票는 원래 無效인데 有效投票로 인정될 우려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投票가 無效로서 취급되는가 아닌가는 本罪의 成立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行 爲

投票를 하거나 하려고 한 것이다. 「投票를 한」 것이란 投票用紙에 記票한 後 또는 記票하지 않은 投票用紙를 記票한 모양으로 投票函에 投入함을 말하며, 「投票하려고 한」 것이란 投票를 한 段階에 이르기 前의 投票에 관련되는 모든 行爲를 말한다. 그러므로 投票하려고 投票所안에 들어간 경우에도 本罪가 成立된다. 그러나 投票所 밖에서 投票하려는 단순한 意思만을 간직하고 實行에 着手하지 않은 경우에는 投票하려고 한 行爲는 없다고 할 것이다.

投票를 하려고 한 者에 대하여 日本 判例는 「적어도 投票의 目的으로 詐僞의 方法을 쓰는 行爲에 着手한 以上, 그 詐僞行爲 自體가 未完成으로 끝난 경우와 投票行爲에 着手하여 그것이 未完成으로 끝난 경우인가는 묻지 않고, 本項의 罪가 成立한다」<sup>(20)</sup>고 하고 있다. 따라서 實行에 着手했는데 行爲全體로서 完成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行爲者가 「投票를 하려고 한 者」에 해당하며, 本罪가 成立하는 것이다.

〔質疑 應答〕<sup>(21)</sup>

〔문〕 大統領選舉法 제 146조 제 1항의 「投票를 하려 할 때」의 既遂時期는 投票하려고 列에 심으로써 既遂가 되는지의 與否

〔답〕 投票所內에 들어가서 選舉人의 本人與否의 確認을 받는 때로부터 投票直前까지의 行爲를 말하는 것임<sup>(22)</sup>

③ 實 態

詐僞投票罪를 비롯하여 지난 71年 選舉에 있어서 詐僞・詐術使用의 實態는 總 23件이었다. 그 內容을 보면 共和黨 1件, 新民黨 11件, 國民黨 2件이며, 一般人으로서는 新民黨員 4件, 기타 4件이며, 檢舉되지 못한 것이 1件이다.

大統領選舉에서는 總 18件인데 新民黨 9件, 一般人으로서 新民黨員 9件으로 모두 野黨과 그 支持者에 의한 것이 特色이다.

(3) 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① 投票僞造罪

(20) 學陽書房, 選舉運動, 178頁.

(21) 日本選舉法에 대한 質疑應答으로서는 다음을 참조. 學陽書房, 選舉運動, 188頁.

〔문〕 法 49條 (不在投票, 韓國法 100조, 101조 참조)에 드는 事由에 該當되지 않는 選舉人의 同條에 드는 事由에 該當하는 者라고 詐稱하여 不在者 投票用紙를 交付받고, 投票한 때에는 詐僞投票를 構成하는가?

〔답〕 構成한다.

(22) 1963. 9. 22. 中選委員長 回答. 質疑應答集 289~290頁.

本罪는 投票을 偽造함으로써 成立하며, 犯罪의 主體는 選舉人인가의 與否를 不問한다.

「投票을 偽造」한다는 것은 投票用紙를 偽造하여 投票하는 경우 外에 어떠한 方法으로 正規의 投票用紙를 入手하여, 그 內容에 變更을 加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意思內容의 記載에 이르게 하는 行爲를 말한다. 甲黨에서 推薦한 候補者에게 投票한 것을 乙黨의 候補者에게 投票한 것으로 만든다거나, 有效한 投票을 無效投票로 만드는 것, 또는 無效의 投票을 有效한 投票로 만드는 것과 같은 行爲가 곧 그것이다.

日本 判例는 「投票偽造罪의 成立은 投票終了前과 投票終了後인가를 不問하며, 無效의 投票을 偽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當然 成立한다」고<sup>(23)</sup> 하였다.

## ② 投票增減罪

本罪는 投票의 數를 增減하는 罪이며, 投票의 數를 不正하게 變更하는 行爲는 모두 本罪를 構成한다.

投票數를 增減한다는 것은 投票數를 不法으로 增加하거나 候補者 乙에 대한 投票을 꺼내어 이를 減少시키는 것과 같은 現實의 投票增減과, 投票數의 計算에 있어서 故意로 甲에게 주어진 投票을 乙에게 주어진 投票로 計算하는 것과 같이 計算上의 增減도 包含하는 것이다. 日本判例에도 「投票의 增減罪는 投票紙의 增減만에 그치지 않고, 投票의 計算分配에 관한 不正行爲를 포함하는」것이라고 判示한 것이 있다. 또 明白히 有效한 投票을 無效라고 하는 것도 投票增減罪에 該當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特定候補者의 投票數를 增加할 目的으로 事前에 正規의 投票用紙를 몰래 꺼낸 때에는 竊盜罪를 構成한다」는 判例도 있다.<sup>(24) (25)</sup>

## 4. 虛偽事實公表 및 候補者誹謗 新聞·雜誌·放送 등 不法利用罪

虛偽事實公表罪에 관하여 法은 ① 演說·新聞·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 어떠한 方法을 不問하고, 議員으로 當選되게 하거나 當選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所屬·思想·身分·職業

(23) 學陽書房, 前掲書 188 頁.

(24) 學陽書房, 前掲書 189 頁.

### 〔質疑 應答〕

[문] 某町町議會議員選舉에서 當選人이 告示되었다. 그 후에 次點으로 落選된 A 候補者의 關係者가 選舉의 效力에 대한 異議申立을 有利하게 할 目的으로, 選舉管理委員會에 保管中인 投票中, B 當選人 得票의 一部를 A 候補者에 대한 得票처럼 候補者 姓名을 고쳐 投票을 增減하는 行爲는 法 237 條 3 項 또는 同條 4 項 (우리나라 法 160 條 해당)의 罪에 해당되는가?

[답] 積極적으로 解한다.

(25) 日本의 記標方式은 우리나라와 같이 ○標를 하는 것이 아니라 選舉人의 自筆에 의한다.



또는 經歷 등에 관하여 虛僞의 事實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罪(法 161 條 1 項), ② 候補者 誹謗罪—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候補者를 誹謗한 罪(法 162 條), ③ 放送不正利用罪(法 163 條) ④ 僞計・詐術使用罪—有權者를 誤認케 하기 위하여 僞計・詐術을 使用하거나 使用케 한 罪 (法 161 條 2 項)를 규정하고 있다.

### (1) 狹義의 虛僞事實公表罪

#### ① 意 義

虛僞事實公表罪는 候補者 또는 候補者가 되려는 者에 대하여 虛僞의 事實을 公表하여 選舉人의 公正한 判斷을 그르치게 하는 罪이다. 이는 廣義에 있어서 選舉의 自由를 妨害하는 行爲이며, 選舉의 自由와 公正을 크게 害치는 行爲이므로 이와 같은 不正한 行爲를 處罰하고 있다.

여기서 問題로 되는 것은 虛僞事實公表罪의 客體는 議員候補者에 限하는 것인가이다. 法은 만드시 議員候補者이어야 하는지 또는 候補者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라도 客觀的으로 議員候補者가 될 것이 豫測可能한 者까지도 포함하는지 明白하지 않다. 그러나 「議員으로 當選하게 하거나 當選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라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選舉期日의 公示 또는 告示前 일지라도 候補者로 되려고 함이 明白한 때에는 그 者의 身分・經歷 등에 대하여 虛僞事實을 公表하면 本條의 適用을 받는다고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sup>(26)</sup> 選舉犯罪의 構成要件을 一般 刑法犯罪보다 緩和하여 民主主義의 大原則인 選舉의 自由와 公正을 保障하려는 選舉法의 精神으로 보아 當然하다고 할 것이다.

#### ② 行 爲

「虛僞의 事實을 公表」한다는 것은 眞實에 符合되지 않는 事實을 不特定 또는 多數人에게 公表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一人 또는 少數의 相對方에 대한 私的 談話나 個人的인 謔信에 의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그로 인하여 當選 또는 落選했다는 結果의 發生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이다. 眞實한 事實을 公表하는 것은 虛僞事實公表罪에는 물론 해당되지 않으나, 그것이 候補者 등의 名譽를 毀損하는 것으로 되어도 그 眞實한 것이 證明되면 處罰되지 않는다(刑法 307 條). 刑法의 名譽毀損罪는 親告罪인데 本條는 告訴를 訴訟條件으로 하지 않는다.

#### 〔質疑 應答〕

〔문 1〕<sup>(27)</sup> 虛僞事實流布에 대한 解明行爲에 대하여 相對黨에서는 終般戰에서 「○○○은 辭退했다」는 소리를 그들의 組織網을 통해서 流布시킨다면, 被害者는 曠성기를 車에 裝置하여 「절대로 辭退하지

(26) 反對, 李尙圭, 選舉法解說, 217 면. 同旨, 學陽書房, 182 頁.

(27) 1967. 6. 5 中央選舉管理委員會 委員長 回答, 質疑應答集(追錄) 1969. 158 면.

않았다」는街頭放送을 할 수 있는가?

[답] 議員으로 當選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虛偽事實을 流布한 때에는 法 161 條에 牴觸될 것이며, 候補者를 推薦한 政黨이나 該 候補者는 選舉運動期間中 如斯한 事實을 解明하기 위한 街頭放送을 할 수 없음.

[문 2]<sup>(28)</sup> 甲黨候補 A 는 選舉遊說에서 選舉人에게 大統領令으로 遊說地域에 綜合製鐵工場을 세우기로 確定議決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發言은 得票工作으로 虛偽宣傳한 것이므로 選舉法違反이 아닌가?

[답] 發言內容이 虛偽事實인지 아닌지의 與否는 司直當局에서 具體的인 證據에 의하여 調査判斷하여야 할 것임.

### ③ 實 態

71 年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虛偽事實公表罪의 實態를 보면 總 152 件으로 買收 및 利害誘導罪 다음으로 가장 많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 共和黨 28 件, 新民黨 83 件, 國民黨 12 件, 民衆黨 1 件, 統社黨 2 件, 公務員 4 件이며, 一般人으로서는 共和黨員 6 件, 新民黨員 9 件, 기타 7 件이며, 學生犯罪는 한 件도 없다.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總 14 件으로 全體的인 犯罪統計로 보아서는 많은 편이 아니다. 그 內容을 보면 共和黨 1 件, 新民黨 6 件, 公務員 1 件이며, 一般人으로서는 共和黨員, 新民黨員 각 3 件씩이다.

## (2) 候補者誹謗罪

### ① 意義 및 行爲

候補者誹謗罪는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候補者를 誹謗한 罪이다(法162조). 事實의 摘示에 있어서의 事實은 惡事醜行은 물론 사람의 社會上의 地位나 價値를 侵害함에 足한 사실로서 充分하며, 眞實한 것인가 虛偽의 것인가 또는 公知與否는 不問한다. 摘示의 方法·手段에 是 制限이 있으며, 諸般事情을 종합하여 被害者를 推知할 수 있으면 足하다.

事實의 摘示에 있어서의 公然性은 前述한 바와 같이, 不特定 또는 多數人에 대한 것이라는 說이 우리나라의 判例의 立場이며 通說이다.

誹謗이란 사람의 社會的 評價를 害한다고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表現으로서, 特定人의 社會的 評價를 害할 危險性을 惹起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通俗的으로 말하는 人身攻擊이 이에 該當한다.

### ② 違法性阻却事由

公然히 摘示된 事實이 眞實한 것으로서 그 行爲가 오로지 公益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違法性이 阻却된다<sup>(29)</sup>. 法 162 條 2 項의 「前項의 行爲」에는 誹謗은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한 事

(28) 1967. 6. 27. 中選委員長回答, 質疑應答集(1969 追錄) 158 면.

(29) 1963. 9. 7. 中選委員長回答, 質疑應答集, 213 면 참조.

實의 揭示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公共의 利益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극히 抽象的인 것이나, 言論機關에 의한 報道 등과 같이 特定한 個人 또는 團體의 感情 또는 利益에 關係됨이 없이 客觀的으로 보아 오로지 公共의 便益에 奉仕하는 것을 말한다.<sup>(30)</sup>

[質疑 應答]

[문] 路上·自宅·職場 등에서 친구 또는 同僚間에도 選舉에 관하여 當選 또는 落選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虛偽事實이나, 公然히 事實을 揭示·陳述할 수 없는 것인지 그 限界與否

[답] 그 場所나 適用對象 등의 適用限界는 不問한다. 그러나 단순한 意見의 開陳 또는 意思의 表示를 禁한다는 취지도 아님<sup>(31)</sup>

(3) 實 態

選舉에 있어서 候補者를 誹謗하는 行爲는 公共然하게 또는 隱密히 行해지고 있다. 지난 71年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總 97件으로 이에는 共和黨 25件, 新民黨 45件, 國民黨 6件, 大衆黨과 民衆黨 각 1件, 統一社會黨 2件이며, 公務員이 1件 있다. 一般人으로서는 新民黨員 6件, 기타 8件, 學生으로서 新民黨員 1件, 未檢擧가 1件이다.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總 42件으로 그 內容을 살펴보면, 共和黨 2件, 新民黨 17件, 統社黨 1件, 公務員 1件이다. 一般人으로서는 新民黨員 18件, 기타 2件이 있으며 學生犯罪는 전혀 없다.

(3) 新聞·雜誌 등 不法利用罪

① 選舉法規定과 憲法

國會議員選舉法 제 61 조는 選舉運動期間中 新聞·雜誌 등의 不法利用을 制限하고 있다. 同法은 이를 보다 더 상세하게 제 61 조의 2에서는 新聞·圖書·放送·映畫·壁報 기타의 方法으로 政府의 業績을 讚揚하거나 誹謗하는 有料廣告行爲를 禁止하고 있으며, 제 62 조에서는 虛偽評論·報道를 禁止하고 있으며, 제 63 조는 新聞·雜誌의 通常以外的 方法으로 配付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 이들 條項은 매스·김이 國民의 輿論形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選舉에 있어서 自由와 公正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이들 각 條項과 憲法 제 18 조의 言論·出版의 自由와의 관계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判例는 없는 것 같으나, 日本 判例에 의하면 憲法이 보장하는 表現의 自由는 絶對無制限한 自由가 아니라 合理的인 必要最少限度의 制限이 있는 것은 新聞·雜誌의 본래의 使命에 비추어 당연하다는 것이다. 判決理由를 보면

「公職選舉法 148 조 2 항은 選舉의 公正을 期함에 필요한 限度에서 新聞紙 또는 雜誌를 選舉運動에

(30) 金哲洙, 報道的 自由와 政治人的 名譽, 憲法總覽, 259 면.

(31) 1963. 9. 14. 및 1963. 9. 19. 中選委員長回答, 前揭書 213~214 면 참조.

사용하는 方法을 規制하는데 불과하므로, 原審이 위 判示와 같은 경우를 위 法條에서 말하는 通常의 頒布方法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였다 하여, 所論과 같이 憲法 21 조에서 말하는 出版 및 表現의 自由의 保障에 違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sup>(32)</sup>

고 하였다. 이와 同旨의 高裁 判例가 있다.

「公選法 148 조 제 3 항 所定の 條件을 具備하지 않은 新聞紙에 대하여 選舉運動期間中 選舉에 관한 일체의 報道 또는 評論을 掲載하는 것을 禁止한 235 조의 2, 2 호는 選舉의 公正을 期하고 民主政治의 健全한 발달을 도모하는 公共의 福祉에 合致되는 것으로 憲法 21 조에 違反하지 않는다」.<sup>(33)</sup>

選舉運動期間 중 新聞·雜誌 등에 選舉에 관한 報道 기타 評論을 掲載하지 못하게 한 國會議員選舉法 제 61 조의 規定은 表現의 自由를 완전히 排除한 規定이 아니라 選舉運動 期間에 限하여 公共의 福祉를 위하여 一時 制限되는 것이므로 違憲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음에 문제로 되는 것은 文書<sup>(34)</sup>에 의한 選舉運動의 制限·禁止와 表現의 自由와의 關係, 戶別訪問과 言論의 自由와의 關係이다. 이에 대하여 日本 最高裁判所는 다음과 같이 判示하였다.

「憲法 第 21 條 (우리 憲法 18 조 참조)는 言論·出版 기타 表現의 自由를 絕對無制限으로 保障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自由에는 公共의 福祉를 위하여 必要하고 合理的인 制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일찍이 當裁判所의 判例로 하는 바이다 (昭和 24 年 (壬) 第 2591 號, 同 25 年 9 月 27 日 大法廷判決, 刑集 4 卷 9 號 1799 頁). 그런데 公職選舉에 대하여 文書·圖畫의 無制限한 頒布 등을 許容할 때에는 選舉運動의 自由·公正을 害하고 그 適正·公平을 保障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이와 같은 弊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하고 合理的이라고 인정되는 範圍에서 文書·圖畫頒布의 制限·禁止 등의 規制를 加하는 것은 選舉의 適正·公平을 確保한다는 公共의 福祉를 위하여 이룰 수 없는 措置이므로, 그러한 措置를 인정한 公職選舉法 142 條 (우리 國會議員選舉法 63 조 참조)의 規定을 보아 憲法 21 條에 違反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sup>(35) (36)</sup>

이 判例가 引用하고 있는 昭和 25 年 9 月 27 日의 最高裁 大法廷判決은 다음과 같다.

「選舉運動으로서의 戶別訪問에는 各種 弊害가 따르므로 衆議院議員 選舉法 第 98 條, 地方自治法 72 條 및 教育委員會法 28 條 등은 이를 禁止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言論의 自由가 얼마만큼 制限될 수도 있다. 그러나 憲法 第 21 條는 絕對無制限한 自由를 保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公共의 福祉를 위하여 그 時·所·方法 등에 대하여 合理的인 制限이 스스로 있는 것은 이것을 容認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選舉의 公正을 期하기 위하여 戶別訪問을 禁止한 결과로서 言論自由의 制限을 조

(32) 最高裁 昭和 29 年(あ) 第 787 號, 同 30 年 2 月 16 日 大法廷判決, 刑集 9 卷 2 號 305 頁.

(33) 福岡高裁 昭和 28 年(う) 第 869 號, 同年 8 月 14 日 判決, 刑集 6 卷 7 號 926 頁.

(34) 大法院 判決에 의하면 「문서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당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포함하며, 가령 그 문서 중에서 위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위의 문서에 해당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 (1962. 6. 14 대판 4294 형상 699. 대법원 판결집 제 10 권 1 호 형사 420~421 면.)

(35) 最高裁 昭和 37 年(あ) 第 899 號, 同 39 年 11 月 18 日 大法廷判決, 刑集 18 卷 9 號 561 頁. 大竹武七郎, 前掲書 61 頁.

(36) 最高裁 昭和 28 年(あ) 第 4030 號, 同 30 年 3 月 30 日 大法廷判決, 刑集 9 卷 3 號 635 頁. 이 判決에 대하여는 林田和博, 選舉運動의 自由의 制限, 憲法判例百選 38~39 頁 및 野村敬造, 選舉運動의 自由의 制限, 憲法の 判例, 45~49 頁 참조.

배하는 일이 있다라도 이러한 禁止規定을 所論과 같이 憲法에 違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sup>(37)</sup>

이 判決은 戶別訪問禁止 規定이 憲法 第 21 條(우리 憲法 18 조)에 違反하지 않는다고 宣稱하였다. 同條는 絶對無制限의 自由를 保障한 것이 아니라 必要하고 合理的인 最少限度의 制限은 憲法이 認定하는 바이며, 違憲이 아니라는 見解의 根本態度는 같다.

(2) 新聞·雜誌不法利用罪의 意義

國會議員選舉法 제 61 조는 「누구든지 特定人을 當選 또는 落選시킬 目的으로 新聞(통신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雜誌 기타 刊行物을 經營·編輯·取材 또는 執筆하는 者에게 金品·餐應 기타 利益을 提供하거나 提供할 意思의 表示 또는 約束을 하여 特定政黨 또는 候補者의 選舉에 관한 報道 기타 評論을 掲載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本罪의 客體는 新聞·通信·雜誌 기타의 刊行物을 經營·編輯·取材 또는 執筆하는 者이므로 이들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新聞·雜誌 등의 經營·編輯上의 特殊한 地位를 利用하여 選舉에 관한 報道 기타 評論을 掲載한 경우에는 特殊地位利用罪가 成立하기도 한다(同法 64조). 그러나 假令·眞이 選舉人에게 多大한 影響을 미치는 點을 감안하여 放送과 함께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新聞·通信·雜誌 등 刊行物의 意義와 範圍가 문제로 된다.<sup>(38)</sup> 同法은 「新聞·雜誌 기타 刊行物」이라고 하여 包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刊行物이라고 하더라도 不特定多數人에게 頒布하지 아니하고, 特定한 機關안에서만 配付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sup>(39)</sup>

어떤 日本 判例는

「政黨機關紙도 그것이 一般民衆에게 頒布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또 一定한 題號로서 定期的으로 發行하는 것이면 一般的으로 新聞紙인데, 公職選舉法 제 148 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新聞紙는 有料로 頒布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sup>(40)</sup>

「選舉에 관한 報道 또는 評論을 掲載한 新聞紙가 모두 公職選舉法 제 148 조 제 2 항의 制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 內容이 選舉運動이라고 보여지는 것만이 對象으로 된다」

고 하였다. 判決理由를 보면,

「公職選舉法 제 148 조 제 2 항에서 頒布의 方法이 制限되는 新聞紙는 同條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新聞紙이다. 즉 選舉運動이라고 보여지는 報道 또는 評論을 掲載한 新聞紙로서 同條 제 1 항 但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選舉에 관한 報道 또는 評論을 掲載한 新聞紙가 모두 제 2 항의 制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 內容이 選舉運動이라고 보여지는 것만이 對象으로 된다. 選舉運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 頒布는 自由이다. 그리고 이 選舉運動이란 特定한 選舉에 대하여 特定한 公職候補者의 當選을 目的으로 하여 投票을 얻거나 얻기 위한 有利한 行爲를 말하므로 公職選舉法 제 148 조 제 2 항

(37) 最高裁 昭和 24 年(レ) 第 2591 號, 同 25 年 9 月 27 日 大法院判決, 刑集 4 卷 9 號 1799 頁. 大竹武七郎, 前掲書 62 頁.

(38) 東京 高裁 昭和 35 年(ウ) 第 1002 號, 同年 10 月 31 日 判決, 刑集 13 卷 追錄 1 頁. 상세한 것은 大竹武七郎, 前掲書 96 頁 이하.

(39) 李尙圭, 前掲書 109 頁.

(40) 福岡 高裁 昭和 26 年(ウ) 第 2437 號, 同年 10 月 19 日 判決. 大竹武七郎, 前掲書 101 頁.

違反의 頒布罪로서 處斷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選舉運動에 해당하는 事實을 判示하지 않으면 안된다.<sup>(41)</sup>

禁止對象이 되는 行爲는 ① 特定人을 當選 또는 落選시킬 目的으로, ② 金品·饗應 기타의 利益을 提供할 意思의 表示 또는 約束을 하여, ③ 特定 政黨 또는 候補者의 選舉에 관한 報道 기타의 評論을 掲載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의 要件은 서로 相關關係에 있어서 三者가 서로 結合될 때에 비로소 本罪는 成立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行爲는 業務行爲로서 無妨하다고 하겠다.

〔質疑 應答〕

〔문 1〕 民議院議員 및 參議院議員總選舉에 있어서 當選者豫想記를 新聞報道하는 것이 違法이 되니까?

〔답〕 特定人의 當落을 目的한 것이 아닌 이상 業務行爲로서 無妨함<sup>(42)</sup>

〔문 2〕 大統領候補者가 新聞 등 紙上을 통하여 政見을 發表(例, 9·16·18·19 日字 韓國日報에 掲載되고 있는 大統領候補 紙上 政見發表)하는 것은 大統領選舉法 제 31 조(選舉運動의 限界)의 規定에 違反된 選舉運動이라고 思料되는 바 實見如何?

〔답〕 新聞社에서 그 본래의 業務行爲로서 候補者의 政見을 原稿로서 請託하여 公平한 方法으로 報道하는 것은 新聞社의 取材行爲로 보아 無妨한 것임<sup>(43)</sup>

〔문 3〕 新聞 또는 雜誌 등에 候補者에 대한 虛偽報道가 掲載되었을 때 候補者가 個人의 資格으로 이에 대한 解明書를 作成하여 新聞에 發表하거나 解明壁報를 貼付하는 行爲를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답〕 무방함. 단, 選舉運動을 위한 目的에 利用할 수 없음<sup>(44)</sup>

〔문 4〕 月刊誌「道義生活」에 與黨公薦으로 立候補한 人의 原稿가 掲載되어 있는 바, 그 內容이 選舉와는 직접적인 關聯이 없는 非政治的인 論調이므로 이를 그대로 印刷하여 全國一圓에 發賣하여도 選舉法에 抵触받지 않는지요?

〔답〕 貴問의 경우 選舉와 關聯없이 特定候補者 또는 政黨 기타 政黨團體를 支持·推薦 또는 反對하는 內容이 表示되지 아니한 原稿에 의한 雜誌라면 通常方法에 의하여 有價로 販賣하는 것은 無妨한 것임<sup>(45)</sup>

이상과 같은 行爲는 特定人의 當落을 目的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事實을 取材報道하여 通常의 方法으로 配付하는 것이므로 業務行爲로 보아 타당하다. 그러나 特定人을 當落시킬 目的의 意識을 가지고 選舉에 관한 報道·評論을 掲載하여 이를 配付하면 違法이 된다.

③ 通常方法 外의 配付

法 63 條의 新聞·雜誌의 通常方法 外의 配付禁止規定은 모든 新聞·雜誌 등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特定政黨이나 候補者에게 有利한 「選舉에 관한 記事」를 게재한 新聞雜誌를 正常的인 配付方法 이외의 方法을 禁止하는 것이다.

(41) 福岡 高裁 昭和 28年(5) 第 94 號, 同年 3月 26日 判決, 刑集 6卷 4號 441頁.

(42) 1960. 7. 27. 中選委員長回答. 前掲書 205면

(43) 1963. 9. 24. 中選委員長 回答. 前掲書 204면.

(44) 1958. 4. 11. 中選委員長 回答. 前掲書 205면

(45) 1963. 11. 14. 中選委員長 回答. 前掲書 202면.

「通常 이의의 方法」이란 選舉期間 前의 正常的인 配付方法이 아닌 特別配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有料이던 것을 無料配付한다거나 廉價로 配付하는 것, 종래에는 郵送하는 方法에 의하였는데 姓名未詳者에게 交付하여 配付시킨다거나,<sup>(46)</sup> 航空機로 上空에서 撒布하는 경우<sup>(47)</sup>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地方自治團體가 종래부터 그의 補助機關이나 下部機關인 各室・課長과 邑・面・洞(里) 長에게 新聞社로 하여금 個別的으로 新聞을 配達하게 하고, 그 購讀料을 自治團體의 豫算에서 支辨하는 行爲는 無妨하다<sup>(48)</sup>, 統・班長에게 選舉에 관한 記事가 掲載된 新聞을 選舉運動期間中에 配付하는 것은 違法이다.<sup>(49)</sup>

#### ④ 本罪의 實態

新聞・雜誌 등 不法利用에 관한 지난 71年 國會議員選舉의 實態를 보면 크게 黨機關紙配付, 冊子傳單, 記號票 및 名脚寫眞配付, 기타로 나눌 수 있다. 違反事案 總 178件 가운데 黨機關紙配付가 93件을 차지한다. 그 상세한 내용은 共和黨 21件, 新民黨 38件이며 群少政黨은 한 件의 違反도 없는 것이 特色이며, 一般人으로서 共和黨員 2件 新民黨員 27件, 기타 2件이며, 學生으로서는 新民黨員 2件이 있다.

冊子傳單에 관하여는 總 18件인데 共和黨 1件, 新民黨 8件, 國民黨 3件, 公務員 1件이다. 一般人으로서 共和黨員 2件, 新民黨員 1件, 기타 1件이며, 學生으로서 新民黨員 1件이다.

記號票 및 名脚寫眞配付는 總 51件으로 共和黨 7件, 新民黨 22件, 國民黨 1件이다. 一般人으로서는 共和黨員 5件, 新民黨員 13件, 기타 2件이며, 學生으로서는 新民黨員 1件이 있다. 기타의 違反件數는 모두 16件으로 共和黨 4件, 新民黨 6件, 公務員 1件 一般人으로서 共和黨員 3件, 新民黨員 1件, 新民黨員 學生 1件이 있다.

國會議員選舉와 大統領選舉에 있어서 黨機關紙 및 宣傳物 不法利用에 관한 違反事案은 典型的인 選舉犯罪의 類型으로 모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 (4) 放送不正利用罪

#### ① 意義 및 行爲

放送施設不正利用罪란 虛僞放送禁止에 관한 제 58조의 규정, 經歷放送의 公正을 期하기 위한 제 59조의 규정 또는 放送施設의 利用을 制限한 제 60조 제 2항의 규정에 違反하는 行爲를 한 罪를 말한다.

(46) 最高裁 昭和 29年(あ) 第 787號 同 30年 2月 16日 大法廷 判決, 刑集 9卷 2號 305頁.

(47) 東京 高裁 昭和 35年(う) 第 1002號 同年 10月 31日 判決, 刑集 13卷 追錄 1頁. 大竹武七郎, 前掲書, 96, 103頁.

(48) 李尙圭, 前掲書 111면.

(49) 1963. 9. 22 中選委員長 回答.

選舉에 관한 放送의 役割로서는 報道機關에 의한 報道評論과, 候補者 등에 의한 選舉運動의 方法으로서의 使用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放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明確한 規定은 없으나, 不特定 또는 多數人에 대하여 有線 또는 無線의 電氣通信設備을 使用하여 音響 또는 映像으로 一定한 事項을 傳達하는 方法을 意味한다고 할 것이다. 電話와 틀리는 점은 相對方이 不特定 또는 多數人인 것이다.

報道機關이 選舉運動을 위한 것이 아니고, 例컨대 뉴스, 實況錄音 등의 形式으로 選舉에 관한 報道評論을 放送하는 경우 그 內容이 우연히 特定政黨 또는 特定候補者에게 有利한 結果로 되어도 本條의 禁止에 該當한다고 볼 수 없다.

法 59 條에서 말하는 「放送施設」에는 有線·無線의 일체의 放送設備가 包含된다. 따라서 街頭放送 등의 廣告放送設備는 물론 職場放送 등이 共同聽取用 放送設備을 選舉運動을 위하여 使用하는 것도 禁止된다. 劇場·公會堂 등의 擴聲裝置는 그것이 法 57 條에서 규정한 擴聲機인 경우에 限하여 使用할 수 있다. 廣告放送設備, 共同聽取用 放送設備 등을 法 57 條에 의하여 許容된 擴聲機로서 使用할 수 있는가의 與否에 대해서는 例컨대 同條의 規定에 의한 表示를 한 것 일지라도 그것은 選舉運動을 위하여 인정된 擴聲機의 使用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放送施設不正利用에 해당된다. 電話는 放送施設에 해당되지 않는다.

政黨이 政策의 普及宣傳을 위하여 放送하는 것은 그것이 選舉運動에 미치지 않는 限 아무런 規制도 받지 않으나, 特定候補者를 위한 投票依賴를 하는 등 選舉運動을 하면 本條違反이 된다.<sup>(50)</sup>

(50) 日本 選舉法에 대한 質疑應答은 다음과 같다. 學陽書房, 前掲書 81~83 頁.

【質疑 應答】

【問 1】 ① 다음과 같은 機能을 가지는 共同聽取用 有線放送電話裝置(스피커·텔레폰)은 法 60 條의 放送施設에 포함되는가?

○ 加入戶數는 830 戶 정도인데 同一 回線에 5 戶 내지 30 戶가량이 接續되며, 農業協同組合에 電話交換과 아울러 有線放送의 裝置가 있다.

○ 電話器와 스피커가 併設되어 있고, 呼出은 스피커로 하는데, 이 경우 同一 回線에 接續되어 있는 스피커 全部가 作用한다.

○ 同一 回線에 接續되어 있는 電話로 다른 通話를 盜聽할 수 있으며, 또 스피커에 귀를 가까이 대면 용이하게 聽取할 정도로 通話가 누설된다.

② 前記의 裝置를 使用한 다음의 行爲는 不正放送利用罪에 해당하는가?

(1) 各戶를 戶別로 呼出하여 選舉運動을 하는 것

(2) 同一 回線의 各戶 혹은 全加入者를 一濟히 呼出하여 스피커를 使用하여 選舉運動을 하는 것

【답】 ① 共同聽取用 有線放送 電話裝置는 放送施設에 해당된다.

② (1) 違反되지 않는다.

(2) 違反된다.

【問 2】 候補者의 代理人이 法 60 條의 規定에 의한 政見放送을 한 때에는 違反으로 되는가?

【답】 法 60 條 違反으로 된다.

【問 3】 民間放送에서 ○○黨 提供의 라디오 콩트와 함께 漫談放送을 實施함에 있어, 그 前後에 ○○黨의 政策·綱領 등 選舉에 관한 事項을 放送하는 것은 法 60 條의 制限을 받는가?

【답】 選舉運動이 되지 않는 限 관계없다.

【問 4】 立會演說會에 있어서 候補者의 演說을 錄音하여 이를 라디오로 放送하는 것은 放送禁止違反



放送에 관한 質疑에 대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應答하였다.

〔質疑 應答〕

〔문 1〕 政黨이 所屬候補者의 選舉放送을 一括해서 하는지 또는 候補者 各者가 個別的으로 選舉放送을 하는 것인지?

〔답〕 放送施設을 利用하는 경우에는 候補者가 利用하는 것이 아니라 그 所屬 候補者의 選舉運動을 위하여 全國區 候補者는 政黨의 中央黨이, 地域區 候補者는 政黨의 地區黨이, 地區黨이 없는 地域區 候補者를 위하여는 政黨의 中央黨이 各자 이용하는 것임.<sup>(51)</sup>

〔문 2〕 政黨이 그 所屬 候補者의 選舉運動을 위하여 放送施設을 利用함에 있어서 그 所屬 候補者로 하여금 放送시킬 수 있는지?

〔답〕 放送시킬 수 있다.<sup>(52)</sup>

〔문 3〕 大統領 立候補者가 拘束되어 있을 경우 所屬 政黨의 要請에 의해 獄中錄音으로 放送할 수 있는지?

〔답〕 無妨함.<sup>(53)</sup>

〔문 4〕 國營放送으로서의 公報活動의 一部인 選舉啓蒙放送(選舉法 解說 등 포함)을 할 수 있는지?

〔답〕 選舉啓蒙에 관한 사항은 選舉管理委員會法 제 12 조의 規定에 의하여 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專管事項이므로 放送局에서는 選舉管理委員會의 要請이 있는 경우에 限하여 選舉啓蒙을 위한 放送을 할 수 있는 것임.<sup>(54)</sup>

〔문 5〕 政黨이 그 所屬 候補者의 選舉運動을 위하여 放送 途中 國家保安法 기타 現行法에 制裁되는 發言을 하는 경우 放送施設管理者는 이를 制止할 수 있는지?

〔답〕 放送內容이 反共法·國家保安法에 違反하여 共產政權을 支持·讚揚하는 등 國家安危에 관한 現行犯인 경우에는 그 發言을 中止시킬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制止할 수 없음.<sup>(55)</sup>

② 實 態

放送施設不正利用에 관한 지난 71年 國會議員選舉의 實態를 보면 總 6件으로 新民黨, 國民黨, 統社黨, 公務員, 一般人으로서 共和黨員, 新民黨員 各각 1件씩이다.

이에 反하여 大統領選舉에서는 단 한 件도 없는 점이 特色이다.

(51) 1963. 11. 4. 中選委員長回答, 質疑應答集, 200면.

(52) 1963. 11. 16. 中選委員長回答, 前揭書, 200면.

(53) 1963. 9. 23. 中選委員長回答, 前揭書, 197면.

(54) 1963. 10. 11. 中選委員長回答, 前揭書, 199면.

(55) 1963. 11. 19. 中選委員長回答, 前揭書, 201면.

으로 되는가?

〔답〕 特定候補者를 當選시키거나 落選시킬 目的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全候補者의 演說을 전혀 같은 條件下에 錄音하고 이를 放送하는 것은 관계없다.

〔문 5〕 民間放送事業者가 候補者 以外の 政黨代表者에게 有料로 政策의 普及·宣傳을 放送하는 것은 관계없는가?

〔답〕 事實로서 判斷할 것이나, 選舉運動에 미치지 않는 限 관계없다.

〔문 6〕 政黨이 政策의 普及·宣傳을 위한 라디오 放送을 하고, 아울러 自黨 候補者의 姓名을 들어 投票依賴하는 것은 관계없는가?

〔답〕 政黨이 政策의 普及·宣傳을 위하여 放送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特定候補者를 위하여 投票依賴를 할 때에는 法 60條 違反이 된다.

〔문 7〕 個人演說會에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有線放送으로 「여러분 公會堂에 모여주십시오. 午後 ○時까지 와 주십시오」라고 放送하는 것은 違反되지 않는가?

〔답〕 個人演說會의 開催告知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法 60條에 違反된다.

#### (4) 僞計・詐術使用罪

##### ① 意義 및 行爲

僞計・詐術使用罪는 有權者로 하여금 誤認케 하기 위하여 僞計・詐術을 使用하거나 使用하게 한 罪이다(法 161條 2項). 投票誤導罪라고도 한다.<sup>(56)</sup>

僞計나 詐術이란 他人을 錯誤에 빠뜨린 手段이 되는 詐僞의 計略이나 術策을 말한다. 그러므로 他人을 錯誤에 빠뜨릴 수 있는 僞計나 詐術의 行使나 行使의 教唆로써 足하며, 실제로 錯誤에 빠뜨리는 效果가 있었는가의 여부는 不問한다. 다만, 本行爲는 選舉日 公告日로부터 投票日까지의 것에 限한다.

##### ② 實 態

71年 選舉에 있어서의 僞計詐術使用의 實態는 總 23件이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 共和黨 1件, 新民黨 11件, 國民黨 2件이며, 一般人으로서는 共和黨員은 없고, 新民黨員 4件, 기타 4件이다. 學生犯罪는 없으며 未檢擧가 1件있다.

이에 反하여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總 18件인 마, 新民黨 9件, 一般人으로서 新民黨員 9件으로 나타나 있다. 選舉犯罪全體를 살펴볼 때 大統領選舉에 있어서 共和・新民 兩黨에 의한 犯罪가 현저한 것은 輿野의 單一候補對決化하는 選舉風土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6. 選舉犯罪의 煽動罪

選舉犯罪에 대해서도 刑法總則의 教唆, 幫助 등에 관한 規定을 물론 適用된다. 그러나 法 169條는 그 밖에 일정한 選舉犯罪에 대한 煽動行爲를 處罰하는 規定을 두고 있다. 煽動行爲가 處罰되는 選舉犯罪는 買收罪를 비롯한 가장 넓은 意味에 있어서의 選舉의 自由를 妨害하는 行爲에 限定되어 있으며, 이른바 形式犯을 비롯하여 詐僞登載, 詐僞投票 등의 罪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煽動」이라 함은 不特定 또는 多數人에 대하여, 特定한 行爲를 實行시킬 決意를 하게 하거나, 既存의 決意를 더욱 助長시킬만한 刺戟을 주는 것을 말한다. 「教唆」가 1人 또는 數人의 特定人에 대한 行爲이며, 相對方에게 犯罪의 實行을 決意시키고, 그 犯罪의 實行으로 비로소 成立하는 것임에 反하여, 「煽動」은 不特定 또는 多數人에 대한 行爲이며, 그로 인하여 相對方이 犯罪를 實行한 것은 물론, 그 決意를 하게한 것도 그 成立에 必要한 것은 아니

(56) 李尙圭, 前揭書, 217 年.

다. 이러한 점에서 「教唆」와 다르다.

「煽動」의 方法은 演說・壁報・新聞・雜誌・포스타 등 어떠한 方法에 의한 것일지라도 本條에 該當된다. 新聞・雜誌에 대해서는 實際로 執筆한 者 以外에 編集擔當者도 處罰되는 점에 注意를 要한다.

## 7. 行政犯的 選舉犯罪

行政犯的 選舉犯罪에는 ① 違法選舉運動罪 ② 事前運動・特殊地位利用・戶別訪問 등 不正運動罪(法 164 條), ③ 寄附行爲의 禁止制限 등 違反罪(法 166 條), ④ 選舉費用不正支出罪(法 167 條), ⑤ 各種制限規定違反罪(法 165 條)가 있다.

### (1) 違法選舉運動罪

違法選舉運動罪는 政府에 종사하는 公務員 등이 違法으로 選舉運動을 한 경우에 成立하는 罪로서 1970 年 12 月 22 日의 選舉法 改正에 의하여 追加되었다.

#### ① 內 容

① 政府가 株式의 過半數를 가지는 企業體의 任・職員과 鄉土豫備軍의 小隊長級 以上の 幹部 및 里・統・班長이 議員의 任期滿了前 3 月前에 그 職을 離任하지 아니하고 選舉事務員, 演說員, 投票所參觀人이 된 罪(34조 3항)

㉠ 公務員이 正常的이 아닌 出張을 한 罪(64조의 2)

㉡ 起工式 등 禁止된 集會를 開催한 罪(63조의 2)

㉢ 政府의 業績을 讚揚하거나 非難하는 有料廣告罪(61조의 2)

㉣ 法官의 令狀없이 酒稅法, 山林法 違反事案을 搜索한 罪(74조의 2)

#### ② 實 態

本罪는 公務員의 選舉運動 등을 排除하기 위하여 新設된 것이다. 원래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로써 保障되어 있으나, 與黨과 政府에 의하여 選舉에 關與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다.

지난 71 年 國會議員選舉時의 選舉犯罪 가운데 公務員의 犯法行爲는 總 1,735 件中 約 12% 인 206 件이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詐僞의 方法으로 選舉人名簿에 登錄한 罪와 選舉의 自由妨害罪, 買收 및 利害誘導罪, 그리고 投票事犯의 順이다. 기타의 不正選舉運動도 詐僞登錄 다음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公務員 選舉犯罪는 公務員職의 權限을 濫用 내지 不法行使하는데 그 特色이 있다.

(2) 事前運動・特殊地位利用・戶別訪問 등 不正運動罪

① 事前運動

i) 意 義

事前運動이란 候補者가 登錄하기 以前의 選舉運動을 말하며, 이는 禁止된다. 法 32 條는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期間을 明示하여 事前運動禁止를 反對로 규정하고 있다.

選舉運動은 當選되거나 되게 하려는 特定한 候補者가 登錄을 한 때부터 選舉日의 前日까지 에 限한다. 그러므로 選舉運動의 終期는 모두 같으나, 그 始期는 각 候補者登錄의 先後에 따라 각각 差異가 있게 된다.<sup>(57)</sup> 登錄을 한 때란 登錄申請書類를 管轄 選舉管理委員會에 提出한 時點을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그 時點 以前에는 選舉運動을 할 수 없다.

ii) 行 爲

事前運動으로서 禁止되는 것은 人체의 選舉運動이므로, 買收나 戶別訪問과 같이 選舉運動이 許容되는 期間中에도 禁止되는 것은 물론이며, 이른바 個個의 面接・電話에 의한 選舉運動과 같이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期間中에 禁止되어 있지않은 行爲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立候補할 意思를 가지는 者가 그 登錄 前에 選舉運動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事前運動禁止에 違反하는 것이며, 그 後 그 者가 立候補했는가의 興否는 不問한다.

事前運動이 禁止되어 있다 할 지라도 立候補 登錄 前에 있어서의 選舉에 관한 일체의 活動이 禁止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러한 活動 일체가 禁止된다면 극히 不合理한 結果를 초래할 것이다. 例컨대 選舉運動用 壁報도 印刷할 수 없다면 立候補 登錄後에 合法的으로 行할 壁報도 揭示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① 立候補 準備行爲로서 立候補를 위하여 필요한 行爲와 選舉運動準備行爲 ② 地盤培養行爲 ③ 政治活動 ④ 後援會活動 ⑤ 社交의 行爲 같은 것은 이를 立候補 登錄 前에 하더라도 事前運動禁止에 違反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注意할 점은 이러한 行爲일지라도 그것이 特定候補者를 當選시킬 目的으로 一般 選舉人에게 影響을 주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事前運動禁止에 違反되는 경우도 있다.<sup>(58)</sup>

(57) 1963. 9. 24. 中選委員長回答, 前掲書, 90 頁.

(58) 日本 選舉法에 대한 質疑應答은 다음과 같다. 學陽書房, 前掲書, 15 頁.

[質疑 應答]

[問 1] 다음의 行爲를 立候補 登錄前에 행한 경우 事前運動에 該當되는가?

① 壁報의 印刷 ② 選舉事務所의 借入

[답] ① 該當되지 않는다.

② 選舉事務所 借入만으로는 該當되지 않는다.

[問 2] 立候補할 意思가 있는 特定한 者의 後援會를 組織하기 위하여 各戶를 訪問하여 署名・捺印을 求하는 行爲는 관계 없는가?

[답] 立候補豫定者의 人格敬慕, 事業後援 등을 위하여 後援會를 組織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위와 같은 行爲는 아울러 立候補豫定者에게 投票하도록 할 目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가 많고, 戶別訪問・署名運動禁止와 함께 事前運動禁止에 違反하는 것으로 된다.

iii) 實 態

71年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事前選舉運動의 實態를 보면 總 38件이다. 그 內容을 보면 共和黨 5件, 新民黨 17件, 國民黨 1件, 大衆黨 2件, 公務員 3件이다. 一般人으로서는 共和黨員 4件, 新民黨員 5件, 기타 1件이다.

大統領選舉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總 55件으로 共和黨 2件임에 대하여 新民黨이 45件으로 壓倒의으로 많다. 公務員犯罪는 1件이며, 一般人으로서 新民黨員 5件이 있다. 國會議員選舉에서와는 달리 2件이 未檢狀態에 있다.

(2) 特殊地位利用

i) 意義 및 行爲

法 64條는 學生 또는 未成年者에 대한 特殊關係를 利用하여 選舉運動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 또 教育機關이나 宗教的·職業的 團體에 대한 特殊關係의 利用도 禁止하고 있다(同條 2項).

「特殊關係」라 함은 學生에 관하여는 師弟關係를 말하며, 未成年者에 대한 것은 보통 學生의 範疇에 속하게 되므로, 學生아닌 未成年者 만이 문제로 된다. 그러나 學生 이외의 未成年者에 대한 特殊關係는 第 2項의 規定에 의한 未成年者의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한다.

特殊關係를 利用한 選舉運動에는 그 關係를 利用하여 投票의 周旋勸誘, 演說會의 開催 기타 選舉運動의 企劃에 關與하여 그 企劃의 實施를 指導·指示하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이러한 行爲를 하도록 하는 選舉運動準備行爲, 後援團體를 結成하는 行爲, 文書·圖畫 등의 揭示·頒布 등의 行爲, 利益供與行爲 등이 있다.

教育途上에 있는 學生에게 教育者가 師弟關係를 利用하여 特定한 候補者의 選舉運動을 하는 것은 教育上 좋지 못하다는 趣旨에서 나온 것이다.

教育機關에 대한 特殊關係를 利用한다는 것은 그 地位에 따라 兒童·生徒·學生에 대한 영향력을 利用하는 것이다. 직접 兒童·生徒·學生을 選舉運動에 從事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이들 父兄에게 影響력을 미치는 것도 포함된다.

公務員이 그 地位를 利用하여 選舉運動을 한 경우에는 刑이 加重된다.<sup>(59)</sup>

「公務員이 그 地位를 利用하여」에 관하여 大法院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59) 特殊地位利用에 관한 日本의 質疑應答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學陽書房, 前掲書, 33頁.

〔質疑 應答〕

〔문 1〕 敎諭의 일을 돕는 高等學校의 講師(非常勤)와 學生의 關係는 法 65條에서 말하는 教育機關에 대한 特殊關係에 該當되는가?

〔답〕 貴見과 같다.

〔문 2〕 國民學校의 敎諭가 授業中에 特定候補者를 支持하는 內容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法 65條 違反인가?

〔답〕 違反된다.

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의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정당하다」.

고 해석한 바 있다.<sup>(60)</sup>

## ii) 實 態

71年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의 特殊地位를 利用한 選舉犯罪는 總 14 件이다. 이 가운데 13 件이 公務員에 의한 것이며, 기타가 1 件이다. 本罪의 性質上 公務員이나 教育者에 의한 것이 一般的이기 때문일 것이다.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도 總 4 件이 모두 公務員에 의한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公務員에 의한 本條違反의 경우는 刑이 加重된다.

## ③ 戶別訪問<sup>(61)</sup>

누구든지 選舉運動을 하기 위하여 戶別로 訪問할 수 없다(法 65 條 1 項). 이와 같이 戶別訪問이 禁止되는 理由는 買收 기타 違反行爲를 할 機會를 만들며, 選舉의 公正을 害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 i) 意 義

戶別訪問이란 選舉運動을 하기 위하여 二戶 以上の 選舉人의 住居나 이에 準하는 場所를 連續하여 訪問하는 것을 말한다.

戶別訪問禁止의 違反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選舉運動을 하기 위한 目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投票依賴의 意思가 전혀 없이, 단순히 選舉演說을 依賴하기 위하여 數名의 사람이 그 居宅에 訪問하는 것은 그것이 순수한 目的을 위한 것이라면 戶別訪問違反은 成立되지 않는다. 그러나 例컨대 特定候補者의 選舉運動者가 平素에는 全然 關係없는 選舉人의 居宅을 數戶 또는 數十戶 訪問하고, 特定候補者를 위한 選舉運動을 하는 경우에는 그 參與 目的은 特定候補者를 위한 投票의 依賴에 있으며, 그 姓名을 말하여 이것이 選舉人에게 강한 印象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64 條 1 項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조 2 項에 違反되는 것이다.

戶別訪問違反이 成立하기 위하여는 二戶 以上の 選舉人의 居宅을 訪問할 것을 要한다. 처음부터 數戶의 選舉人의 居宅을 訪問할 豫定으로 最初의 一戶를 訪問한 때에는 다른 數戶는 現實적으로 訪問하지 않더라도 이미 戶別訪問違反이 成立한다. 日本 判例는 「戶別訪問이란 連續하여 二 以上の 住居를 訪問하는 것을 指稱하며 반드시 數名 혹은 그 以上の 訪問을 必要로 하는 것이 아니다」<sup>(62)</sup>고 하여 二人의 居宅을 連續訪問한 것을 有罪로 하였다.

(60) 1969. 7. 22 대판 69 도 195. 대법원 관결집 제 17 권 2 호 형사 483 면.

(61) 阪上 順夫, 現代選舉學, 133 頁 以下. 大竹武七郎, 選舉法判例研究, 33~57 頁.

(62) 最高裁 昭和 43 年(あ) 第 56 號, 同年 11 月 1 日 第二小法廷判決, 刑集 22 卷 12 號 1319 頁.

상세한 것은 大竹武七郎, 選舉法判例研究, 43 頁 이하 참조.

連續하여 訪問하는 것을 要하는가의 與否에 關하여 法文上 明白하지 않으나, 이를 肯定하는 判例가 있다.

戶別訪問違反이 成立하기 爲하러는 特定候補者를 爲한 選舉運動의 意思로써 選舉人의 居宅 訪問을 한 것이 證明되면 足하며, 반드시 相對方과 面接하여 그 意思를 通한 것을 要件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訪問에 相對方이 不在였더라도, 또 面會를 거절하여도, 被訪問者宅에서 어린이가 應接했더라도 그 居宅에 들어가 面會를 求하는 行爲는 바로 違反이 된다.

戶別訪問과 混同되기 쉬운 것은 個別面接인데, 法에서도 이에 대한 禁止規定을 두지 않고 있다. 個別面接이란 候補者 등이 街頭에서 가다 만난 사람, 버스나 電車中에서 만난 사람 등에게 投票를 依賴하는 行爲를 말한다. 演說과 區別되는 점은 그 依賴行爲가 個別的인가의 與否에 의한다.

또 電話로 한 사람 한 사람 呼出하는 選舉運動은 個別 面接과 같이 偶然한 機會를 利用하는 것은 아니나, 戶別訪問과 같이 相對方의 居宅을 訪問하는 것도 아니고 買收 기타 選舉의 公正을 害하는 行爲가 介入할 餘地가 적다고 생각되므로 個別面接과 같이 自由로 行할 수 있다.<sup>(63)</sup>

ii) 戶別訪問의 類似行爲

法 65條 2項의 規定은 戶別訪問의 制限에 대한 脫法行爲를 禁止하기 爲한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特定候補者에게 投票를 依賴하는 것과 같은 直接的인 選舉運動이 아니더라도 演說會를 通知한다는 名目아래 候補者의 姓名 또는 그가 所屬하는 政黨 기타 政治團體의 名稱을 말하여 그 姓名·名稱에 關하여 選舉人에게 강한 印象을 줌으로서 得票하려는 間接的인 選舉運動도 그것이 戶別訪問에 의한 것인 限, 戶別訪問禁止에 해당하게 하고 있다.<sup>(64)</sup>

iii) 實 態

71年 國會議員選舉時의 戶別訪問 狀況은 總 135件으로 買收, 虛偽事實公表, 選舉의 自由妨害 다음으로 많은 數字를 나타내고 있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 共和黨 14件, 新民黨 70

(63) 日本 選舉法에 關한 質疑應答은 다음과 같다. 學陽書房, 前掲書 101頁.

[質疑 應答]

[문] 壁報揭示의 承諾을 얻기 爲하여 訪問하는 行爲는 法 65條 違反이 되는가?

[답] 순수하게 그 目的만이라면 戶別訪問은 아니나, 그 行爲의 態樣에 따라 選舉運動할 目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違反이 된다.

(64) 學陽書房, 前掲書, 103頁.

[質疑 應答]

[문] 候補者를 爲하여 選舉運動期間中에 選舉人宅을 戶別로 訪問하여 寄附를 募集하는 行爲는 어떤가?

[답] 예컨대 選舉運動資金의 獲得이라는 間接的인 行爲일지라도 選舉運動을 爲하여 戶別로 候補者의 姓名·政黨名 등을 말하는 경우에는 法 65條 2項 違反이 된다.

件, 國民黨, 大衆黨 각 1 件이며, 公務員이 2 件이다. 一般人으로서는 共和黨員이 5 件, 新民黨員이 37 件, 기타 3 件, 學生犯罪로서는 新民黨員 2 件이다.

大統領選舉에 있어도 總 24 件中에서 新民黨이 20 件으로 압도적이며, 共和黨이 2 件, 一般人으로서는 共和·新民黨員이 각 1 件씩이 있다.

### (3) 寄附行爲의 禁止<sup>(65)</sup>

#### ① 意義 및 行爲

國會議員選舉法은 166 조에서 寄附行爲의 禁止와 制限에 대한 違反罪를 規定하고 있다. 寄附行爲의 禁止·制限의 內容을 보면

- ① 選舉人의 買收를 없애기 위한 候補者 및 그와 特定한 關係에 있는 者의 一定한 期間중의 寄附行爲 禁止(72 조)
- ② 寄附의 勸誘·要求 등의 禁止(73 조)
- ③ 寄附받는 行爲의 禁止(74 조)
- ④ 交通施設便宜提供의 禁止(75 조)

등이 있다.

#### ② 實 態

1971 年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의 寄附行爲 禁止違反의 實態를 보면 모두 8 件으로 共和黨 2 件, 新民黨 5 件, 一般人으로서 共和黨員 1 件이다. 交通施設便宜提供은 共和黨이 1 件 있을 뿐 대체적으로 적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國會議員選舉보다 倍나 더 많은 總 15 件의 違反事件이 발생하였다. 이 중 共和黨이 4 件, 新民黨 3 件, 公務員이 2 件이며, 一般人으로서 共和黨員, 新民黨員, 기타가 각각 2 件이다, 交通施設便宜提供은 1 件도 없다.

### (4) 選舉費用不正支出罪

選舉費用不正支出 등 罪는 法 78 條에 규정한 選舉費用의 限度額 및 選舉費用의 支出에 관한 會計責任者의 責任 및 事務節次를 實效性있게 保障하기 위한 目的에서 規定되었다(法 167條). 本罪는 選舉費用의 超過支出罪와 會計責任者의 職務 등에 관한 罪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 選舉費用의 超過支出罪

##### i) 意 義

選舉費用의 超過支出罪란 全國區選舉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地域區選舉에 있

(65) 金哲洙, 政黨組織과 그 財政의 法的規制, 思想界 1962 年 7월호. 李常民, 選舉와 政治資金의 函數關係, 政經研究 1970 年 11 월호.



어서는 서울特別市·釜山市 및 道 選舉管理委員會가 각각 정하여 公示한 選舉費用의 制限額을 超過하여 選舉費用을 支出한 罪이다.

本罪의 主體는 政黨·候補者·選舉事務長·會計責任者·會計補助員이다. 選舉費用의 支出은 오직 會計責任者 만이 할 수 있으며(法 84條), 그 이외의 者는 政黨이나 候補者일지라도 누구든지 選舉費用을 支出할 수 없다. 會計責任者 이외의 者가 選舉費用의 制限額을 超過하여 支出한 경우에는 法 84條 違反罪와 競合한다. 그러나 그들은 超過支出의 責任을 질 수 없으므로, 오직 會計責任者가 超過支出하도록 教唆한 責任만을 묻는다.

ii) 行 爲

本罪의 行爲는 制限額을 超過하여 選舉費用을 支出하거나 支出하게 한 行爲이다. 超過支出에 대한 會計責任者의 責任은 그가 支出한 것에 限하는가, 아니면 他人이 事實上 支出한 金額도 合算하는 것인가? 他人의 支出行爲와 共同關係에 있지 않았던 限 그 자신의 支出行爲에 대해서만 責任을 진다. 會計責任者가 選舉費用을 超過支出한 責任의 有無는 그 자신의 支出額을 基準으로 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事實行爲에 대한 刑事責任은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行爲者가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會計責任者의 職務 등에 관한 罪

本罪는 政黨·候補者 또는 會計責任者가 ① 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時點(法 82條), ② 會計責任者의 會計帳簿作成·備置義務(法 83條), ③ 會計責任者 이외의 者의 選舉費用支出行爲의 禁止(法 84條), ④ 選舉費用支出時의 證憑書類備置義務(法 85條), ⑤ 會計責任者의 支出報告義務(法 86條), ⑥ 會計責任者의 簿冊 등 保存義務(法 87條), ⑦ 選舉管理委員會의 監督(法 88條), 또는 ⑧ 選舉事務 關係者 등에 관한 實費補償義務(法 90條)에 違反한 行爲를 한 罪이다.

(5) 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意 義

法 165條와 168條는 選舉法上的 各種制限規定의 實效性を 확보하기 위한 包括的·整理的인 規定이다. 同條에 規定된 處罰對象인 行爲는 각각 關聯되는 法條에서 說明하였기에 생략한다.

法 168條의 各種制限規定違反罪는 選舉法上的 制限規定 중 제 142조 내지 제 167조에 해당되는 行爲를 한 경우에는 각각 그 규정된 바에 따라서 處罰되는 것이나, 그 밖의 경우에는 모두 本條의 規定이 適用된다.

同條 제 2항은 申告義務의 懈怠를 규정하여 行政罰로서 過怠料에 處하고 있다.

【質疑 應答】

【문】 ① 各種 申告 또는 制限規定을 不履行하였을 때는 關係 選舉區 選舉委員會는 수시 이를 告發하

어야 하는지?

② 選舉事務執行上 支障이 없을 경우에는 前號의 告發을 하지 않아도 좋은지?

[답] 選舉區 選舉委員會의 裁量에 의하여 決定할 것임.<sup>(66)</sup>

## ② 實 態

71年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各種制限規定에 違反한 不正選舉運動罪는 總 219件이다. 이는 買收罪 및 利害誘導罪 다음가는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政黨別로는 共和黨 31件, 新民黨 63件, 國民黨 12件, 統一社會黨 1件이다. 公務員犯罪은 38件이며, 一般人으로서 共和黨員 17件, 新民黨員 34件, 기타 14件이다. 學生犯罪로서는 新民黨員인 學生 4件이 있다. 이 중 2件은 未檢狀態에 있다.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總 196件으로 選舉犯罪의 第 1位를 차지하고 있다. 黨機關紙配布가 175件임에 비추어 買收罪는 단 8件으로 나타나 있다. 國會議員選舉보다는 大統領選舉에서의 各種 雜犯의 比重이 더 큰 것이 特色이다.

그 內容을 政黨別로 보면 共和黨 11件, 新民黨 56件, 國民黨 1件이며, 公務員犯罪가 46件으로 압도적인 것이 特徵이다. 一般人으로서는 共和黨員 16件, 新民黨員 62件, 기타 4件이다.

## 第三部 結 論

### 1. 選舉犯罪의 傾向과 對策

위에서 選舉運動의 規制와 그 違反에 관하여 外國의 法制를 概觀하여 보았고, 우리나라의 罰則規定의 變遷을 알아보았으며, 現行法上의 選舉犯罪의 類型과 實態를 알아 보았다. 이 結果 選舉法의 罰則 규정은 더욱 더 嚴格해 지고 違反件數도 점차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8 選舉나 5.25 總選 當時의 新聞紙面을 보면 選舉犯罪는 점차 知能化해가고 악랄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前記한 新民黨이 발표한 「6.8 不正選舉白書」나 東亞日報 등에 발표된 것을 보면 選舉事犯의 數는 훨씬 더 많을 것이 豫想된다. 選舉犯罪가 急增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檢察의 起訴率은 비교적 낮지 않은가 하는 것이 우리의 추측이다.

選舉犯罪의 數가 늘어나고 있는 중요한 理由의 하나는 選舉犯罪란 紳士들이 하는 것으로 犯罪로서 취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一部政治人 가운데는 選舉에 있어

(66) 1958. 4. 3. 中選委員長回答, 前揭書 290 頁.

시의 買收事犯을 「不得已한 犯罪」로 생각하고 있는 傾向이 있다. 옛날 英國에서 조차 이 犯罪는 貴族의이고 紳士의이며 尊敬할 만한 犯罪(aristocratic, gentlemanly and respectable offence)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이다.

이와같이 選舉犯罪가 輕視되고 있는 理由는 選舉法이 자주 改正되기 때문에, 또 巨大한 法體系中에서 選舉運動의 方法이라던가 그 費用額, 選舉區 등에 관한 部分的인 改正이 자주 行해지기 때문에 選舉犯罪規定 自體도 「朝令暮改의 法」으로서 생각되어지기 쉽고, 또 選舉에 있어서의 金權이나 官權의 影響이 絕對의이기에 이에 동요되지 않을 수 없고, 또 選舉民들의 政治意識이 낮을 뿐만 아니라, 小選舉區制를 채택하고 있어 選舉가 過熱되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選舉犯罪를 줄이기 위하여서는 國民의 選舉意識을 높이고 選舉制度를 改革하고 選舉犯罪를 刑事犯으로서 刑法에 규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西獨이나 다른 大陸法系 國家와 같이 選舉犯罪에 있어서의 行政犯을 없애고, 刑事犯規定을 刑法에 규정하는 것은 紳士犯罪로서의 選舉犯罪觀을 是正해 주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에 問題가 되는 것은 選舉制度를 小選舉區制에서 比例代表制의인 大選舉區制로 改革하면 選舉運動이 緩和되어 훨씬 選舉犯罪가 줄어들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小選舉區下에 있어서의 選舉運動은 all or nothing의 全力投球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選舉運動의 過熱은 필연적인 傾向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立候補者는 選舉 브로오커를 利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 broker 들은 돈을 위하여 職業的으로 違法的인 選舉運動을 行하게 된다. 이러한 選舉 브로오커를 利用하기 위하여 立候補者는 多額의 政治獻金을 필요로 하게 된다. 政治獻金은 當選後의 뇌물로 되기 쉽고 政治資金의 過度한 使用에 따라 選舉가 腐敗해 질 것은 明確하다. 따라서 選舉費用의 過多한 使用을 防止하기 위하여 選舉法은 選舉費用額을 制限하고 있으나, 選舉費用 超過使用으로 인한 處罰이 거의 없고, 이로 인한 當選無效의 宣告는 더욱 없는 것이 現實이다.

## 2. 選舉法規定의 改正方向<sup>(67)</sup>

### (1) 比例代表制의 採擇

大選舉區比例代表制를 採用하면 現在의 小選舉區制에 있어서와 같은 選舉의 過熱現象은 줄어들 것이요, 選舉犯罪도 줄어들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比例代表制의 경우에는 政黨의 共同名簿에서의 順位가 上順位에 있으면 自動的으로 當選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候補者들이 치열한 選舉運動을 回避하게 될 것이다. 또 大選舉區이기 때문에 買收事犯들은 훨씬 줄어들

(67) 상세한 것은 金哲洙, 國會議員選舉制度改革의 法的 諸問題, 省谷論叢 제 2 집, 293~373 면 참조.

들 것이다. 國民들도 立候補者보다는 政黨의 政綱政策 등에 投票할 것이므로 個人選舉 때와 같은 候補者誹謗과 같은 犯罪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 (2) 買收事犯에 있어서의 被買收者의 處罰制限

投票買收의 發生을 막기 위한 方法으로 買收者만을 處罰하고 被買收者를 處罰하지 않으며 이를 告發한 사람에게는 포상하는 方法 등이 논의되고 있다.

選舉人이 누구로부터도 自由롭게 買收金品을 受領할 수 있다고 한다면, 選舉人은 買收에는 應하면서 結局은 스스로의 判斷에 따라 投票하게 될 것이며, 모든 候補者는 買票의 效果가 나지 않을 買收自體를 하지 않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理論이다. 現在도 美國에 있어서는 7州에서 買收者만을 處罰하고 被買收者를 處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日本에서도 昭和 31年의 衆議院議員選舉團東에 관한 罰則 第2條 但書는 買收를 받은 者 및 그 申込을 承諾한 者에 限하여 選舉當日後 20日 以內에 自首하는 경우에는 處罰하지 않는 規定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規定은 買收事犯을 쉽게 發見할 수 있고, 證據의 수집을 容易하게 할 수 있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 (3) 新聞·放送·TV 등 媒體利用의 自由化

現在의 選舉運動의 規制方式은 新聞·放送·TV 등의 利用에 대하여 지나치게 規制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우리 選舉運動이 過去와 같은 政見發表會 등에 의존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하겠다. 오늘날 mass media의 發展에 따라 輿論의 形成은 新聞·放送·TV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 利用을 積極的으로 권장하는 方向으로 規定을 改正해야 할 것이다. 이들 媒體의 利用에는 많은 돈이 들 것은 물론이나, 壁報費用 등을 節約해서 新聞廣告 등을 利用하도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

### (4) 選舉管理委員會의 選舉犯罪告發義務規定

現在 各級 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管理에 관한 義務를 지고 있는데, 選舉犯罪에 대한 摘發과 告發義務가 없는 것은 實效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現行法上 選舉管理委員會의 選舉犯罪告發權에 관해서는 明文의 規定이 없으나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이를 消極的으로 解釋하고 있다.

#### [質疑 應答]

〔문〕 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法에 違反되는 각종 犯法行爲를 能動的으로 摘發하여 告發할 義務가 있는가?

〔답〕 選舉管理委員會는 能動的으로 告發할 義務는 없다.<sup>(68)</sup>

(68) 1967. 5. 27. 中選委員長回答, 質疑應答集(追錄) 1969. 157~158 면.

우리 생각으로서는 各級選舉管理委員會에 能動的인 選舉犯罪摘發權과 告發權을 주어야만 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關係法の 改正이 요망된다.

### (5) 選舉犯罪의 準起訴節次의 特例化

英·美에서는 法에는 選舉犯罪가 규정되고 있으나 事實上에 있어서는 檢舉된 被疑者는 극히 적다. 우리나라에서는 日本과 함께 相當多數의 選舉犯罪者가 檢舉되고 起訴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眞正發生件數의 極히 적은 一部分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選舉犯罪에 관한 규정을 두는 以上, 이의 違反도 철저히 색출하고 嚴重한 處罰을 해야 할 것이다. 市民들은 選舉犯罪의 公訴時效가 短期이고 또 赦免 등에 의하여 起訴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그 違反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傾向이 있다. 이것은 法の 生活化에도 違背되는 것이기에 政黨, 社會團體 등에 告發權을 주는 동시에, 만약에 檢察이 起訴를 하지 않는 경우에 中央選舉管理委員會나 政黨 등에 準起訴權을 주는 것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한다.

### (6) 政治意識의 昂揚과 啓蒙

위에서 장황하게 考察해 보았으나 궁극적으로 選舉犯罪를 없애기 위해서는 國民의 政治意識이 昂揚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市民의 選舉意識과 政治意識을 昂揚하기 위한 여러 가지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本稿의 範圍를 초월한 것이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著 書]

- 浦邊衛・林修, 選舉犯罪, 總合判例研究叢書, 刑法(23)  
 美濃部, 選舉罰則의 研究,  
 田口 俊夫, 選舉における 賈收事犯의 研究, 1970. 中央大學出版部, 東京  
 大竹 武七郎, 選舉法判例研究, 1971. 日本評論社, 東京  
 學陽書房, 選舉運動 どこから가 違反か, 1971. 學陽書房, 東京  
 自治省選舉部編, 選舉關係實例判例集, 1971. 帝國地方行政學會, 東京  
 林田 和博, 選舉法, 法律學全集, 有斐閣, 東京  
 阪上 順夫, 現代選舉學, 1970. 政治廣報センタ, 東京  
 中央選舉管理委員會 編, 選舉法令沿革集, 1971. 서울  
 中央選舉管理委員會 編, 大韓民國選舉史, 1968. 서울  
 中央選舉管理委員會 編, 選舉 및 政黨關係法令 質疑應答集, 1971. 서울  
 尹英求・趙載昇, 63年 選舉法要義, 1963. 錦文社 서울  
 李尙圭, 遂條 判例・實例 選舉法解說, 1971. 法文社 서울  
 Election Law Guidebook, 1966.  
 Wolf, Straftaten bei Wahlen und Abstimmungen, 1961.  
 Schönke-Schröder, Strafgesetzbuch Kommentar 15. Aufl. 1970

[論 文]

- 韓沃申, 選舉事犯의 類型, 警察考試 80 (6) 1971.  
 윤영학, 選舉犯罪, 選舉法의 罰則條項을 中心으로, 검찰 36 (1971)  
 鄭暢雲, 刑法上의 選舉妨害罪, 考試界 8 권 11 호 (1963)  
 최정민, 刑法上의 選舉妨害罪, 검찰 39.  
 김창현, 선거사범에 대한 소고, 광주지방검찰청관내를 중심으로, 검찰 41.  
 金奉兌, 公務員 犯罪에 관한 犯罪學的 考察, 不正腐敗防止策과 關聯하여, 釜山大 紀念論  
 文集 8.  
 金奉兌・金永泰, 公務員 犯罪의 犯罪學的 考察(上)(下), 司法行政 12 권 5・6・7 호.  
 鄭宗植, 6・8總選의 樣相과 反省, 世代 1967년 8월.

大谷 實, 注釋 選舉犯罪(1), 同志社法學 第 114 號.

高松敬治, 解説 選舉運動と 選舉犯罪.

桐山隆彦, むずかしい 選舉犯罪の 取締 — 違反の 實情に かんがみて, ジュリスト 37 號.

杉村 敏正, 選舉犯罪の 法理 — 刑事犯と 行政犯に ついて, ジュリスト, 173 號(特集).

田上 輝彦, 選舉違反の 問題點, ジュリスト, 320 號.